

전 성 훈

# “확신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 성 훈

# “확신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1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평화기획연구소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봄 (2275-5326)

인 쇄 처 (주)세원문화사 (2265-1141)

가 격 10,000원

©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 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관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 전성훈. -- 서울 : 통일연  
구원, 2007

p. ; cm. -- (연구총서 ; 07-04)

권말부록 수록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8479-415-3 93340 : ₩10,000

349.9-KDC4

327.1-DDC21

CIP2007003910

#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차

I. 서론 .....	1
II. PSI의 배경, 목표 및 전개과정 .....	9
1. 배경 .....	11
가. 탈냉전 이후 범세계적 WMD 확산방지 노력 .....	11
나. 9·11 이후 WMD 확산에 대한 우려 고조 .....	17
다. WMD 확산 방지 조치 .....	20
2. 목표 .....	26
가. 불량국가와 테러집단의 WMD 접근 차단 .....	27
나. 국제적인 WMD 밀거래 네트워크 봉쇄 .....	30
3. 기원과 전개과정 .....	32
가. 클린턴 행정부 .....	32
나. 부시 행정부 .....	34
III. PSI에 대한 입체적 분석 .....	45
1. 맞춤형 봉쇄 .....	47
가. 냉전시대의 봉쇄정책 .....	47
나. 탈냉전시대의 봉쇄정책 .....	51

다. 대북한 맞춤형 봉쇄 .....	54
2. 강압외교 .....	59
가. 강압외교의 특성 .....	59
나. 강압외교의 유형 .....	61
다. PSI와 강압외교 .....	64
3. 공세적 억지 .....	70
가. 부시 대통령의 육사 연설 .....	72
나. 2002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 .....	73
다. 2004~2009년도 국방계획지침서 .....	74
라. 선제와 예방의 융합 .....	75
IV. 한국의 대응방향 .....	79
1. 고려사항 .....	83
가. 북한 핵문제 .....	83
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	93
다. 북한의 입장 .....	99
라. 국내의 찬반 논란 .....	104
마. 북한·시리아 핵 네트워크 .....	109

2. PSI 참여 수준과 득실 분석 .....	115
가. 불참 .....	115
나. 전면참가 .....	117
다. 부분참가 .....	121
3. 향후 정책추진 방향 .....	122
참고문헌 .....	133
부록 .....	140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13

## 표 / 그림 / 부록 목차

<표 II-1> HEU와 플루토늄 불법거래 사건 (1993~2005) .....	16
<표 IV-1> ‘2·13 합의’ 항목별 정리 .....	85
<그림 II-1> 핵·방사능 물질 불법거래 사건 (1993~2005) .....	15
<그림 II-2> 핵물질 불법거래 사건 (1993~2005) .....	15
<부록 1> The United Nations Security Resolution 1540, April 28, 2004 .....	140
<부록 2> Statement of the Security Council at the Level of Heads of States and Governm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23500, January 31, 1992 .....	147
<부록 3>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October 14, 2006 .....	154
<부록 4>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95, July 15, 2006 .....	162
<부록 5> Protocol of 2005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October 14, 2005 .....	165
<부록 6>	Strengthening International Efforts Against WMD Proliferation, February 11, 2004 .....	199
<부록 7>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 September 4, 2003 .....	204
<부록 8>	PSI 전문가그룹 회의 및 훈련 일정 .....	208
<부록 9>	PSI 참가국 명단 .....	211

# I

## 서론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은 2003년 5월 유럽을 순방 중이던 부시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발표한 새로운 정책적 구상을 말한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 5월 31일 폴란드 크라코(Krakow)의 한 성(Wawel Castle)에서 핵·화학·세균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의 범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수단으로서 확산방지구상을 제안했다. PSI가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의지를 갖춘 WMD 제거 정책이란 점은 곳곳에서 감지되어 왔다. 부시 대통령이 PSI에 관한 선언을 한 지 일주일도 안된 2003년 6월 3일, 당시 볼튼(John Bolton) 미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에서 PSI 개념을 구체화하는 증언을 했고,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미국을 비롯한 11개국이 PSI 개념을 각국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첫 회의를 비밀리에 개최했다.<sup>1</sup> 2003년 9월에는 영국, 미국, 일본, 호주 해군이 참여하는 첫 해상 나포 훈련이 호주 해역에서 실시되었고, 지중해와 아라비아 해역 등에서도 추가 훈련이 개최되었으며,<sup>2</sup> 회원국도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에 있다.

PSI가 한국에게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는 북한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중동 지역으로 수출해서 상당한 외화수입을 벌어들이는 등 그동안 PSI의 기본 목표인 ‘WMD 확산 방지’에 근본적으로 저촉되는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PSI가 특정국가를 적용대

<sup>1</sup>- PSI에 관한 첫 국제회의에 참가한 11개 국가들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폴란드이다.

<sup>2</sup>- Steven Weisman, “U.S. plans more sea exercises on halting illegal arms trade,” *New York Times*, September 10, 2003.

I
II
III
IV

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PSI의 기본취지와 지향하는 목표를 감안할 때, 북한이 PSI의 주요 대상국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WMD 확산 방지라는 국제적인 문제의 중심에 북한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PSI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를 들자면, PSI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조치 가운데 육상, 해상 및 공중 교통수단에 대한 “차단”(interdiction) 행위가 있다. 북한 항구를 출발한 화물선이 WMD 관련 장비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해상에서 이 선박을 정선시켜 내부 수색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차단작전을 수행하는 PSI 회원국 군대와 정선 요구를 거부하는 북한 선박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는 한국에서 ‘PSI는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파생시킨 원인이기도 하다. PSI는 또한 인권, 마약, 위폐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 정권 차원의 불법행위, 즉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과 일련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시 행정부의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PSI의 탄생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PSI를 미국의 3대 외교안보전략 수단의 틀 속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PSI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PSI에 대해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과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PSI가 탄생한 배경과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PSI의 기원과 그동안의 전개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PSI는



냉전 종식 이후 국제안보의 현안으로 등장했고 9·11 테러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노력이 구현된 정책구상이다. 비록 처음 발의한 주체는 미국이지만 많은 수의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동참하는 형태’(coalition of willing)를 취하면서 사실상의 국제규범으로 확고하게 그 위상을 정립해가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WMD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천명된 “확산저지구상”(Counterproliferation Initiative: CPI)이 PSI의 개념적 기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9·11 테러 이후에 테러집단을 지칭하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에 의한 WMD 확산 방지를 위해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540호가 PSI의 법적근거가 될 수 있다(<부록 1> 참조). 개별 국가와 개인의 WMD 확산 행위에 PSI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는 “항해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금지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일명 SUA 협약을 들 수 있다. 북한과 관련해서 볼 때, PSI는 미 공화당의 정책브레인들이 1999년 3월에 제시했던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이라는 아이디어가 현실에 구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PSI를 북한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국제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제III장에서는 미국이 적대적인 국가와 대상을 관리하기 위해 구사해 온 세 가지 주요 대외전략수단의 관점에서 PSI를 해석하고자 한다: ①“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 ②“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③“억지전략”(Deterrence Strategy). 첫째, PSI는 냉전 시대 미국이 소련의 팽창과 호전적인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구사

I
II
III
IV

했던 봉쇄전략을 21세기의 변화된 국제정세와 동북아의 안보현실, 그리고 북한의 특성에 맞게 구사하는 소위, “맞춤형 봉쇄”(Tailored Containment)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PSI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 군사적이지만 상당한 강제성과 압력을 수반하는 소위, 강압외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즉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안보전략의 특성을 공유하면서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위협세력으로 부상한 북한 등 불량국가와 테러집단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문제에서 PSI가 갖는 의미는 인권문제 및 금융제재와 함께 대북 압박의 3축의 하나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즉 PSI, 인권문제 및 금융제재를 “대북 압박전략의 3축”(Coercive Strategic Triad against North Korea)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PSI는 상대방이 침략을 감행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점을 힘으로 입증함으로써 상대의 침략을 저지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억지전략보다 더 적극적인 억지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억지전략은 상대방의 무력증강 자체는 허용하고 있지만, PSI는 상대방이 WMD 능력을 보유하거나 다른 적대 국가로 확산하는 것 자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구현하고 있으므로 “공세적 억지”(Aggressive Deterrence)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IV장에서는 PSI와 관련된 한국 내의 논란을 정리하고 PSI 참여 여부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7년 11월 현재 한국 정부는 PSI에 대해 다소 애매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제한적인 수준의 참여를 결정하고 있으나, 국익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먼

저 PSI와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을 ‘불참’, ‘부분참여’ 및 ‘적극참여’로 분류한 다음, 각각에 대해서 한국의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본 장단점을 분석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

II

III

IV

서론\_7





# II

## PSI의 배경, 목표 및 전개과정





## 1. 배경

PSI의 한 수단으로 공해상에서 국적선박을 차단시켜 수색하는 차단행위가 야기할 수 있는 국제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sup>3</sup> PSI가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하나의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배경에는 국제안보질서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국제안보질서의 변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하나는 탈냉전 이후 WMD 특히 핵확산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WMD를 이용한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다는 사실이다.

### 가. 탈냉전 이후 범세계적 WMD 확산방지 노력

냉전의 종식과 소련의 와해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진행된 지구화, 세계화의 물결은 기술과 정보의 확산 및 공유를 초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WMD 관련 기술과 물질의 합법적, 비합법적 확산도 야기되었다. WMD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이 된다는 것은 1992년 1월 31일 유엔안보리 회원국가 정상들의 성명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부록 2> 참조). 이 성명에서 안보리 정상들은 WMD의 생산이나 연구에 관련된 기술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sup>4</sup>

3- PSI의 법적 논란과 한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James Cotto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nd North Korea: legality and limitations of a coalition strategy,” *Security Dialogue*, June 2005, pp. 193 ~ 211.

4- *Statement of the Security Council at the Level of Heads of States and Governm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23500, January 31, 1992.

탈냉전 시대의 WMD 확산의 주요 특징은 특히 핵무기와 핵물질의 확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핵무기의 경우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각 1998년 5월 핵실험에 성공해서 핵보유국이 되었다. 인도는 1998년 5월 11일 3차례, 이틀 후인 5월 13일 두 차례 등 모두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파키스탄은 같은 해 5월 28일 다섯 차례 그리고 이틀 후인 5월 30일 한 차례 등 모두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두 나라의 핵실험은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에 큰 타격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것이다. 북한은 이미 2005년 2월 10일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선언한 이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였다. 그러나 핵실험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물리적으로 입증하는 조치이자 북한 정권이 김일성과 김정일 2대를 이어 집요하게 추진해온 핵무기 개발 계획이 성공했음을 대내외에 과시한 사건이었다. 핵실험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많지만 10월 9일의 핵실험은 부분적인 성공이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완벽한 성공은 아니지만 첫 실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괜찮은 결과였다는 평가인 것이다.<sup>5</sup> 북한의 핵실험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국제사회는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정권의 모험주의에 대해서 강력한 채찍을 들기로 결정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1718호라는 강력한 법적 문서를 안보리 35개 이사국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해

---

5- Siegfried Hecker, “Report on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Policy Forum Online*, Nautilus Institute, November 15, 2006,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697Hecker.html>>, p. 2.

서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부록 3> 참조). 결의안 1718호는 2006년 7월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에 대응해서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1695호와 함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문건이다(<부록 4> 참조).

안보리 결의안 1695호는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모든 관련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관련 물자와 재원 등의 이전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결의안 1718호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NPT 복귀와 IAEA 보장조치 수용,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 등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 전차·장갑차 등 재래식 무기와 WMD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장비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하고, 사치품의 이전 금지와 자금과 금융 자산 및 경제적 지원 동결 등을 규정했다. 특히, 결의안 1718호는 국내법과 국제법규에 따라 핵 및 화학·세균 무기와 그 운송수단 및 관련 물질의 거래를 막기 위한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냉전 종식 직후부터 동구권 지역을 중심으로 핵물질과 방사능물질의 불법유통과 밀거래 사건이 적발되기 시작했다. 이런 사건들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한 국제기구가 바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이다. IAEA는 1993년부터 “불법거래 데이터베이스”(Illicit Trafficking Database: ITDB)를 운영하고 있는데, 핵물질이나 방사능물질이 연루된 허가되지 않은 활동이나 불법거래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축적·보관하는 것이 ITDB의 임무이다. ITDB

I  
II  
III  
IV

에 따르면, 2005년 12월 31일 현재 IAEA 회원국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한 사건의 건수가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27건에 달한다.<sup>6</sup> 이 가운데, 224건은 핵물질을 취급한 사건이고, 26건은 핵물질과 방사능물질을 함께 취급한 사건들이다. 여러 가지 핵물질이 취급된 사건들은 <그림 II-2>에서 보는 바와 같다.<sup>7</sup> 이 가운데 핵무기의 재료로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과 “플루토늄”(Plutonium)이 취급된 사건들의 구체적인 개요는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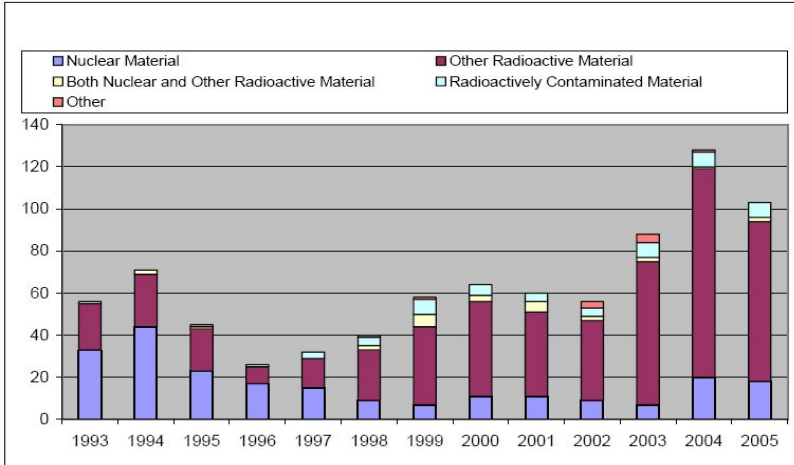
---

<sup>6</sup>-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llicit Trafficking and Other Unauthorized Activities Involving Nuclear and Radioactive Materials*, August 21, 2005, p. 4, <[http://www.iaea.org/NewsCenter/Features/RadSources/PDF/fact\\_figures2005.pdf](http://www.iaea.org/NewsCenter/Features/RadSources/PDF/fact_figures2005.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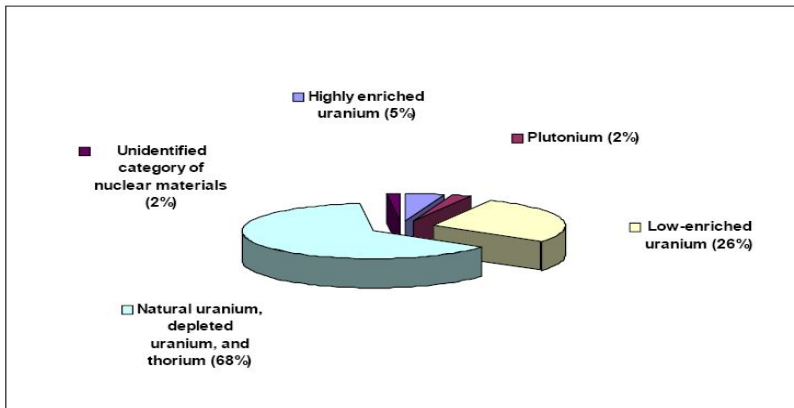
<sup>7</sup>- *Ibid.*, p. 5.

<sup>8</sup>- *Ibid.*, p. 6.

<그림 II-1> 핵·방사능 물질 불법거래 사건 (1993~2005)<sup>9</sup>



<그림 II-2> 핵물질 불법거래 사건 (1993~2005)<sup>10</sup>



<sup>9</sup>- 참고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구소련 지역에서 적발된 핵·화학·세균무기 관련 불법거래 건수는 모두 183건에 달한다. Sonia Ben Quagrham-Gormley, "An unrealized nexus?: WMD-related trafficking, terrorism, and organized crime in the Former Soviet Union," *Arm Control Today*, July/August 2007, p. 7.  
<sup>10</sup>- 일부 불법거래 사건은 복수의 핵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퍼센트의 합은 100을 넘는다.





<표 II-1> HEU와 플루토늄 불법거래 사건 (1993~2005)

Date	Location	Material Involved	Incident Description
1993-05-24	Vilnius, Lithuania	HEU/ 150g	4.4t of beryllium including 140kg contaminated with HEU were discovered in the storage area of a bank.
1994-03	St.Petersburg, Russian Federation	HEU/ 2.972kg	An individual was arrested in possession of HEU, which he had previously stolen from a nuclear facility. The material was intended for illegal sale.
1994-05-10	Tengen-Wiechs, Germany	Pu/ 6.2g	Plutonium was detected in a building during a police search.
1994-06-13	Landshut, Germany	HEU/ 0.795g	A group of individuals was arrested in illegal possession of HEU.
1994-07-25	Munich Germany	Pu/ 0.24g	A small sample of PuO <sub>2</sub> -UO <sub>2</sub> mixture was confiscated in an incident related to a larger seizure at Munich Airport on 1994-08-10.
1994-08-10	Munich Airport, Germany	Pu/ 363.4g	PuO <sub>2</sub> -UO <sub>2</sub> mixture was seized at Munich airport.
1994-12-14	Prague, Czech Republic	HEU/ 2.73kg	HEU was seized by police in Prague. The material was intended for illegal sale.
1995-06	Moscow, Russian Federation	HEU/ 1.7kg	An individual was arrested in possession of HEU, which he had previously stolen from a nuclear facility. The material was intended for illegal sale.
1995-06-06	Prague, Czech Republic	HEU/ 0.415g	An HEU sample was seized by police in Prague.
1995-06-08	Ceske Budejovice, Czech Republic	HEU/ 16.9g	An HEU sample was seized by police in Ceske Budejovice.
1995-05-29	Rousse, Bulgaria	HEU/ 10g	Customs officials arrested a man trying to smuggle HEU at the Rousse customs border check point.
2000-12	Karlsruhe, Germany	Pu/ 0.001g	Mixed radioactive materials including a minute quantity of plutonium were stolen from the former pilot reprocessing plant.
2001-07-16	Paris, France	HEU/ 0.5g	Three individuals trafficking in HEU were arrested in Paris. The perpetrators were seeking buyers for the material.
2003-06-26	Sadahlo, Georgia	HEU/ ~170g	An individual was arrested in possession of HEU upon attempt to illegally transport the material across the border.
2005-03 to 2005-04	New Jersey, USA	HEU/ 3.3g	A package containing 3.3g of HEU was reported lost.
2005-06-24	Fukui, Japan	HEU/ 0.017g	A neutron flux detector was reported lost at an NPP.

핵물질과 방사능물질이 관련된 불법거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IAEA는 보장조치체계와 핵물질 계량시스템을 이용해서 각국에 산재되어 있는 방사능 물질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01년에는 230만 달러에 달하는 “핵안전기금”(Nuclear Security Fund)을 마련해서 IAEA 회원국들이 방사능 물질의 소재를 파악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방사능 물질의 불법거래를 차단하며 이를 위한 강력한 국가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sup>11</sup> 또한 앞서 밝힌 대로, IAEA는 핵물질 불법거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물질의 관리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 및 테러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참고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2004년 5월 미국 외교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잠재적인 핵확산 행위자들에게 가장 나쁜 신호를 보내는 선례이자 국제안보 차원에서 제일가는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12</sup>

## 나. 9·11 이후 WMD 확산에 대한 우려 고조

### (1) 국제안보의 최대위협으로 등장한 테러

9·11 테러는 안보에 대한 서방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킨 사건이자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킨 진주만 침공에 버금가는 사태였다. 미국 역사의 치욕이자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서 미 본토가 더 이상

<sup>11</sup>- “Dirty deeds done dirt cheap: dealing with RDDs,” *Trust & Verify*, July/August 2004, p. 2.

<sup>12</sup>- Mohamed ElBaradei, *The Challenges Facing Nonproliferation*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y 14, 2004).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수십 명이 동시에 자살 공격을 감행하는 무모함과 잔학성 그리고 야만성의 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상징인 미국이 선택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사회의 큰 충격이었다.

또한 9·11 테러는 의지만 있다면 가장 원시적인 수단으로 대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시범케이스였고, 강력한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한 적대세력이 세계 도처에서 9·11 사태와 유사한 테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종을 울려준 사건이기도 했다. 테러 그 자체는 과거부터 존재해 온 위협요인이지만 9·11 사태는 그 피해범위, 형태 및 조장하는 공포의 측면에서 과거의 소규모 테러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테러가 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핵심적인 안보위협이자 불안정 요인으로 부상했다고 할 수 있다.

## (2) 테러의 수단으로 등장한 WMD

9·11 사태가 초래한 국제안보상의 특징적인 현상은 테러행위자들이 핵·화학·세균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세계적 차원의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냉전 종식 이후 소련이 해체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WMD 기술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WMD 관련 밀거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도 WMD와 테러와의 만남에 대한 우려를 높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빈 라덴 조직이 핵·화학·세균무기 확보를 시도했었다는 정황증거가 밝혀졌고, 북한과 이란 등 테러행위를 자행해 온 불량국가들 사이에 WMD 관련 협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 국가는 테러조직을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1 직후 미국에서 발생한 우편물을 이용한 탄저균 살포 사건도 WMD를 이용한 테러가 현실적인 안보문제라는 인식을 높여주었다. 9·11 이후 영국과 스페인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사건도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WMD 확산이 야기할 수 있는 안보위협에 대한 서방세계의 경계심은 최고조에 달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사태 발생 6개월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모든 국가가 WMD로 무장한 재앙적 규모의 테러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WMD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한 치의 오차나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2002년도 미 육사 졸업식 연설에서도 9·11 사태가 탱크 한 대 값도 안되는 수십만 달러로 가능했다고 말하면서 자유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은 “극단주의와 기술”(radicalism and technology)이 만나는 곳에 있다고 지적했다.<sup>13</sup> 미 국방부의 2006년도 「국방태세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QDR)도 북한과 이란을 WMD를 보유·개발하고 있는 잠재적국으로 지칭하고, 이들이 WMD를 정권유지와 지역패권 장악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테러집단으로 확산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sup>14</sup>

<sup>13</sup>- “Bush’s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graduation speech,” *Washington Post*, June 2, 2002.

<sup>14</sup>-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February 6, 2006), pp. 32~35.

## 다. WMD 확산 방지 조치

냉전 종식 이후 WMD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가 오늘날과 같이 국제안보상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것은 9·11 사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9·11 사태를 겪고 나서 WMD의 확산이 테러와 결합할 경우 엄청난 재앙을 유발할 수 있다는 현실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후 개별국가, 양자간, 다자간 및 범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조치들이 추진되어 왔다.

개별국가 차원의 조치로서, 미국은 2002년 1월부터 자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화물선에 대량살상무기가 탑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국제 항구에 자국 세관을 파견,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sup>15</sup> 미국으로 입국하는 컨테이너 선박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이 조치는 “컨테이너 안보구상”(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이라고 한다.

양자 차원의 조치는 미국 정부가 공해상에서 국적선박의 검색으로 인한 PSI의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주요 선박보유국들과 체결한 양자협정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셜군도와 2003년 8월 13일, 라이베리아와 2004년 2월 11일, 파나마와 2004년 5월 12일, 그리고 크로아티아와는 2005년 6월 1일 양자협정을 체결했고, 사이프러스와도 2005년 4월 8일 양자협정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양자협정을 통해서 PSI 참가국들은 이들 국가 국적의 선박을 차단하고 승선하여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라이베리아와의 체결한 양자협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16</sup> 라이베리아는 공해상에서 WMD

---

<sup>15</sup>-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항에, 중국에는 상해와 심천에 미국 세관이 나와 있다.

나 미사일 관련물질을 이송 및 교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선에 대한 승선과 검색을 허용한다. 승선·검색 요청에 대해서 라이베리아가 2시간 내에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으면 작전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크로아티아와의 양자협정에서는 승선·검색 요청에 대한 회신 시간을 4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팩스나 이메일과 같은 문서 형태에 의한 허가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자 차원의 조치로서, PSI가 대표적인 다국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적수출통제구상”(Transshipment Country Export Control Initiative: TECI)을 통해서 환적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감시체제를 구성해야 한다는 논의도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7월 15~18일 22개국 대표들이 호주의 시드니에 모여서 세계적으로 TECI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sup>17</sup> 회의에서는 합법적인 환적과 통관이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조치들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물품의 환적과 통관 및 재수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이를 위한 정부간 정보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원칙도 채택하였다:<sup>18</sup>

1. 참가국들은 특히 테러집단과 우려를 야기하는 국가에 의한 WMD에 관련된 물품과 기술,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사회에

16- 박창권·김명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북한,” 『국방정책연구』, 2006년 봄, p. 112.

17- 참석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호주,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피지,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요르단,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말타, 뉴질랜드, 오만, 파키스탄, 파나마, 싱가포르, 대만, 태국, 터키, 아랍 에미레이트, 미국.

18- <[http://www.bxa.doc.gov/ComplianceAndEnforcement/TECISydney7\\_03Principles.htm](http://www.bxa.doc.gov/ComplianceAndEnforcement/TECISydney7_03Principles.htm)>.



중요한 안보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각국이 이러한 물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 WMD에 관련된 물품을 불법적으로 획득하려는 국가와 비국가행위자들은 밀매를 하거나 주요 환적중심지를 통해서 정당한 상업거래를 악용한 획득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 이러한 위협과 싸우고 환적중심지를 통한 WMD 관련 물건과 기술 및 기타 전략적 물품의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해서 각국은 경유, 환적 및 재수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조치를 만들 수 있다.
3. 효과적인 환적통제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포괄적인 법적·규제적 틀, 견실한 집행 체계, 적절한 탐지기술, 정보공유, 각국 관련 부서간의 공조 등으로 구성된다.
4. WMD에 관련된 중요한 물품과 운반수단을 파악하는 유용한 수단은 다자 군축 및 비확산 협정이 제공하고 있다.
5. 환적무역 통제장치의 효과적인 운용은 양자간, 지역차원 및 국제적 수준에서 관련국간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필요로 하며, WMD 관련 물품과 운반수단의 불법 거래와 싸우겠다는 의지와 상호신뢰에 토대를 둔다.
6. 환적무역 통제장치의 효과적인 운용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정당한 무역거래를 촉진할 수 있다. 최상의 조치를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비용을 줄이고 공공과 민간 부분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법세계적 차원의 조치로서는 두 가지 국제규범을 들 수 있다. 하나는 테러집단 등을 지칭하는 비국가행위자의 WMD 확산을 규제

하기 위해 2004년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결의안 1540호이다. 다른 하나는 각국의 WMD 확산 행위를 막기 위해서 기존의 협약을 보완해서 2005년에 개정된 SUA 협약이다. 먼저 유엔안보리는 2004년 4월 28일 대량살상무기와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관련 물질 그리고 운반수단의 확산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부록 1> 참조).<sup>19</sup> 이 결의안에 따르면, 비국가행위자가 WMD의 개발·획득·운송·이전·사용 등을 시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지원도 금지하고, 모든 국가가 이를 위한 국내법을 채택·집행해야 한다. 또한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내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가 물리적인 방호, 국경통제, 수출 및 화물을 옮겨 신는 행위, 즉 환적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SUA 협약의 공식명칭은 “항해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금지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이다. SUA 협약은 1995년 민간 여객선(*Achille Lauro*)이 팔레스타인 테러범들에 의해 납치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사건 직후 유엔총회는 결의안 40/61호를 채택하고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로 하여금 선박에서의 또한 선박에 대한 테러 문제를 연구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오스트리아, 이집트 및 이탈리아가 협약을 만들 것을 제안했고, 일련의 노력을 거쳐서 1988년 3월 10일 IMO가 SUA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의 기본

I
II
III
IV

<sup>19</sup>-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April 28, 2004.



목적은 선박과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나포, 납치,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위해, 함선 훼손, 폭파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었다. 또한 SUA 협약은 항해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5년 10월 14일 SUA 협약에서 불법행위를 규정한 3조의 내용을 보완한 ‘SUA 2005년 의정서’가 SUA 협약에 추가되었다(의정서 원문은 <부록 5> 참조). 의정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SUA 협약에 의거하여 제재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 추가하였다.<sup>20</sup>

-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정도로 폭약, 방사능 물질, WMD를 선박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선박으로부터 방출하는 행위,
-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정도로 기름, 액화천연가스 및 기타 위험한 물질을 선박으로부터 방출하는 행위,
- 국민을 위협하거나 정부나 국제기구에 대해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야기하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폭약이나 방사능 물질을 선박에 실어 운반하는 행위,
- WMD를 선적해서 운반하는 행위,
- 핵물질의 생산과 사용에 관련된 원료물질과 관련 장비가 IAEA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고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선적해서 운반하는 행위,
- 대량살상무기의 설계와 제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비와

---

<sup>20</sup>-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1988, <<http://www.imo.org/Conventions/>>.



물질 및 관련 기술을 그런 목적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운반하는 행위.

SUA 2005 의정서에 추가된 새로운 조항은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국적선박에 승선한 인물이나 선적된 물질이 SUA 협약에 위배된다고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국적선박에 승선해서 선적물의 내용을 확인하고 협약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절차도 담고 있다. 의심되는 국적선박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해당선박이 소속된 국가의 허가와 협력이 필요하다. 승선과정에서 요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혹은 검색이 방해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무력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승선과 검색은 개인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 선박과 화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선박의 운행지연이나 구금이 지나칠 정도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된 SUA 의정서는 12개국이 비준이나 승인에 대한 유보 없이 서명하고 90일 후에 그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 2007년 5월 31일 현재 2개국이 서명했다.

SUA 2005 의정서는 비군사용 국적선박을 무기나 테러공격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테러분자와 WMD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화물을 선박으로 운반하는 개인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최초의 국제규범이다.<sup>21</sup> 이 의정서는 WMD와 미사일 및 관련 물질을 민간선박을 이용해서 공해상에서 거래하는 행위를 불법화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차단하는 국제법적인 토대를 강화한 것으로

<sup>21</sup> -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Inventory of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Organization and Regimes,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April 10, 2007, p. 2.

평가된다.<sup>22</sup>

## 2. 목표

미국에서 PSI 활동의 주무 책임부서인 국무부의 “국제안보비확산국”(Bureau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ISN)은 PSI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sup>23</sup>

PSI의 목적은 확산의 우려가 있는 국가와 비국가행위자들의 수요와 공급 모든 측면에서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접근법을 창안하는 것이다. PSI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국의 국내법규와 관련된 국제적인 법과 틀에 부합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다. PSI는 국가적 및 국제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권한을 사용해서 확산을 막고자 한다.

WMD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 PSI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추진되어 온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불량 국가와 테러집단 등 개별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WMD에 접근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제적인 WMD 밀거래 네트워크를 완전히 차단하고 봉쇄하는 것이다.

---

<sup>22</sup> - “International conference amends maritime treaties on unlawful acts,” *Fact Sheet*, The State Department, October 21, 2005, <<http://usinfo.state.gov/utills/>>.

<sup>23</sup> - 영어원문은 “The goal of the PSI is to create a more dynamic, creative, and proactive approach to preventing proliferation to or from nation states and non-state actors of proliferation concern. Actions will be taken in support of the PSI consistent with national legal authorities and relevant international law and frameworks. The PSI seeks to use existing authorities--national and international--to defeat proliferation,” <<http://www.state.gov/t/isn/rls/other/34726.htm>>.

## 가. 불량국가와 테러집단의 WMD 접근 차단

PSI의 목표는 단순히 WMD가 불량국가와 테러집단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eliminate)하고 WMD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던 원래 상태로 “원상회복”(roll back)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4</sup> 예를 들어, 북한을 비롯한 불량국가와 테러집단이 설사 대량살상무기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보유한 무기와 생산시설을 없애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볼튼 차관보가 하원 청문회에서 밝힌 이런 입장은 제2차 6자회담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 폐기 원칙으로 자리 잡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에도 부합하는 것이다.<sup>25</sup>

완전하다는 것은 과거 제1차 북핵 위기 때의 제네바 합의와 같이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하는 선에서 그치거나 미진한 부분을 후일의 해결과제로 남겨두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볼튼 차관보는 완전한 폐기를 이루기 위해서 플루토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HEU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sup>26</sup> HEU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미국이 증거를 제시하면 기술적인 논의를 할 수 있

<sup>24</sup>- *Testimony of John Bolton, Under Secretary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U.S. Department of Stat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June 4, 2003*, <[http://www.house.gov/international\\_relations/108/bolt0604.htm](http://www.house.gov/international_relations/108/bolt0604.htm)>.

<sup>25</sup>- 볼튼 차관보는 하원 청문회 증언에서 “visibly, verifiably, and irreversibly dismantle”이라고 표현했다. *Ibid.*

<sup>26</sup>- *The Bush Administration's Nonproliferation Policy: Successes and Future Challenges*, Testimony by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John Bolton to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March 30, 2004.

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sup>27</sup> 그러나 미국은 플루토늄보다 훨씬 숨기기 쉬운 HEU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북한의 은닉행위를 도와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sup>28</sup> 2·13 합의에 의거해서 북한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신고보고서에 HEU와 관련해서 얼마나 자세한 내용이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검증가능하다는 것은 북한당국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대북 불신에 바탕을 두고, 합의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은 북한이 다시 핵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술적 하부구조와 능력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북한에서 핵의 싹을 자르고 뿌리를 뽑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볼튼 차관에 따르면 북한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도 포기하고 관련 사항을 모두 제거해야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sup>29</sup>

미국이 CVID를 통해 북한의 핵능력을 발본색원하려는 중요한 이유는 이라크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은 걸프전 이후 핵·화학·세균무기 개발을 완전히 금지하는 유엔제재와 사찰로 인해서 이들 무기의 개발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 증거를 찾는데 애를 먹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미사일의 경우 사정거리 150km까지는 개발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후세인 정권은

<sup>27</sup>- 2004년 3월 10일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로동신문』, 2004년 3월 11일.

<sup>28</sup>-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리처드 루가 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답변, 2004년 3월 2일.  
<[www.ifins.org/pages/kison-archive-kn545.thm](http://www.ifins.org/pages/kison-archive-kn545.thm)>.

<sup>29</sup>- *The Bush Administration's Nonproliferation Policy: Successes and Future Challenges*.

이를 악용해서 북한 등으로부터 중·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추진했다.<sup>30</sup> 따라서 북한이 더 이상 핵을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CVID의 요체이다.

2004년에 “위협·도전·변화에 관한 유엔고위위원회”(U.N.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도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서 PSI에 참여해주도록 촉구했고,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도 “방어의 틈새를 메우기 위한” PSI의 노력을 치하했다.<sup>31</sup> 특히 2004년도 유엔고위위원회의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을 빈곤·질병, 국제·국내 분쟁, 대량살상무기, 테러 및 초국가 범죄행위의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이 가운데 WMD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PSI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sup>32</sup>

132. 칸 박사 네트워크의 활동에 관한 최근의 경험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에 대한 불법적이고 은밀한 거래를 차단

---

<sup>30</sup>- James Risen, “Russian engineers reportedly gave missile aid to Iraq,” *New York Times*, March 5, 2004. 부시 행정부의 대 이라크 정보수집능력을 비판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미 상원 정보위원회도 북한과 이라크 사이에 미사일 기술 거래시도가 있었다는 정보는 신뢰했으며, 2001년 3명의 이라크 장교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당시 북한에 머물던 시리아의 미사일 팀과 만났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Dana Priest and Dafna Linzer, “Panel condemns Iraq prewar intelligence,” *Washington Post*, July 10, 2004, p. A01. 상원정보위원회의 중간 조사결과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Report on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s Prewar Intelligence Assessments on Iraq* (Washington, D.C.: U.S. Senate, July 2004).

<sup>31</sup>- Bureau of Nonproliferatio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Washington, D.C.: The State Department, May 2005, p. 1, <<http://www.state.gov/t/np/rls/other/46858.htm>>.

<sup>32</sup>-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2004, the United Nations, p. 45, <<http://www.un.org/secureworld/>>.



하기 위한 조치들의 필요성과 가치를 입증했다. 이 문제는 현재 PSI를 통해서 자발적인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이 자발적인 구상에 참여하도록 격려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한편, 슉츠 전 국무장관과 페리 전 국방장관 등 미국의 전직 고위 인사 4명은 2007년 1월 한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부터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비국가행위자가 핵무기를 손에 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핵으로 무장한 테러집단은 기존의 억지전략의 범위 밖에 존재하는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WMD 확산 방지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sup>33</sup>

#### 나. 국제적인 WMD 밀거래 네트워크 봉쇄

PSI는 WMD 확산을 야기하는 특정국가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심 영역을 확대해서 WMD를 공급하는 공급자와 이를 획득하려는 수급자 사이의 국제적 밀거래 루트와 네트워크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볼튼 차관은 이를 “확산에 대한 전진 정책”(forward policy on proliferation)이라고 표현했으며, WMD 확산방지 전선을 불량국가 뿐만 아니라 관련 물품이 공급될 수 있는 “루트”와 관련 당사자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34</sup>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이 2004년 2월 미 국방대학교에서 한 연설

---

<sup>33</sup>- George P. Shultz, William J. Perry, Henry A. Kissinger and Sam Nunn,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Wall Street Journal*, January 4, 2007, p. A15.

<sup>34</sup>- John Bolton, “An all-out war on proliferation,” *Financial Times*, September 7, 2004.



에서 핵확산 저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설문 요약은 <부록 6> 참조).<sup>35</sup> 첫째, 정보와 군사 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법집행 차원의 협력도 필요하다면서 국제공조, 특히 인터폴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핵 밀거래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PSI가 물자의 운송과 이전 이외의 다른 문제들도 다뤄야 한다며 PSI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핵 확산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과 적어도 핵 확산 문제에서는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노선보다는 국제공조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각국이 핵 밀거래에 연루된 국내조직을 소탕해서 엄중한 죄과를 물을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하도록 촉구하고 모든 국가들이 확산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도록 하는 새로운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채택을 제안했다.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중심이 된 핵 밀거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sup>36</sup> 핵 밀거래 조직이 다국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구상의 WMD와 관련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서방선진 8개국들의 협력사업인 G-8 지구적 파트너십의 강화를 촉

<sup>35</sup> - *Remarks by the President 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Fort Lesley J. McNair, National Defense University, Washington, D.C., February 11, 2004,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4/02/20040211-4.html>>; "Bush's speech on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New York Times*, February 11, 2004.

<sup>36</sup> - 파키스탄 핵무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칸(Abdul Qadeer Khan) 박사가 운영한 핵 밀거래 네트워크의 실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A Net Assessment: Nuclear Black Markets: Pakistan, A.Q. Khan and the Rise of Proliferation Networks*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7).





구했다.<sup>37</sup> 넷째,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미 이러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과 장비의 판매를 자제하도록 원자력선진국들에게 촉구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 단순히 안보상의 이유로 인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한이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제원자력기구의 역할을 확대·강화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①모든 국가들이 IAEA 추가의정서에 서명함, ②IAEA 이사회가 검증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③국제 비확산규범을 위반한 국가의 국민은 IAEA 이사회나 검증특별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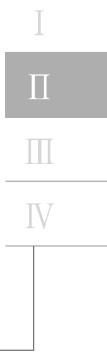
### 3. 기원과 전개과정

#### 가. 클린턴 행정부

확산방지구상의 기원은 1990년대 초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WMD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방부 중심으로 입안된 “확산저지구상”(Counterproliferation Initiative: CPI)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PSI가 CPI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은 현재 미 국무부에서 PSI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의 업무분담 내용에서도

---

37- 한편 2006년 8월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핵테러 방지 글로벌 구상”(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구상은 핵물질과 핵기술의 관리·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며, 핵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협력하고, 핵테러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의 약속을 담고 있다. G-8 지구적 파트너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Cheon Seongwhun,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6), pp. 37~38.



나타난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은 WMD 확산을 방지하는 제반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데, ISN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확산저지구상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과제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PSI를 이행하는 것이다.<sup>38</sup>

확산저지구상은 냉전 종식 이후 국제평화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한 WMD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목표 하에 국방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적 구상이었으나, 설득과 외교, 군축, 강압유인, 억지, 군사공격(선제·예방·무력화) 및 방어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WMD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개념이다.<sup>39</sup> 1994년에 미 국방부 차관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확산저지란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로 무장한 적을 상대로 미군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특별한 책임감을 갖고 수행되는, 외교·군비통제·수출통제·정보수집 및 분석을 포함하는 미국의 포괄적인 대확산 투쟁 노력 가운데 국방부의 역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40</sup> 이 정의에 따르면, 확산저지란 WMD로 무장한 적대국가와의 분쟁에 대비한 국방부 차원의 대비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확산저지는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 요소, 소위 “8D”로 구성된다: ①“단념”(dissuasion), ②“거부”(denial), ③“군축과 군비통제”

<sup>38</sup>- 다른 두 가지는 유엔안보리결의안 1540호를 이행하는 것과 미사일을 포함해서 WMD 확산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다. <<http://www.state.gov/t/isn/c18879.htm>>.

<sup>39</sup>- Harald Muller and Mitchell Reiss, “Counterproliferation: putting new wine in old bottles,” *Washington Quarterly*, Spring 1995, pp. 143~154.

<sup>40</sup>- Office of the Deputy Secretary of Defense, *Report on Nonproliferation and Counterproliferation Activities and Programs* (Washington, D.C.: The Department of Defense, May 1994), p. 1.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④“외교적 압박”(diplomatic pressure), ⑤“위협제거”(defuse), ⑥“억지”(deterrence), ⑦“파괴”(destruction), ⑧“방어”(defense). 각각의 요소가 담당하는 분야는 정확히 구분된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중복되는 영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단념, 거부 및 위협제거는 군비통제 및 군축과 그 역할이나 목표에서 상당부분 중복된다고 할 수 있다. 확산저지를 기존의 비확산과 차별화시키는 요소는 “파괴”이다. 파괴는 적대국가의 WMD를 “포획”(seize), “불능화”(disable) 혹은 “폐기”(destroy) 하거나 필요한 경우 WMD와 관련 물품을 실은 선박을 “추적·차단”(track and interdiction)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이는 PSI의 핵심 실천수단인 추적·차단 조치의 기원이 1990년대 초 클린턴 행정부에서 입안한 확산저지구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sup>41</sup>

## 나. 부시 행정부

모든 것을 “클린턴 대통령과 다른 방식”(anything but Clinton: ABC)으로 추진하겠다는 부시 대통령도 적어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는 부분에서는 클린턴의 적극적인 WMD 확산 저지 정책을 계승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발간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창했다.<sup>42</sup>

<sup>41</sup>- 확산저지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Joseph Pilat and Walter Kirchner, “The technological promise of counterproliferation,” *Washington Quarterly*, Winter 1995, pp. 153~166.

<sup>42</sup>-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September 2002), p. v,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policy/national/nss-020920.htm>>.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은 극단주의와 기술이 만나는 데 있다. 우리의 적은 공개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한다고 선언했고, 그들이 이러한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탄도미사일과 다른 운반수단에 대한 방어력을 갖출 것이다. 우리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서 위험한 기술을 획득하려는 적들의 노력을 거부, 봉쇄 및 중단시킬 것이다.

3개월 뒤인 2002년 12월 부시 대통령은 “국가안보대통령명령서”(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17호와 “국토안보대통령명령서”(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4호를 공동 선언하는 형식으로 “WMD와의 투쟁을 위한 국가전략”을 발표했다.<sup>43</sup> 이 전략보고서에서 부시 대통령은 적대국가와 테러집단의 WMD 획득을 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대한 안보도전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WMD와의 투쟁을 위한 미국의 국가전략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①WMD 사용을 막기 위한 확산저지, ②WMD 비확산 노력 강화, ③WMD 사용으로 야기된 사태에 대한 관리와 대응. 그런데 첫 번째 축인 확산저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차단이다. 보고서는 차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44</sup>

<sup>43</sup>-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December 2002), <<http://www.fas.org/irp/offdocs/nspd/nspd-17.html>>.

<sup>44</sup>- 영어원문은 다음과 같다: “Effective interdiction is a critical part of the U.S. strategy to combat WMD and their delivery means. We must enhance the capabilities of our military, intelligence, technical, and law enforcement communities to prevent the movement of WMD materials, technology, and expertise to hostile states and terrorist organizations,” *Ibid.*, p. 2.

효과적인 차단은 WMD 및 운반수단과의 투쟁을 위한 미국의 전략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WMD 물질, 기술 및 전문 지식이 적대국가와 테러조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군사, 정보, 기술 및 법집행 차원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불량국가와 테러집단의 손에 WMD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은 백악관이 테러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그 방향을 재정립한 “테러와의 투쟁을 위한 국가전략”이란 보고서에도 강조되었다.<sup>45</sup> 이 보고서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민주주의의 확산을 제시하면서 단기적인 차원의 네 가지 행동지침을 규정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량국가와 테러집단의 WMD 획득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는 WMD 개발에 필요한 물질, 전문지식 및 기타 능력의 접근을 거부하고, 관련 물질의 이동을 사전에 탐지하며, 테러집단의 WMD 사용을 억지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46</sup> 이는 PSI의 활동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보더라도, PSI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의 하나인 WMD 확산 저지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 계획된 행동지침이자 세부수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003년 9월 PSI 참가 11개국은 “차단 원칙에 관한 선언”(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WMD 관련 장비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효과적으로 차단·수색하고 확산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의 확산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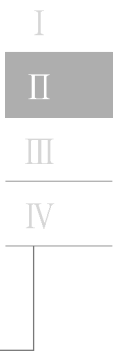
<sup>45</sup>- *National Strategy for Combating Terrorism*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September 2006), <<http://www.whitehouse.gov/nsc/nsct/2006/>>.

<sup>46</sup>- *Ibid.*, pp. 13~14.

담고 있다(<부록 7> 참조). PSI의 차단원칙은 네 개의 대원칙과 여섯 개의 세부지침으로 구성된다.<sup>47</sup> 네 개의 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각국은 확산의 우려가 있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들에게로 혹은 이들로부터의 WMD, 운반체계, 관련물질의 이전이나 이송을 차단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하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 (2) 확산이 의심되는 활동에 대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고, 참가국들이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차단작전과 능력 배양을 위해 적절한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며, 차단작전에 참가하는 국가들 사이에 공조를 최대화한다.
- (3)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법규를 검토·강화하고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법규와 틀을 강화하도록 한다.
- (4) 각국의 국내법규가 허용하고 국제적인 법규 및 틀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WMD, 운반체계 및 관련 물질을 선적한 화물에 대한 차단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다. 네 번째 대원칙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세부지침을 담고 있다:
  - ① 확산의 우려가 있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들에게로 혹은 이들로부터의 WMD, 운반체계 및 관련 물질의 운송을 지원하거나 직접 운송하지 않으며, 자국의 사

<sup>47</sup>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 September 4, 2003.



법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 있는 개인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② 각국은 자발적으로 혹은 다른 국가의 요청을 받아들여 확산의 우려가 있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들에게서 혹은 이들로부터의 WMD, 운반체계 및 관련 물질을 운송하는 것이라고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자국의 내해, 영해, 공해상에서 승선 및 검색을 실시하고, 이러한 화물이 적발될 경우 압수한다.
- ③ 각국은 WMD 관련 화물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국국적 선박에 대하여 다른 나라가 승선·검색 및 적발된 화물의 압수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④ 확산의 우려가 있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들에게서 혹은 이들로부터의 WMD, 운반체계 및 관련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을 내해, 영해, 접속수역에서 정선·검색하고 관련 화물을 압수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자국의 항구, 내해, 영해를 출입하는 의심스런 선박들에 대해서 승선, 검색, 압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⑤ 각국은 자발적으로 혹은 다른 국가의 요청을 받아들여 확산의 우려가 있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들에게서 혹은 이들로부터의 WMD, 운반체계 및 관련 물질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가 자국의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 검색을 위해 착륙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화물을 압수하며, 의심스런 항공기가 자국의 영

공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거부한다.

- ⑥ 자국의 항구, 비행장, 또는 기타 시설이 확산의 우려가 있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들에게로 혹은 이들로 부터의 WMD, 운반체계 및 관련 물질을 운송하는 환적중계지로 이용될 경우 의심스런 선박, 항공기, 기타 운송수단을 검색하고 관련 물품으로 확인된 화물을 압수한다.

PSI는 파트너십과 조율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실행된다.<sup>48</sup> 첫째, PSI는 공식 조약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단의 활동이다.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PSI는 참가국들에게 공식적인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 확산에 연루된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는 정치적인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 선박차단 훈련과 같은 PSI의 다국적 훈련은 참가국들이 보다 협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상호 조율 하에 의심되는 선박의 차단, 수색 및 나포를 위해 협조하도록 촉진한다. 둘째, PSI는 행동이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참가국간의 조율과 대비태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PSI 참가국들은 공동 작전을 통해서 개별국가의 능력을 모아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상승효과를 거두는 방식으로 협력을 추진한다.

PSI의 주안점이 선박차단에 있는 만큼 PSI 참가국들은 PSI의 기

---

<sup>48</sup>- Bureau of Nonproliferatio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Washington, D.C.: The State Department, July 28, 2004), <<http://www.state.gov/t/isn/rls/other/34726.htm>>.



본개념과 차단원칙을 승인함과 동시에 실제 상황에서의 차단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특히 PSI “실행전문가그룹”(Operational Experts Group)은 군사, 사법, 정보, 외교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고 차단훈련을 계획 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PSI에 참가하는 데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sup>49</sup>

- PSI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천명하고 차단원칙에 대한 선언을 수용하면서 PSI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해상, 공중 및 육지에서 차단 및 수색작전을 실행하기 위한 국내법규를 검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법규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 정보공유, 군사적·법적 집행수단의 제공 등 PSI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자산을 파악함.
- PSI 지원 요청과 기타 실행 활동을 위한 접촉창구를 제공하고 PSI 활동을 조율할 적절한 정부 내의 절차를 수립함.
- PSI 차단 훈련과 더불어 실제 차단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 승선규정 등 관련 협정에 서명하거나 PSI 노력을 지원할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sup>49</sup>- Bureau of Nonproliferatio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Washington, D.C.: The State Department, May 2005), p. 4, <<http://www.state.gov/t/np/rls/other/46858.htm>>.

PSI가 미국의 대외 정책으로 공식 천명된 것은 2003년 5월 당시 유럽을 순방 중이던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PSI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개념화, 이론화 작업을 통해서 정책적 기반을 갖춘 구상이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발표 즉시 구체적인 실천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다. 부시 대통령이 PSI 구상을 밝힌 지 일주일도 안된 2003년 6월 3일,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인 볼튼은 미 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에서 PSI 개념을 구체화하는 증언을 했고, 3개월 안에 서방 선진 11개국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회의가 개최되었다. 훈련의 경우, 2003년 9월 영국, 미국, 일본, 호주 해군이 참여하는 첫 해상 나포 훈련이 호주 해역에서 실시된 이래 2007년 10월 도쿄 남부 이즈 오시마(伊豆大島) 인근 해역에서 제23차 훈련이 실시되었다.<sup>50</sup> 지금까지 개최된 실행전문가그룹 회의와 차단훈련 및 앞으로 예정된 훈련 일정은 <부록 8>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회원국도 계속 확대되어 2007년 6월 4일 현재 84개 나라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부록 9> 참조). 볼튼 차관보에 따르면, PSI는 가능한 경우 외교적인 협상을 추진하지만 WMD 확산방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①경제제재, ②수출통제체제의 강화, ③해상·공중에서의 차단과 나포, ④필요한 경우 선제 군사공격 감행.<sup>51</sup>

<sup>50</sup>- 2007년 10월 13~15일 실시된 이번 훈련은 2004년 10월에 이어서 일본이 주최하는 두 번째 PSI 훈련이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이 구축함, 초계기 등을 파견, 실제 훈련에 참가했고, 옵서버로 참가한 나라도 34개국이나 된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서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첫날엔 각국 함선과 초계기가 화학물질 등 수상한 물질을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 선박을 추적, 조사를 위해 승선하는 내용의 훈련을 벌였다. 둘째 날 이후엔 승선 후 선박을 수색해 은닉한 화학무기류 등을 수색, 압수하는 훈련을 벌였다. 『연합뉴스』, 2007년 10월 13일.

<sup>51</sup>- *Testimony of John Bolton, Under Secretary for Arms Control and*

북한과 관련해서 볼 때, PSI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화당 정책브리더들이 1999년 3월에 제시했던 소위 “포괄적인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에 포함된 하나의 수단이 현실에 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52</sup> 포괄적인 접근은 제네바 기본합의가 북한이 제기하는 다중적인 안보위협을 제거하는데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고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될 수 있으나 그 중착역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북한의 총체적인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담고 있다. 포괄적 접근의 핵심은 북한의 핵, 미사일, 재래식 위협 문제, 대북 안전보장과 경제 지원 등을 모두 의제로 올려놓고, 한·중·일의 협조 하에 보다 대규모의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를 다룰 6자회담도 포괄적 접근에 포함되어 있었다. 돌이켜 볼 때, 포괄적인 접근의 상당부분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포괄적인 접근이 북한에 대한 협상과 당근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포괄적인 협상을 추진하되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억지와 봉쇄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공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억지와 봉쇄를 강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북한의 미사일을 실은 선박을 해상에서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PSI의 탄생동기가 WMD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PSI는 불량국가와 테러집단의 각종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약, 인권,

---

*International Security, U.S. Department of Stat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June 4, 2003.*

<sup>52</sup>- Richard Armitag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 *Strategic Forum*, No. 159, March 1999.

위조지폐, 돈세탁 등이 포괄적인 범죄행위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PSI의 주요 목표라고 인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PSI가 시작되기 전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53</sup>

- 미국과 스페인이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 서산호를 나포한 사건(2002년 12월),
- 일본정부가 북한에서 마약을 싣고 들어오던 일본 선박을 나포한 사건(2003년 3월),
- 독일과 프랑스가 HEU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 튜브를 실은 선박과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가능한 시안화나트륨을 적재한 북한행 선박을 나포한 사건(2003년 4월),
- 호주해군이 마약을 실은 북한 선박 봉수호를 나포한 사건(2003년 4월),
- 우리 정부가 북한을 경유해서 부산으로 입항한 중국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한 사건(2003년 6월),
- 로켓 연료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싣고 대만의 가오슝항에 정박하고 있던 북한선박 기흥호를 검색, 158 배럴의 물질을 압수한 사건(2003년 8월),
-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부품을 싣고 리비아로 향하던 독일 선박 BBC China를 이탈리아의 타란토 항으로 입항토록 해서 관련 장비를 압수함으로써 리비아의 핵포기 결단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건(2003년 10월).

---

<sup>53</sup>- James Brooke, "North Korea suspends its passenger ferry link with Japan," *New York Times*, June 9, 2003.



# III

## PSI에 대한 입체적 분석





## 1. 맞춤형 봉쇄

### 가. 냉전시대의 봉쇄정책

“봉쇄”(Containment)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냉전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소련의 세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채택한 외교안보정책이었다. 1946년 2월 22일 모스크바주재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케넌(George Kennan)이 워싱턴에 보낸 8,000자에 달하는 장문의 보고서가 봉쇄정책의 토대가 되는 기본개념을 제공했다. 케넌이 구상했던 봉쇄정책의 기본 목표는 적과 우방 및 미국 국민들이 미국에 우호적인 국제질서의 출현을 촉진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케넌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①서유럽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유럽에서의 힘의 균형을 복원함, ②소련과 주변국의 갈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련의 국제적 영향력 감소를 유도함, ③소련의 대외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함.<sup>54</sup> 케넌은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기 위해서 정치·경제·심리·군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자 했다.<sup>55</sup> 냉전이 시작된 트루만 행정부에서부터 소련이 멸망하던 부시 행정부까지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큰 틀에서 봉쇄정책을 수행했지만, 봉쇄정책을 구사할 대상과 이 정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행정부들 사이에 상당한 인식의 편차가 존재했다.<sup>56</sup>

<sup>54</sup>-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35.

<sup>55</sup>- *Ibid.*, p. 97.



예를 들어,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정부가 추진한 대소 봉쇄정책은 “새로운 관점의 전략”(New Look Strategy)라고 명명되었는데, 기본적인 철학은 특정 사안이 갖는 국가이익의 중요도에 따라서 미국의 대응을 달리하면서 미국의 강점을 활용해서 소련의 약점을 공략한다는 소위, “비대칭적 대응”(asymmetric response)이었다.<sup>57</sup> 아이젠하워 정부는 봉쇄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수단을 동원했다: ①대량보복을 위한 억지력 구축, ②동맹 결성, ③심리전, ④비밀공작, ⑤협상. 반면에 민주당인 케네디 행정부가 추진한 대소 봉쇄정책은 “유연반응전략”(Flexible Response Strategy)라고 명명되었다. 유연반응전략의 기본철학은 소위, “대칭적 대응”(symmetric response)으로서 소련과 관련된 사안에 걸려있는 국가이익은 똑같이 핵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케네디 정부가 봉쇄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원한 수단은 다음과 같다: ①재래식 및 핵 군사력 강화, ②전략 미사일 보강, ③동맹의 강화, ④비군사적 수단의 강조, ⑤국방에 핵심적인 국내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⑥소련과의 협상 확대.<sup>58</sup>

아이젠하워는 비대칭 대응 원칙에 입각, 재래식 전략 증강을 포기하는 대신 핵능력을 강화해서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했다. 소련이 소규모의 재래식 전력을 사용해서 국지도발을 하는 경우에도 가공할 핵능력으로 보복하겠다는 “대량보복전략”(Massive Retaliation)이 나온 것도 비대칭적 대응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반

<sup>56</sup>- *Ibid.*, p. 259.

<sup>57</sup>- *Ibid.*, pp. 145~157.

<sup>58</sup>- *Ibid.*, pp. 213~214.

면에 케네디 행정부는 대량보복전략의 현실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즉 소련의 재래식 국지도발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과연 미국이 핵 무기로 대량 보복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제기였다. 소련이 조금씩 서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대량보복전략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케네디 행정부가 제시한 대안이 바로 유연반응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소련이 야기하는 모든 규모의 도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칭적 대응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미국과 NATO는 유연반응전략에 입각, 소련의 소규모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재래식 전력 증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냉전시대에 봉쇄정책이 적용되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비로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에 대해 민감한 기술과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창설되었던 “대공산권수출통제체제”(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COCOM)이다. 1947년 후반 영국이 소련에 55기의 가스튜브엔진을 판매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창설 논의가 시작되었고, 1948년 미국, 영국, 프랑스 3국간의 접촉이 그 기원이 되었다. COCOM의 조직과 통제대상 물품리스트는 1949년 11월에 합의되었으며 1950년 1월부터 이행되었다.<sup>59</sup> 1994년 3월 31일부로 해체될 때까지 COCOM은 NATO 16개 회원국 중 아이스랜드를 제외한 15개국과 호주 및 일본이 회원국으로, 다른 6개국이 COCOM의 규정을 준수하는 협력국으로 참여하였다.<sup>60</sup> COCOM은

<sup>59</sup>- Ian Anthony, “The 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in Ian Anthony, ed., *Arms Export Regu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 208.

<sup>60</sup>- 17개 회원국들은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미국, 영국 등이다.

규제대상국가들의<sup>61</sup> 군사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수출통제제도이지만 국제조약이라기 보다는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의 연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강요하거나 위반시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고, COCOM의 모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COCOM은 시대적으로 그 강도를 달리하면서 적용되었다. 적용강도의 변화는 COCOM을 이행하면서 “예외”(exception)가<sup>62</sup> 허용된 빈도수, 통제대상리스트의 범위와 해석, 규정준수 정도, 수출통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태도 등을 근거로 파악할 수 있다.<sup>63</sup>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강력히 적용되었던 COCOM은 1970년대에는 완만하게 그리고 1980년대에는 다시 엄격하게 이행되었다. COCOM은

---

6개 협력국들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홍콩, 뉴질랜드 및 스웨덴이다. *The Arms Control Reporter* (Cambridge, Mass.: Institute for Defense and Disarmament Studies, 1994), p. 250.A.1. 홍콩 대신 스위스가 협력국이라는 견해도 있다. Ian Anthony, Anna De Geer, Richard Kokoski and Thomas Stock, “Multilateral weapon-related export control measures,” *SIPRI Yearbook 1995: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 619.

<sup>61</sup> - COCOM이 규제대상국가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토니(Ian Anthony)는 알바니아, 불가리아, 중국, 체코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오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몽고,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등이 규제대상국가라고 밝혔다. Ian Anthony, “The 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p. 209. 이 견해에 따르면 북한은 공식적인 규제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과 서방국가들간의 거래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에 북한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sup>62</sup> - 두 가지 예외규정이 있다. 첫째, “행정적 예외”(administrative exception)의 경우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통제대상 물품의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는 COCOM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Claus Hofhansel, “From containment of communism to Saddam: the evolution of export control regimes,” *Arms Control*, Vol. 14, No. 3, December 1993, p. 381.

<sup>63</sup> - *Ibid.*, pp. 381~382.

규제대상국이 군사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과 물품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창설되었지만 상업거래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군사적인 이유가 아닌 외교적 혹은 기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상업적인 거래가 무산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COCOM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군수품이나 민감한 원자력 기술에 관련된 물품에 대한 거래가 허용된 적은 없었지만, 산업용 물품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수출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COCOM 내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sup>64</sup>

## 나. 탈냉전시대의 봉쇄정책

봉쇄정책의 주요 대상이 사라지고 국제사회가 탈냉전 시대에 진입했지만 봉쇄의 기본개념이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에도 인접국가인 쿠바에 대한 사실상의 봉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한 사례이다. 봉쇄의 규모가 과거 소련과 같은 거대한 적국의 세력팽창을 저지하는 것과 같이 큰 것은 아니지만, 적대국가의 WMD 확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봉쇄의 개념을 적용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탈냉전 시대의 봉쇄는 문제를 야기하는 개별국가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봉쇄정책의 내용과 수단을 조절하는 소위, “맞춤형 봉쇄”(Tailored Containment)의 모습을 띠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사회가 과거와 달리 훨씬 복잡다원화 되었고 위협요인도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형 봉쇄”

---

<sup>64</sup>- Ian Anthony, “The 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p. 210.

(One-Size-Fits-All Containment)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맞춤형 봉쇄가 탄생한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냉전시대에 봉쇄정책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인 COCOM도 냉전 종식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여 1996년 7월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로 새롭게 탈바꿈하였다. COCOM 회원국들의 입장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이 개방정책을 펴면서부터였다. 1989년 10월 COCOM 회의에서 독일과 이탈리아는 동구권 국가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COCOM의 수출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COCOM 회원국들의 입장변화는 “대화과 협력을 통해 소련과 폴란드 및 헝가리의 개혁과정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COCOM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주미 독일대사관의 주장에 잘 반영되었다.<sup>65</sup>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COCOM 회원국들은 1990년 말까지 COCOM이 규제하는 116개 항목 중 30개를 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국제산업물품리스트에 포함된 600개의 이중용도물품 중 350여 개를 통제에서 해제하였다. 1991년 5월에는 “올타리는 높게, 대상품목은 적게”(higher fences, fewer goods)라는 기조하에 가장 중요한 기술과 물품만으로 구성된 “핵심리스트”(core list)를 작성하여 통제범위를 더욱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sup>66</sup> 핵심리스트는 서방의 무기체제와 소련의 기술에 바탕을 둔 무기체제간에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과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다.<sup>67</sup>

---

<sup>65</sup>- *Ibid.*, p. 207.

<sup>66</sup>- Gary Bertsch and Richard Cupitt, “Nonproliferation in the 1990s: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xport controls,” in Brad Roberts, ed., *Weapons Proliferation in the 1990s*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95), p. 120.

더 나아가 COCOM은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우호정책을 실시하여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이 소련에 비해 보다 많은 첨단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sup>68</sup> 아울러 COCOM 회원국들은 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과거 COCOM의 대상이었던 국가들에 대해 발전된 기술을 이전하여 이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COCOM 협력포럼”(COCOM Cooperation Forum)을 창설하였다.

1993년 11월 17일 COCOM 회원국들은 1994년 3월 31일부로 COCOM을 회원국을 확대한 새로운 체제로 전환시키기로 합의하였다.<sup>69</sup> COCOM은 1994년 3월 31일부로 효력이 종료되었으나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되는 데는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28개 참가국들이 1995년 12월 18~19일 네덜란드의 바세나르에서 새로운 체제의 “최초요건”(Initial Elements)에 합의하고 각국 정부의 승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최종선언문을 발표하였다.<sup>70</sup> 이를 바탕으로 1996년 7월 11~12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33개 회원국들이<sup>71</sup> 최초요건을 채택함으로써 바세나르체제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회원국들은 1996년 11월 1일부로

<sup>67</sup>- Ian Anthony, “The 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p. 208.

<sup>68</sup>- *Ibid.*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1985년부터 소위 “China Green Line”이라는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의 경우 COCOM의 검토절차를 생략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sup>69</sup>- COCOM의 해체와 바세나르체제의 형성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Owen Greene, *Briefing: Developing an Effective Successor to COCOM* (London: Saferworld, 1995) 참조하기 바란다.

<sup>70</sup>- *Final Declaration by the Chairman*,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the Netherlands, on December 19, 1995.

<sup>71</sup>-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한국,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등이다.

I
II
III
IV

바세나르체제를 발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1세기 들어서 맞춤형 봉쇄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북한 핵문제이다. 그리고 PSI는 2002년 말 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대북 맞춤형 봉쇄의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대북한 맞춤형 봉쇄

북한에 대한 맞춤형 봉쇄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위기의 해법을 놓고 충돌했던 미국 내에서 대북협상을 지지하는 온건파와 북한정권의 붕괴를 주장하는 강경파 사이의 타협안으로 부상했다.<sup>72</sup> 맞춤형 봉쇄는 2002년 말 북한이 처한 여건에 맞추어 대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으로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당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 의해서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맞춤형 봉쇄의 기본 취지는 제재위협, 미사일을 선적한 북한 선박에 대한 나포, 경제협력 축소 등을 통해서 북한을 고립시킴으로써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도 포함되어 있다. 맞춤형 봉쇄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정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일부의 비판과 같이 맞춤형 봉쇄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조장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봉쇄정책의 창시자인 케년의 기본적인 의도 역시 소련의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

---

<sup>72</sup>- Gleen Kessler, "U.S. has a shifting script on N. Korea," *Washington Post*, December 7, 2003, p. A25.



라 소련 내부의 점진적인 변화를 장려하는 것이었다. 케넌은 상대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sup>73</sup>

2002년 10월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미국이 대응조치로 취한 대북 중유제공 중단이 맞춤형 봉쇄정책에 기초한 첫 번째 대북 압박조치라고 할 수 있다.<sup>74</sup> 경수로 사업 중단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4월 미·중·북 3자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오히려 북한 대표가 핵무기 보유와 실험 가능성을 제기하자, 미국은 한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시킨 6자회담을 추진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봉쇄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sup>75</sup>

이런 맥락에서, 부시 대통령이 PSI를 공개 선언한 시점이 2003년 5월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3년 4월 북경 3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 발언 이후 PSI가 개시되었음을 감안할 때, PSI가 구체적인 대상국을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북한이 PSI 출범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던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후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까지는 회담을 우선시하는 견해가 우세했다. 하지만 4차 6자회담 직후 북한이 9·19 공동성명의 문안과 정신에 위배되는 ‘선 경수로 제공, 후 핵폐기’ 입장을 표명하자 여기에 좌절감을 겪은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sup>73</sup>-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p. 30.

<sup>74</sup>- Michael Gordon, “U.S. readies plan to raise pressure on North Koreans,” *New York Times*, December 29, 2002.

<sup>75</sup>- Gleen Kessler, “U.S. has a shifting script on N. Korea.”



판단을 내리고 PSI와 금융제재를 포함하는 맞춤형 봉쇄 정책을 강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봉쇄는 PSI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수단도 강구해왔다. 부시 행정부 들어서 북한인권 문제, 위폐제조 및 유통 문제, 불법자금의 해외 돈세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맞춤형 대북 봉쇄의 일환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각종 불법 거래를 통해서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6</sup> 예를 들어, 북한은 위폐를 제조·유통시켜서 연간 1,5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위조담배를 판매해서 연간 8,000만 달러에서 1억 6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4월 당시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각종 불법 활동을 통해서 연간 5억 달러 정도의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북한이 무기판매를 통해서 버는 돈과 비슷한 규모이고 정식 수출을 통해 버는 외화의 30~40%에 해당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김일성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3년부터 북한이 연루된 마약과 위폐사건의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불법 활동은 당과 군, 해외 공관 등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국제 범죄조직들과 연계를 통해서도 불법 활동을 전개해왔는데, 국제사회는 특히 국제 범죄조직의 유통경로가 WMD의 확산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sup>77</sup> 북한의 불법 행위 실태를 연구한 셰스넛(Sheena Chestnut)은 불법 활동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북한은 핵물질과 핵기술의 확산도 할 수 있는 동기와 수단을 갖고

---

<sup>76</sup>- Sheena Chestnut, "Illicit activity and proliferation," *International Security*, Summer 2007, pp. 80~111.

<sup>77</sup>- Bill Powell and Adam Zagorin, "The Sopranos state," *Time*, July 23, 2007, pp. 19~22.

있다고 진단하면서 북한에 의한 불법 핵확산 가능성을 우려했다. 구소련 지역의 WMD 밀거래 실태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범죄조직과 테러 및 WMD 확산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최근 들어 화학·세균물질의 밀거래가 적발되거나 방사능물질과 소총 및 마약의 밀거래가 함께 이뤄지는 등 주목해야 할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sup>78</sup>

물론 봉쇄정책을 통한 대북압박은 2007년 2·13 합의가 체결되면서 그 추진력이 크게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합의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BDA)에 동결되어있던 2,500만 달러의 북한자금을 뉴욕 연방은행까지 동원해서 북한에 보내줌으로써 부시 행정부는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맞춤형 봉쇄의 동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 더 나아가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며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도 그 이행에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13 합의를 이끌어낸 부시 행정부의 정책변화는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전술적인 것으로 평가된다.<sup>79</sup>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맞춤형 봉쇄는 현재 진행형의 정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가 2007년 5월 31일 안보리결의안 1718호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북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도<sup>80</sup> 6자회담이 지지부진하고 대북 제재가 재개될 경우에 미국의 맞춤형 봉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sup>78</sup>- Sonia Ben Quaghran-Gormley, “An unrealized nexus?: WMD-related trafficking, terrorism, and organized crime in the Former Soviet Union,” pp. 8~9.

<sup>79</sup>- 2·13 합의에 영향을 미친 부시 행정부의 정책변화 성격과 정도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제IV장 1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sup>80</sup>- 『연합뉴스』, 2007년 5월 31일.

부시 행정부가 2002년에 발표한 “WMD와의 투쟁을 위한 국가 전략” 보고서에서도 개별국가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이 보고서는 확산우려 대상에 대한 “맞춤형 전략”(Targeted Strategies)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WMD와의 투쟁을 위한 미국의 전체 전략의 모든 요소는 WMD를 획득하려는 테러집단 뿐만 아니라 확산 우려를 야기하는 공급국과 수요국에 대한 맞춤형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 각각의 정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WMD와 미사일이 이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와 동맹국이 가장 잘 예방, 억지 및 방어할 수 있는 국가별 구체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sup>81</sup>

결과적으로, PSI는 냉전종식 이후 WMD 확산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 클린턴 행정부에서 시작된 확산저지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99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한 공화당 브레인들이 구상한 포괄적인 대북 접근방식이 현실에 구현된 것이고, 아울러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불량국가와 테러집단을 대상으로 입안된 대북 압박정책인 맞춤형 봉쇄의 한 수단으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PSI는 WMD 확산을 저지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북한을 포함한 불량국가와 테러집단을 대상으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수단을 강구하는 맞춤형 봉쇄의 실천수단인 것이다.

---

<sup>81</sup>-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 6.

## 2. 강압외교

### 가. 강압외교의 특성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는 무력을 동원해서 상대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상대방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외교수단이다.<sup>82</sup> 또한 봉쇄정책이나 억지전략의 실천수단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강압외교의 목표는 상대방을 장악하거나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외교 및 군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진행되는 노력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압외교는 군사적인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와 능력이 확고할수록 강압외교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력을 사용하더라도 가급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군사력의 사용 범위가 매우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격퇴하고 일련의 유엔 안보리결의안에 의거해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색출·제거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강압외교의 전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대 이라크 압박은 봉쇄와 억지에 기초한 외교안보정책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sup>83</sup>

강압외교에서는 실제 사용여부와는 상관없이 외교의 수단으로 군사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강압외교가 분쟁발발을 야기할 가능성

<sup>82</sup>- Donald Daniel *et al.*, *Coercive Inducement and the Containment of International Crisis* (Washington, DC: United Institute of Peace, 1999), p. 22.

<sup>83</sup>- Jon Alterman, “Coercive diplomacy against Iraq, 1990~98,” in Robert Art and Patrick Cronin, eds., *The United States and Coercive Diplomacy*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03), p. 294.

이 있다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이 PSI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첫 번째 논리도 PSI로 인한 전쟁발발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강압외교로 인해서 전쟁이 유발된다는 주장은 지나친 단순논리이다. 기본적으로 강압외교는 군사전략이 아니라 외교전략이며 군사력의 사용이 아니라 군사력의 사용위협에 의존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sup>84</sup> 강압외교에 동원되는 군사력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필요한 경우 결의를 과시하기 위해 군사력이 사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무력사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게 된다.

강압외교는 억지와도 구별된다. 억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단념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강압외교는 이미 벌어진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런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북한의 예를 들자면, PSI는 오랫동안 미사일을 국제사회에 확산시켜온 북한에 대응해서 미사일을 포함한 WMD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강압외교의 한 수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강압외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통해서 특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sup>85</sup> 물론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도 하지만 군사력의 사용이 강압외교가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다. 만에 하나 무력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정도에 머문다. 군사력의

---

<sup>84</sup>- Alexander George, "Introduction: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in Alexander George and William Simons, eds.,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Boulder: Westview Press, 1994), p. 2.

<sup>85</sup>- *Ibid.*, p. 10.

사용 목적도 상대방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강압외교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강압외교에서의 무력사용은 통상적인 군사전략의 일환이라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외교적 차원의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나. 강압외교의 유형

강압외교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으며 그 실천수단 역시 다양하다. 따라서 강압외교의 구성요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전체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광의의 강압외교를 주창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용되는 실천수단의 내용에 따라서(물론 강압이라는 공통의 특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강압외교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다는 강압의 기본적인 취지를 염두에 두면서 광의의 강압외교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세부 정책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군사력의 사용위협이나 사용에 초점을 맞춘 협의의 강압외교이다. 물론 강압외교에도 상대방에 대한 보상 등의 유인책이 포함되지만 핵심은 군사력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이 포함된다는데 있다.<sup>86</sup>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강압외교는 “설득과 타협 등 순수한 외교적 수단과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제한적 무력 사용과 사용 위협 등 다양한 외교 및 무력 수단을 동원하는 오케스트라식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sup>87</sup> 가장 대표적인 강압외교의 유형이 바로 “함포외

<sup>86</sup>- Robert Art, “Introduction,” in Robert Art and Patrick Cronin, eds., *The United States and Coercive Diplomacy*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03), p. 7.



교”(Gun Boat Diplomacy)인데,<sup>88</sup> 강대국이 약소국의 해안에 막강한 해군력을 포진시켜놓고서 원하는 방향으로 약소국을 움직이는 함포외교는 과거에도 빈번히 사용되었다.

둘째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강압유인”(Coercive Inducement)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강압유인은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압박이나 강력한 설득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sup>89</sup> 강압유인의 기본목적은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상대방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고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강압유인을 범죄단속을 위한 경찰행위로, 강압유인에 동원되는 소수의 군사력을 치안질서를 지키는 경찰로 비유하고 있다.<sup>90</sup> 물론 특정 국가나 집단을 유엔안보리에서 범죄행위자로 지목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규범을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휴전협정을 관리하거나 휴전지역 내에서 인도적 물품의 자유로운 통과를 보장하는 행위, 내전지역에서의 무고한 민간인 살상을 방지하는 행위 등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도움을 주는 활동들이 강압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강압유인은 사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속성이 강하며 군사력도 방어적 차원에 국한해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상대방의 무기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

87- 최종철, “북핵 신 전략 구상: 한·미·중 연대 강압외교 전략,”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p. 81.

88- 국방대학교 최종철 교수 초청 자문회의 결과, 2007년 7월 18일.

89- Donald Daniel *et al.*, *Coercive Inducement and the Containment of International Crisis*, pp. 21~23.

90- *Ibid.*, p. 23.

셋째는 군사력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은 배제한 채 비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는 “강압조치”(Coercive Attempts)이다.<sup>91</sup> 강압조치에 동원되는 수단에는 경제제재를 가하거나 상대방의 이익이 걸려있는 자산을 동결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물론 이러한 수단들이 강압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강압조치와 강압외교의 차이는 군사력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이 가해지는가에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강압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표적, 즉 상대방의 큰 이해가 걸려있는 “압박점”(Pressure Point)을 찾아서 이를 공략해야 한다. 압박점은 강압외교를 구사하는 측에서 볼 때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상대방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sup>92</sup> 한 국가의 압박점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는 해당 국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들에 영향을 받겠지만, 특히 국가의 체제가 어떠한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론에 압박점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상층부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sup>93</sup> 이라크 전쟁을 예로 들면, 미국이 개전 초에 이라크 지도부를 집중 공격한 것은 후세인 정권의 압박점이 후세인을 포함한 지도부의 안위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반미 투쟁세력이 미군 살상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테러를 자행하는 것은 미국의 압박점을

<sup>91</sup> - Robert Art, “Introduction,” p. 7.

<sup>92</sup> - Daniel Byman and Matthew Waxman, *The Dynamics of Coercion: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Limits of Military Mi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 44.

<sup>93</sup> - *Ibid.*, pp. 44~47.



미국의 여론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광의의 강압외교에 해당하는 세 가지 정책이 갖는 한 가지 공통점은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의 연대”(coalition of willing)라는 점이다. NATO와 같은 집단안전보장 체제나 한·미 동맹과 같은 군사 동맹이 조약의 형태로 법적인 틀을 갖고 반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라면, 뜻 맞는 나라들의 연대는 특정 현안의 해결을 목표로 해서 한시적으로 형성되는 결속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94</sup>

#### 다. PSI와 강압외교

PSI가 WMD와 관련 장비의 불법적인 확산을 저지한다는 국제적인 합의와 규범을 실천하는 행위이고 군사력의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군사적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PSI는 협의의 강압외교에는 미치지 못하고 강압조치보다는 다소 강한 압박의 수단으로서 강압유인에 가까운 정책수단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 PSI를 적용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는 첫째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NPT에 재가입해서 비핵국가 상태로의 복귀, 즉 비핵화된 북한으로의 원상복귀이고, 둘째로, 핵 비확산이라는 21세기 국제사회의 귀중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강압유인의 관점에서 볼 때, PSI는 선제도발이 아니라 국제안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 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의 원상복귀는 현상변경을 야기한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한다.

---

<sup>94</sup> - 국방대학교 최종철 교수 초청 자문회의 결과, 2007년 7월 18일.

PSI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상국가의 압박점을 정확히 찾아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PSI의 관건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동원하는 수단보다는 대상국가의 압박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압박점은 핵개발에 관련된 북한 지도부의 의사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sup>95</sup>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역시 북한의 압박점을 북한 정권으로 파악한 강압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PSI의 초점을 북한 정권의 WMD 및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주관하는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행동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데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는 선박의 해상 검색이나 나포에 PSI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PSI가 북한의 압박점을 공략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북한이 WMD 확산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 정권에게 있어서 WMD 판매로 벌어들이는 돈은 정권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생명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SI는 WMD 확산 방지라는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도 달성하면서 동시에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압박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핵실험 후 유엔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의 내용 가운데 특히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대목은 지도층에 대한 선물 공세로 정권을 유지하는 북한 지도부를 위축시키고 행동반경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압박점을

<sup>95</sup> - *Ibid.*



공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96</sup>

PSI 역시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의 연대라는 점에서 강압외교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PSI는 국제조약이나 협정도 아니고 PSI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문서상에 서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단지 PSI의 취지와 목표에 공감하고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다시 말해서, PSI의 다른 참가국들과 뜻을 같이한다는 의사만 밝히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여의 수준과 형태도 각 나라가 처한 환경과 입장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2003년 6월 PSI 최초 회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여하면서 자국 영해에서 차단 훈련을 두 차례나 개최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서 ①한국 역내에서의 PSI 차단훈련 시 참관단 파견, ②한국 역외에서의 PSI 차단훈련 시 참관단 파견, ③PSI 활동현황을 브리핑할 전문가 접수 및 ④PSI 실행전문가그룹의 활동에 관한 브리핑 청취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⑤정식 훈련 참가, ⑥역내 차단훈련에 대한 물적 지원 및 ⑦역외 차단훈련에 대한 물적 지원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다. PSI와는 별도로 ⑧한·미 군사훈련 시에 실시되는 WMD 차단훈련은 지속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요구한 8개 항의 PSI 관련 참여사항에 대해서 5개 사항에만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sup>97</sup> 한국은 2006년 10월 말 페르시아 만에서 열린 지상·해상 차단훈련에 처음으로 참관단을 파견한 바 있다. PSI가 국제적인 연대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

---

<sup>96</sup> - *Ibid.*

<sup>97</sup> - 이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2005년 말에 결정한 사항이다. 『동아일보』, 2006년 1월 25일.

려한다면, 단순히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서 혹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무시한 편협한 사고의 소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강압외교의 관점에서 볼 때, 특징적인 사항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해결하려는 문제의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2002년 10월 발생한 제2차 북핵위기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대북 강압외교 정책은 핵문제의 원인제공자이자 그 중심에 있는 북한정권을 “범죄정권”(criminal regime)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압유인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대상의 범위도 핵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위폐, 돈세탁, 미사일 및 인권 문제 등 북한정권이 야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포괄하는, 소위 북한문제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3년 4월의 북경 3자회담 이후 PSI 구상이 발표되던 5월 말을 전후해서 미국 내에서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3년 5월 20일 미 상원 정부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복면을 한 두 명의 탈북자가 증언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핏제랄드(Peter Fitzgerald) 상원 의원은 “북한은 본질적으로 핵을 보유한 ‘범죄조직’(crime syndicate)이다. 북한 정부는 ‘범죄자’(criminal)인 것 같다”고 발언했다.<sup>98</sup> 이 자리에서 탈북자들은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물질의 90%가 일본에서 수입된다고 증언했고, 일본 정부는 때맞춰서 전자 부품 장비를 북한으로 보내려는 조총련계 회사를 급습하기도 했

<sup>98</sup>- George Gedda, “N. Korean defectors testify on weapons,” *Washington Post*, May 20, 2003.

다.<sup>99</sup> 이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두 가지 안보적 우려를 제기했는데, 하나는 북한이 마약밀매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약 밀거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2003년 2월 아미티지 국무부장관도 북한이 조만간 무기급 플루토늄을 불량국가나 테러집단에게 판매하거나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sup>100</sup> 북한이 이야기하는 문제들을 “잘못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북한문제”로 총체적으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미 행정부의 움직임은 북한 정권의 성격을 불량정권을 넘어서 “범죄 정권”(criminal regime)으로 규정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sup>101</sup>

사실 클린턴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출범한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방향을 포괄적인 “북한문제”의 제기과 일괄적인 해결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징후는 부시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포착되어 왔다. 클린턴의 대북정책을 거부하면서 6개월의 고민 끝에 내놓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제기하는 모든 안보적 우려사항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면서 종합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2001년 6월 13일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정책에 대한 성명은 다음과 같은 의제에 대해 북한과 포괄적인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sup>102</sup>

<sup>99</sup>- Sachiko Sakamaki and Doug Struck, “Japan cracks down on firms tied to N. Korea,” *Washington Post*, May 22, 2003, p. A23.

<sup>100</sup>- James Dao, “North Korea is said to export drugs to get foreign currency,” *New York Times*, May 21, 2003.

<sup>101</sup>- 2005년 12월 7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f=total&&n=200512070266>>.

<sup>102</sup>-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1/06/20010611-4.html>>.

-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의 개선,
-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미사일 수출의 검증 가능한 규제,
- 위협적인 재래식 군사력 태세.

부시 대통령의 성명이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에 비해서 제공할 당근을 불확실하게 제시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클린턴의 대북 유화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기본방침으로 설정하고 협상 가능한 의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sup>103</sup>

이러한 기조는 2차 북핵위기 발생 이후 2003년부터 보다 강경한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4월 5천만 달러 상당의 헤로인을 실은 북한 선박이 호주 특수부대에 의해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때부터 부시 행정부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병행해서 마약밀매, 지폐위조, 미사일 수출 등에 초점을 맞춘 대북 압박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sup>104</sup> 온건파로 알려진 파월 국무장관조차도 상원 증언에서 호주 특수부대의 선박 나포 사건은 북한의 범죄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고, 북한과의 화해를 위해서는 핵무기 개발과 함께 “범죄 행위”(criminal activities)도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05</sup>

결국 2002년 10월에 촉발된 제2차 북핵위기는 북한정권이 야기

<sup>103</sup>- Michael Gordon, “U.S. toughens terms for North Korea talks,” *New York Times*, July 3, 2001.

<sup>104</sup>- Glenn Kessler, “Plan for N. Korea will mix diplomacy and pressure,” *Washington Post*, May 7, 2003, p. A01.

<sup>105</sup>- Doug Struck, “Heroin trail leads to North Korea,” *Washington Post*, May 12, 2003, p. A01.

하는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제반 문제(WMD 확산, 인권, 마약, 위폐, 돈세탁, 미사일 확산 등)를 가칭 “북한문제”로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조명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맞춤형 봉쇄의 한 수단으로 전개된 PSI가 강압유인의 기능을 하면서 북한문제를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강압유인은 현실적인 대북 접근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우선 군사적인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힘에 의해 뒷받침되는 강압유인은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가능한 수단일 수 있다. 또한 2002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여론으로 자리 잡은 ‘미국에 의한 대북 공격설’이나 ‘미국에 의한 한반도 위기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정부에게는, 미국이 한반도 불안정의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동시에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 3. 공세적 억지

“공세적 억지”(Aggressive Deterrence)는 억지의 대상이 완성된 WMD인가 아니면 WMD 관련 부품과 장비인가에 따라서 “선제적 억지”(Preemptive Deterrence)와 “예방적 억지”(Preventive Deterrence)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에서 PSI는 공세적 억지전략의 실천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즉 완성된 WMD를 차단하는 경우에는 선제적 억지전략의 수단으로서 또한 WMD 관련 부품과 장비를 차단하는 경우에는 예방적 억지전략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선제”(Preemption)와 “예방”(Prevention)은 적대세력이 침략을 감행할 시점이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 구분된다.<sup>106</sup> 선제공격은 상대방의 침략이 임박한 경우에 자위의 수단으로 먼저 공격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침략위협이 분명하고도 긴박한 경우에 이런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공격은 국제법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반면에 예방공격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있을지 모를 위협에 대응해서 먼저 공격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협의 정도가 분명하고도 임박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공격은 자위보다는 노골적인 힘의 행사로 비춰져왔으며,<sup>107</sup> 국제사회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도 못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예방공격은 물론 선제공격에 대해서도 매우 조심스런 입장을 취해왔다. 진주만 피습이라는 역사상 최초의 영토공격을 당한 다음에도 이러한 입장은 지속되어왔다. 미국은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공격이나 예방공격 대신에 억지전략을 고집해왔다. 억지전략은 강력한 무력으로 상대의 침략을 억지하되 억지가 실패하면, 즉 상대가 억지선을 무너뜨리고 먼저 공격을 해오면, 그에 대응해서 상대의 침략을 격퇴시킨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억지전략은 먼저 상대의 공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대에게 먼저 공격을 한다는 선제공격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9·11 사태라는 미 본토에 대한 최초의 공격, 그것도 국가가 아닌 비국가단체 즉 테러집단에 의한 공격을 당한 부시 행정부는 안보전략의 기본입장을 크게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이 전

<sup>106</sup>- John Lewis Gaddis, “Grand strategy in the second term,”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05, p. 4.

<sup>107</sup>- David Sanger, “Bush appears to back down on arms claim against Iraq,” *New York Times*, January 28, 2004.



통적으로 기피해왔던 선제공격을 공식적인 군사안보전략의 요소로 채택하고 선제공격 전략의 수행에 필요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선제공격 독트린을 채택한 이유와 그 추진 방법 등 새로운 전략에 대한 사항들은 다음 몇 가지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가. 부시 대통령의 육사 연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6월 미 육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9·11 사태가 탱크 한 대 값도 안되는 수십만 불로 가능했다고 지적하고, 자유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은 “극단주의와 기술”(radicalism and technology)이 만나는 곳에 있다고 말했다.<sup>108</sup> 부시는 냉전 시대 미국의 안보가 의존했던 억지와 봉쇄 전략이 일부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억지의 효용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위협은 새로운 사고를 요구한다면서 특정국가에 대해 대량보복을 가하겠다는 억지는 보호할 국민과 국가가 없는 테러집단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WMD로 무장한 불량국가와 테러집단을 새롭고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부시 대통령은 위협이 구체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신속한 행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sup>109</sup> 아울러 테러와의 전쟁은 방어적 태세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적에게 전쟁을 걸

---

<sup>108</sup> - “Bush’s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graduation speech.”

<sup>109</sup> - 린스펠드 국방장관도 2002년 6월 6일 NATO 회원국들에게 WMD로 무장한 테러집단과 불량국가들을 상대로 행동하기 전에 “완전한 증거”(absolute proof)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Thomas Ricks and Vernon Loeb, “Bush developing military policy of striking first,” *Washington Post*, June 10, 2002, p. A01.

어서 적의 계획을 붕괴시키고 최악의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길은 행동이라면서 공세적 전략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인들이 전향적이고 단호한 사고를 갖추고 선제 행동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선제공격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sup>110</sup>

## 나. 2002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

2002년 9월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기본입장과 추진전략을 천명한 보고서이다.<sup>111</sup> 이 보고서는 9·11 사태의 경험을 반영하듯이, 지구적 테러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냉전 종식 이후 새로운 위협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거의 10년이 걸렸다고 밝히고, 불량국가와 테러범들이 추구하는 목표, 이들을 억지할 능력의 부재, 이들이 제기하는 위협의 급박함, 그리고 이들이 야기할 피해의 규모를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이 “반응적인 태세”(reactive posture)에서 상대의 선제공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새로운 위협의 특징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 ①보복위협에 의한 억지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모험을 하는 불량국가의 지도자들을 통제하기 어려움, ②불량국가와 테러범들은 WMD를 사용 가능

<sup>110</sup> 적의 위협에 선제공격을 가하겠다는 입장은 부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국의 대외개입을 전략적 이해가 걸려있는 지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선제공격 전략은 군사력의 기동성과 유연성 제고를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사고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 Mike Allen and Karen DeYoung, “Bush: U.S. will strike first at enemies,” *Washington Post*, June 2, 2002, p. A01.

<sup>111</sup>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September 2002).

한 무기로 간주하고 주변국을 협박하고 침략할 수단으로 삼음, ③ 전통적인 역지는 비인간적인 파괴와 무고한 인명 살상을 노리면서 순교자를 자처하는 테러범들을 통제할 수 없음.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과 공조를 모색하겠지만 미국에 대한 테러범들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선제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자위권을 행사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이 오랜 동안 선제공격의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위협이 클수록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야기되는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만큼 방어를 위한 “선행 행위”(anticipatory action)의 정당성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적들의 호전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선제공격을 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다. 2004~2009년도 국방계획지침서

2002년 7월에 마련된 “국방계획지침서”(Defense Planning Guidance)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국방력 증강 및 방위 예산 사용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는 비밀문서다. 국방계획지침서는 2002년 6월 부시 대통령이 육사연설을 통해 윤곽을 제시한 “예고 없는 선제공격”(unwarned preemptive attack) 독트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sup>112</sup>

국방계획지침서의 특징은 미사일방어, 우주배치무기 등과 같이

---

<sup>112</sup>- John Hendren, “High-tech strategy guides Pentagon plan,” *Los Angeles Times*, July 13, 2002.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무기체계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던 종전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미국이 안보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 어디서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적극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지침서라는 점이다.<sup>113</sup> 국방계획지침서에 등장하는 새로운 억지개념은 “전진억지”(forward deterrence)이고 전진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 수단이 “예고 없는 공격”(unwarned attack)이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미군이 전방위 억지 태세에서 신속하게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예고 없는 공격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무인항공기가 소형 정밀포탄을 다량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것과 잠재적 적과 이들의 위협에 대한 정보수집, 정보전쟁 능력, 특수전 수행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부시 대통령 취임 2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부시 행정부의 안보정책은 미사일방어에서 국토방어로 다시 선제공격으로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왔으며, 국방계획지침서는 선제공격 독트린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sup>114</sup>

## 라. 선제와 예방의 융합

부시 행정부는 기존의 억지전략에 추가해서 선제공격을 공식적인 안보전략의 일부로 채택하면서 실제로는 선제와 예방을 융합한 전략을 구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디스 교수에 따르면, 9·11 사태 이후 안전보장에 대한 점증하는 압력 속에서 이라크에 대해 벌인 선제공격은 사실상 예방공격이었다고 분석했다. 즉 예방의 목

<sup>113</sup>- William Arkin, “The best defense,” *Los Angeles Times*, July 14, 2002.

<sup>114</sup>- *Ibid.*

적으로 선제공격을 가한 것이 이라크 전쟁이라는 것이다.<sup>115</sup> 위협이 구체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부시 대통령의 육사연설에서 보여주듯이, 테러집단의 위협이 성숙해서 미국을 공격하기 이전에 즉 예방적 차원에서 먼저 선제공격을 가하겠다는 전략이 구현된 것이 이라크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PSI는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안보전략의 개념에 잘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적대세력의 공격을 사전에 억지한다는 기본 개념 하에, 선제적 억지와 예방적 억지의 개념을 융합시켜서 위협의 대상에 따라 대응하는 정책이 바로 PSI이기 때문이다. 만약 억지의 대상이 되는 위협이 완성된 WMD인 경우에는 위협의 정도가 분명하고 임박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제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에 억지의 대상이 되는 위협이 WMD 관련 부품과 장비인 경우에는 아직 위협의 수준이 공격을 감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방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미 행정부는 실제로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PSI의 억지 기능을 높게 평가했다. 예를 들어,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 외무성이 핵보유 성명을 발표하고 6자회담을 거부하는 상황이던 2005년 4월 21일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강력한 억지력이 있다”면서 “북한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있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의심스러운 화물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잠재력을 가진 PSI가 있다”면서 “우리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늘면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sup>116</sup> 이보다 한 달

---

<sup>115</sup>- John Lewis Gaddis, “Grand strategy in the second term,” pp. 4~5.

<sup>116</sup>- 『연합뉴스』, 2005년 4월 22일.

전인 3월 15일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상원외교위 인준청문회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힐은 PSI가 북한의 핵물질 확산 방지에 기여했느냐는 질문에 “매우 성공적이다. 많은 나라가 북한의 WMD 물질 구입을 희망하지만, 북한의 (이런 물질) 판매는 크게 줄었다. PSI는 주변국을 향해 북한에서 물질을 도입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다. 북한과 이런 거래를 하는 나라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고 답변하면서 PSI의 억지 기능을 높이 평가했다.<sup>117</sup>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억지와 예방적 억지를 융합한 개념을 공세적 억지라고 규정하고, PSI는 9·11 테러 이후 패러다임 차원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대외안보전략의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공세적 억지전략을 현실에 구현하는 실천수단이라고 진단한다.

---

<sup>117</sup>- 『동아일보』, 2005년 3월 17일.



# IV

## 한국의 대응방향







PSI는 국제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WMD 확산 방지라는 21세기 국제사회의 최대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간의 결속과 연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전 세계의 80개국 이상이 다양한 형태로 PSI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기존의 규범을 초월하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가면서까지 급변하는 국제안보질서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PSI가 탄생하게 된 주된 동기는 물론 WMD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 년 간의 추진과정을 통해서 PSI는 관심의 영역을 넓혀왔다. WMD 확산을 시도한 공급자와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넘어서 관련된 루트까지 봉쇄하고 차단함으로써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WMD 뿐만 아니라 불량국가와 테러집단의 각종 범죄행위를 차단하고 이에 연루된 루트를 봉쇄하는데 이르기까지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마약, 인권, 위조지폐, 돈세탁 등이 모두 WMD의 개발과 구매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테러집단과 불량정권이 국제규범을 위반하며 자행하는 모든 범죄행위가 사실상 PSI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안보동향의 중심에 북한이 놓여 있는 것이 한반도의 현실이다. 2·13 합의 이후 대북 압박조치의 동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6자회담이 지지부진한 경우 대북 압박은 언제라도 강화될 수 있다. 2007년 9월에 불거진 북한·시리아 핵 커넥션은 6자회담의 전도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앞으로 대북 압박이 재개된다면 그 강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될 것이다. 북한 정권의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실시되는 압박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I
II
III
IV

과정에서 PSI를 비롯한 대북 압박조치는 당면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의 장래와 남북통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PSI를 하나의 고리로 해서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대북 압박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분리가 아니라 연계전략임을 직시해야 한다. WMD와 미사일의 확산을 막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PSI가 공략하려는 압박점은 바로 북한 정권이며, 북한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모두 북한 정권으로 귀결되면서 대북 압박의 초점은 김정일 정권의 변화에 맞춰질 가능성이 많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위폐와 인권 문제를 각각 사법적 법집행과 인도주의 차원의 사안으로서 북핵문제와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입장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WMD 확산저지와 북한문제의 종합적 해결이 결합되어 한반도의 현상변경 내지는 동북아의 안보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거대한 전략과 구상이 PSI의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을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WMD 확산 저지가 21세기 국제평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임무라는 점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미국은 또한 마약, 위폐 및 인권 문제 등 북한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자국의 경제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조치이자 인권과 인도주의적 차원의 행동이라는 명분과 논리로 무장하고 있다.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러한 입장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만큼 세계여론의 호

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역으로 한국이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북한 정권을 자극해서는 않된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본 장에서는 PSI에 대처하는 한국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다음 PSI의 참여 수준을 불참, 전면참가, 부분참가의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에 대한 득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고려사항

### 가. 북한 핵문제

#### (1) 현황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안보위협이자 한반도 현상변경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20여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지배하던 북한 핵문제는 2006년에 10월 9일 핵실험으로 북한 핵의 실체가 입증됨으로써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되지 않았고, 6자회담의 제5차 3단계 회담이 2007년 2월 8~13일 개최되어 북핵폐기의 초기조치에 해당하는 소위 ‘2·13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은 2003년 4월 미·중·북한 3자회담을 모태로 시작된 6자회담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



다. 제1차 6자회담이 2003년 8월 북경에서 개최된 이래 2007년 10월 제6차 2단계 회담까지 열렸고, 2005년 9월에는 9·19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폐기 의무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안보·외교·경제적 반대급부를 명시한 포괄적인 문서로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이정표이자 총론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2·13 합의는 북핵문제가 총론 차원에서 각론 차원으로 국면 전환되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차 6자회담의 3단계 회의에서 도출한 합의의 가장 큰 성과는 2006년 7월의 미사일 발사와 10월의 핵실험으로 가파르게 상향곡선을 그리던 한반도의 긴장지수가 일단 주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13 합의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서 살펴보면 아래의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다.<sup>118</sup>

---

<sup>118</sup> - <표 IV-1>은 다음 논문에서 제시된 표를 보완한 것이다. 조성렬, “2·13 합의 이행과정에서의 과제와 해결방안,”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서울평화통일포럼 제7차 세미나, 2007. 5. 3), p. 33.

<표 IV-1> '2·13 합의' 항목별 정리

	항 목	내 용	
제 I 항	최종 목표	○ 한반도 비핵화 조기 달성	
	이행 원칙	○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 실시	
제 II 항	초기 단계	복측 이행조치	○ 영변 핵시설의 폐쇄·봉인 ○ IAEA사찰단의 입북 및 감시활동 재개 ○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에 대한 협의 개시
		북·미, 북·일 대화개시	○ 미·북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 개시 -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금 지정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를 위한 과정 개시 ○ 북·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 개시
		대북 보상조치	○ 9·19 공동성명 1조와 3조에 의거 참가국들은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 ○ 초기단계에서 중유 5만 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 - 2·13 합의 이행을 전제로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
		이행시한	○ 상기 초기 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
		실무그룹	○ 2·13 합의와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5개 실무그룹 설치 -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제 III 항	실무그룹	설치	○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계획 협의·수립 ○ 실무그룹의 진행상황을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보고 ○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각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
		임무	○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
		개최시한	○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
제 IV 항	중간 단계	복측 이행조치	○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 ○ 후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 실시
		대북 보상조치	○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 V 항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 초기조치 이행을 완료한 후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히 개최	
제 VI 항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착수	○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시작	
제 VII 항	후속 회담일정	○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한 뒤 다음 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	○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지원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 - 일본도 자국의 우려 사항이 다뤄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	

I  
II  
III  
IV

이상의 <표 IV-1>의 내용을 보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초기단계 조치: 3월 13일 이전까지 다음과 같은 5개 실무그룹의 가동을 개시함: ①한반도 비핵화, ②북·미 관계정상화, ③북·일 관계정상화, ④경제·에너지 협력, ⑤동북아 평화·안보체제. 4월 13일 이전까지 북한은 5MWe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 영변 소재 핵시설들을 폐쇄·봉인하고 IAEA 사찰관의 감시·검증 활동을 재개하도록 조치하며, 핵포기 대상으로서 신고해야 하는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에 대한 협의를 개시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중유 5만톤을 제공하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및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북·미 대화를 개시함.
- 다음단계 조치: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완료하고, 5MWe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실시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중유 95만톤 상당의 경제지원을 실시함.

그러나 북핵폐기의 초기 조치에 해당하는 2·13 합의가 만들어진 지 8개월이 지나서야 합의 이행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기운이 찾아오는 것같이 들뜬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마카오의 은행에 묶여 있던 북한 자금의 송금이라는 커다란 암초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가 미국 안팎의 비난을 무릅쓰고 뉴욕의 연방은행까지 동원해서 약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북한 자금을 러시아를 경유에서 보내줌으로써, 2·13 합의는 이행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송금이 완료되는 것과 거의 같은 시점에 북한은 6월 26일부터 29

일까지 IAEA 전문가팀의 방북과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허용했다. 뒤이어 북한은 7월 6일 외무성대변인을 통해서 영변 핵시설이 가동 중지되었다고 공식 발표했고, 7월 중순 IAEA 사찰관의 봉인과 검증 조치를 수용했다. 2·13 합의 체결 이후 60일 이내에 끝냈어야 할 5MWe 원자로의 폐쇄와 봉인 조치가 거의 100여 일이나 지연된 것이다.

2007년 10월 초에 개최된 제6차 2단계 회담에서는 북한이 핵심 시설에 대한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의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의 제2단계 합의문이 도출되었다. 특히 제2단계 합의에서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데 핵심적인 시설인 5MWe 원자로, 재처리시설 및 핵연료제조시설에서 주요 부품 10여 개를 제거하여 별도로 보관하는 불능화 작업을 2007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하는 데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핵물질과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제2단계 합의에 따라서 2007년 11월 1일 미국의 핵전문가 팀이 북한을 방문, 불능화 작업에 착수했다.

## (2) 쟁점

2·13 합의가 어렵사리 이행단계에 진입했지만,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북한은 폐쇄라는 말 대신에 가동중지라는 표현만 사용하고 있다. 7월 6일자 외무성대변인의 발언도 “핵시설 가동중지 과정에 실제적으로 착수”했다는 것이다.<sup>119</sup> 폐쇄가 재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

I  
II  
III  
IV



는 반면에 가동중지는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표현이다. 5MWe 원자로가 노후화될 대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재가동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폐쇄라는 용어가 북한 당국의 핵폐기 의사를 보다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제네바 기본합의 때와 같이 IAEA 사찰관이 영변 핵단지에 상주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2007년 7월 14일 입북한 IAEA 사찰단이 감시카메라와 봉인장치를 설치했지만 과거와 같이 IAEA 감시요원의 상주가 허용될지는 불확실하다. 2007년 6월 26~29일 IAEA 보장조치부국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합의한 내용에 상주감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sup>120</sup> 북한은 IAEA 회원국도 아니고 NPT에서도 탈퇴했다는 소위, 특수한 지위를 이유로 2002년 10월 이전에 실시되었던 상주감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 단계에서 영변 핵단지 내에서 사람과 기계에 의한 모든 핵활동을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군축회담에서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불능화”(disablement)라는 표현이 등장함으로써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동결”(freeze)은 시설을 그대로 놔 둔 채 가동만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폐기”(dismantlement)와 “해체”(disassembly)는 시설을 파괴하거나 해체해서 재가동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비교할 때, 불능화는 동결과 폐기·해체의 중간단계로서 완전한 폐기는 아니지만, 재가동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어

---

<sup>119</sup>- 『연합뉴스』, 2007년 7월 6일.

<sup>120</sup>- *Monitoring and Verific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OV/2007/36,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July 3, 2007.

중간한 상태로 파악된다. 불능화가 생소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정의를 내렸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2·13 합의 당시부터 불능화의 범위와 심도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당초 한·미 양국은 거의 불가역적인 수준의 불능화를 염두에 두었지만, 북한의 반발 때문에 크게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불능화의 수준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한·미 당국은 2008년도부터 핵폐기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불능화의 수준 정도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연 2008년부터 핵폐기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핵폐기는 2·13 합의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이 필요하며, 핵폐기 협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관련, 2·13 합의문에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협상에서 회담에서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결과를 보도한 2월 13일자 조선신보도 이번에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의 무력증강계획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sup>121</sup> 앞으로 북한은 중국이 의장국인 비핵화 실무그룹에서 뿐만 아니라 6자회담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지,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보장조약 체결 금지 등 ‘북한식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다. 즉 6자회담을 북·미 핵군축 회담의 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sup>122</sup>

<sup>121</sup>- 『조선신보』, 2007년 2월 13일.

<sup>122</sup>- 북한의 핵군축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전성훈, “북한의 미사일 확산과 핵무장: 그 전략적 함의,” 『한반도 군비통제』 (서울: 국방부, 2006년 12월), pp. 59~69.

미국은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성실하게 수행하는가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2·13 합의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불능화를 해 봐야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렸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sup>123</sup> 힐 차관보도 북한이 핵시설을 포기할 목적으로 폐쇄·봉인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sup>124</sup> 이와 관련해서, 3단계 5차 6자회담 개최 직전에 평양을 방문했던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SIS)의 알브라이트 소장은 핵시설 불능화는 영구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으로 구분되는 데 북한 관리들은 일시적인 불능화 조치만을 말했다고 밝혔다. 알브라이트 소장은 일시적인 불능화는 단지 시설에서 연료를 빼버리고 원할 때는 연료를 다시 넣으면 되는 방식인 반면에 영구적인 불능화는 연료를 빼낸 뒤 핵심을 파괴하는 것인데 북한은 일시적인 불능화만 허용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sup>125</sup> 한편, 2007년 9월 1~2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마친 크리스토퍼 힐 미국대표는 북한이 2007년 말까지 모든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sup>126</sup>

제2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역사를 돌이켜 볼

<sup>123</sup> - Secretary Condoleezza Rice, *Briefing on the Agreement Reached at the Six-Party Talks in Beijing*, Washington, D.C., February 13, 2007,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7/feb/80496.htm>>.

<sup>124</sup> - 힐이 한 발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North Koreans agreed to shut down their reactors and seal them for the purpose of abandoning them. Any action to restart the reactors would be a violation of the agreement.” Helene Cooper and Jim Yardley, “Pact with North Korea draws fire from a wide range of critics in U.S.,” *New York Times*, February 14, 2007.

<sup>125</sup> - 『동아일보』, 2007년 2월 15일.

<sup>126</sup> - 『연합뉴스』, 2007년 9월 3일.

때, 한·미가 원하는 만큼의 철저한 불능화와 신고가 이뤄지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즉 북한이 불능화와 신고를 제한되고 불완전하게 이행할 가능성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2·13 합의 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다.<sup>127</sup> 이미 불능화의 정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핵시설 가동중단과 불능화의 대가로 2·13 합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우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7월 6일 핵시설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 후에도 약속된 정치·경제적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핵활동의 재개는 합법성을 띠게 된다고 경고했다.<sup>128</sup> 원자로 가동 중단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 7월 15일자 발언에서는 2·13 합의의 완전한 이행은 미국과 일본이 대북 적대정책을 해소하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sup>129</sup>

북한이 보고해야 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놓고서 상당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찌면 핵시설 폐쇄·봉인보다 중요한 2·13 합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플루토늄 프로그램,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핵무기 및 핵실험 시설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sup>127</sup> 불능화·신고의 다양한 가능성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전성훈, “북핵 폐기 로드맵(2008~2012): 향후 5년간의 예상과 우리의 대응,”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창설 2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7), pp. 157~160.

<sup>128</sup>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만일 우리가 핵시설의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 후에도 약속된 정치·경제적 보상조치들이 제때에 따라지지 못하여 신뢰가 허물어지는 경우 핵활동의 재개는 합법성을 띠게 될 것이다.” 『연합뉴스』, 2007년 7월 6일.

<sup>129</sup> 『연합뉴스』, 2007년 7월 15일.

영변 핵시설에서 “군사용”이라는 이유로 제네바 합의당시 사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두 개의 시설도 이번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6자 수석대표회담을 끝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7월 21일 핵무기의 신고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현존 핵계획, 다시 말해 영변 핵시설을 가동 중단하고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하는 것이며 그러자면 경수로가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sup>130</sup> 김계관의 발언은 불능화·신고의 범위를 영변 핵시설에 국한하면서 HEU와 핵무기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미국이 기대하는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한국이나 미국 모두 국제법상 경수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계관의 경수로 제공 요구는 사실상 억지와 다를 바 없다. 핵무기확산금지조약, 즉 NPT 규정상, 핵보유국에 대한 원자력 기술 지원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보유국이 된 인도가 핵무기를 보유한 채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기술지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고무되어 있는 듯 하다. 예를 들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지난 3월 5일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회담에서 북한을 인도처럼 대우해달라고 요구했다.<sup>131</sup>

---

<sup>130</sup> - 『연합뉴스』, 2007년 7월 21일.

<sup>131</sup> - 『조선일보』, 2007년 3월 28일.

## 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2006년 12월 18~22일 열렸던 6자회담의 제5차 2단계 회의까지만 해도 전망이 보이지 않았던 회담이 불과 두 달도 안되어 돌파구를 찾은 것은 북·미 베를린 회동이 결정적인 계기였으며, 이 회동을 전격 제의해서 협상의 물꼬를 튼 것은 바로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고집스럽게 거부했던 부시 행정부였다. 부시 행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2007년 3월 19일 방코델타아시아에 동결되어 있던 2,500만 달러의 불법자금을 전액 동결 해제한다고 발표했고, 제2차 북핵위기의 발단이었던 HEU 문제에서도 과거의 엄격한 정보판단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sup>132</sup> 부시 행정부는 2002년 10월 당시의 정보평가와 비교할 때, HEU 프로그램의 진전 상황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보고 HEU 프로그램의 심각성을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용어도 바꾸어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ranium Enrichment Program: UEP)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133</sup> 즉 부시 행

<sup>132</sup> - 디트라니(Joseph DeTrani) 국가정보국 북한담당관은 2007년 2월 27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북한이 공장규모의 HEU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질을 획득했다는 정보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공장규모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정보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디트라니의 발언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ile there is ‘high confidence’ North Korea acquired materials that could be used in a production-scale uranium program, there is only ‘mid-confidence’ such a program exists.” Glenn Kessler, “New doubts on nuclear efforts by North Korea,” *Washington Post*, March 1, 2007, p. A01.

<sup>133</sup>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HEU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자 한다.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의 발단이 되었던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어기며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우라늄 농축 기술을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으로부터 습득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한 점의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UEP라는 완화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북한이 쉽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골문을 옮겨주는 것일 수는 있지만, 북한 정권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정부는 2002년 10월 이후 북한이 HEU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추  
가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 북한의 HEU 프로그램이 가동  
중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듯하다. 의견상 상당히 변화한  
것처럼 보이는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과 맞물려 있고, 이는 미국의 보다 광범위한  
대한반도 정책전환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을 야기하면서 비상한 관  
심을 끌고 있다.

특히 2006년 5월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정전상태의 종식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뉴욕 타임스 보도가 나온 이  
후,<sup>134</sup>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2006년 11월 8일 개최된 한·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남북한·미국 3자 종전선언’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  
를 밝힘으로써,<sup>135</sup>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정도와 이로 인한  
한반도 안보상황의 급변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  
책 나아가 북한정책은 전략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전술적 차원의 변  
화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부시 대통령의 기본적인 대북관이  
바뀐 것이 아니고, 정책변화의 폭과 심도 역시 중·장기적으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인 것이라기보다는 2·13 합의를 통해서 북

---

<sup>134</sup> - 보도의 요지는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과 젤리코(Philip Zelikow)  
자문관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북 포괄접근 방식은 비핵화 노력과 대북 금융제  
재를 지속하는 동시에, 정전상태의 종식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전제 하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  
하겠다는 것이다. David Sanger, “U.S. said to weigh a new approach on  
North Korea,” *New York Times*, May 18, 2006.

<sup>135</sup> - 스노우(Tony Snow)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November 17, 2006,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6/11/print/20061117-16.html>>.

한의 추가 핵개발 저지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를 그 배경과 성격 및 추구하는 목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정책 변화의 배경

북핵정책의 전술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자리잡고 있다. 첫째, 부시 행정부의 대내외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임기를 2년여 남겨둔 부시 행정부가 처한 대내외 정치상황이 지난 6년간 견지해 온 북핵정책의 원칙을 일부 바꿔서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정도로 약화되었다. 이라크 전쟁의 실패,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정세의 불안,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및 북한의 핵보유 등으로 인해서 외교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이다. 결국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다급한 상황인식 하에서, 그나마 해결하기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북핵문제에서 기존의 정책을 일부 수정해서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부시 행정부 내에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충격을 받고 더 이상의 사태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북·미 직접대화를 추진하여 북핵문제를 현 상태에서 봉합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는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을 유발하는 등 정치·안보적 차원의 파장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10·9 핵실험 이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I
II
III
IV



셋째, 김정일 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핵포기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리비아처럼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핵능력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미사일·핵 실험 이후 역설적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이다. 2006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응해서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를 채택했다. 즉 영향력 증대의 원천은 6자회담 5개국 간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결속이 강화된 것과 안보리 결의안을 통한 대북 경제제재가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증대된 영향력을 대북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서 ‘핵물질의 추가 생산과 확산 방지’라는 제한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2) 정책 변화의 성격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 핵능력의 완전 폐기라는 전략적 목표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구사하는 전술적 차원의 접근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① 일부 원칙의 양보, ②핵폐기를 점진적인 과정으로 인식, ③지역전문가의 발언권 강화.

첫째, 부시 행정부 취임 초기부터 견지해 온 ‘先 핵포기, 後 보상’ 및 ‘북·미 양자회담 불가’라는 두 가지 원칙과 2005년 9월 15일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에 의거해서 BDA를 ‘돈세탁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면서<sup>136</sup> 견지해 온 ‘금융제재 및 북핵문제 분리’ 원칙이

깨졌다. 2002년 10월 촉발된 제2차 북핵위기의 발단이 되었던 HEU 문제도 과거에 비해 관대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sup>137</sup>

둘째,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단기간에 일거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보기 보다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즉 북핵폐기를 몇 개의 요소로 구성된 과정으로 인식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을 통해 순차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갖게 된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북핵폐기의 수순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①핵시설 폐쇄 → ②플루토늄 생산 중단 → ③핵프로그램 신고 → ④HEU 프로그램 폐기 → ⑤핵무기와 핵시설 해체.

셋째, 북핵문제에서 한반도와 동아태 등 지역 전문가의 발언권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즉 북핵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언의 비중이 높아지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비확산, 대테러 등 기능주의 중심의 전문가로부터 국무부 중심의 지역 전문가로 옮겨진 것이다. 예를 들어, 부시 행정부 1기의 백악관 NSC에서 비확산 전문가로 활약해 온 조셉(Robert Joseph)이 '2·13 합의'에 불만을 품고 국무부 국제안보·군축 차관보 직책을 사임한 바 있다.<sup>138</sup> 이라크의 WMD 개발 상황에 대한 정보평가에 실패한 중요한 이유가 지역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는 교훈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sup>136</sup> 김성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 현황과 북미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6), p. 6.  
<sup>137</sup> 전성훈,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7-05』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11~12.  
<sup>138</sup> David Sanger, “Sensing shift in Bush policy, another hawk leaves,” *New York Times*, March 21, 2007.

### (3) 정책 변화의 목표

부시 행정부가 북핵정책의 전술적 변화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파악된다. 첫째, 북한의 핵능력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다. 즉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추가 핵실험 방지와 북한 핵능력의 동결에 두고, 플루토늄의 보유량을 현 수준으로 묶어두면서 핵물질·기술의 해외유출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핵문제를 현 수준에서 봉합하는 대신 기존 핵무기의 폐기는 차기 행정부로 넘기는 결과를 가져온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야기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위협은 군사동맹과 핵우산 제공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다.

둘째,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인 업적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의 실패로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다급한 상황인식 하에, 가장 해결하기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 북핵문제에서 정책을 전환, 외교적인 성과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외교적 업적을 남기고 백악관을 떠나겠다는 욕구를 감추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중동 평화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sup>139</sup> 현재 한·미 외교당국은 2008년부터 핵폐기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이 ‘2·13 합의’와 불능화를 통해서 북핵 위기상황을 봉합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남은 임기 중에 북핵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산적한 외교현안으로 궁지에 몰린 라이스 국무장관 역시 최초의 흑인 여성 국무장관으로서 정치적인 업적이 필요하다는 계산 하에, 북핵문제를 그 돌파구로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

---

<sup>139</sup> - David Sanger, “Pre-emptive caution: the case of Syria,” *New York Times*, October 15, 2007.

것으로 보인다.

셋째, NPT를 중심으로 하는 핵비확산 체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등 북핵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는 당면한 이란 핵문제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핵비확산 체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을 수 있다. 결국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서 일정부분의 타협을 함으로써 북핵문제를 봉합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다. 북한의 입장

PSI에 대해서 북한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북한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PSI를 언급했는데, 예를 들면, ‘전파안보발기’,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 ‘대량살상무기전파안보발기’ 등을 들 수 있다. PSI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PSI가 대상국가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소개한 대로, 2002년 12월 미 사임을 신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 서산호 나포 사건, 2003년 4월 알루미늄 튜브와 시안화나트륨을 적재한 북한행 선박 나포 사건, 2003년 4월 호주 해군에 의한 봉수호 나포 사건 등을 겪은 북한 으로서는 PSI가 북한을 겨냥한 압박정책이라는 심증을 굳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의 반대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야기할 정치·외교적인 차원의 손실뿐만 아니라 경제·군사적 차원의 손해도 감안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SI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경우, 북한은 중요한 외화 수입원의 상실과 남북한 교류협력의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또한 대일본 교역 규제로 인해서



군사장비 개발에 사용하는 일본 부품의 수입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러시아까지 PSI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북한 군부가 동요하고 분열할 가능성도 있다.<sup>140</sup>

PSI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된 2003년 7월 1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대표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과 PSI를 함께 비난하면서 강력하고 무자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sup>141</sup>

미국은 조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전협정 제15항을 무시하고 일본을 비롯한 추종국가들을 사촉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해상 및 공중봉쇄와 국제적 포위망 형성을 시도함으로써 사태는 한층 더 엄중해지고 있다. 정전협정을 완전히 무시한 방대한 전력증강과 대대적인 무력의 집결, 정전 상대방에 대한 봉쇄는 실제적인 전쟁행위를 의미한다.··· 앞으로 미국측이 그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반대하는 제재나 해상 및 공중봉쇄를 감행하는 경우 그리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력증강을 개시하는 경우 조선인민군 측은 미국측이 조선정전협정을 전면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시각부터 즉시 협정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우리의 주권침해에 대하여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한 강력하고도 무자비한 보복조치를 단호히 취하게 될 것이다.

미 국무부가 2005년 6월 9일 PSI를 시작한 이후의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자 북한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PSI를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PSI 출범 2년을 평가하면서 지난 9개월 동안 11건의 확산방지 노력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했고,<sup>142</sup> 이 보다

<sup>140</sup>- 박창권·김명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북한,” pp. 118~121. 러시아는 2004년 5월 31일 PSI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sup>141</sup>-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 담화,” 『로동신문』, 2003년 7월 2일.



열흘 전인 5월 31일 라이스 국무장관은 PSI 출범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리비아로 향하던 선박(BBC China)의 차단과 이를 토대로 한 파키스탄 칸 박사의 핵 밀거래 네트워크 분쇄 그리고 이란에 대한 미사일 판매 저지 등을 PSI의 성공사례로 제시했다.<sup>143</sup> 라이스 장관의 발언 직후 있었던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PSI가 성공한 사례로 “북한에 대해 2건, 이란에 대해 최소 2건, 최소한 또 다른 한 나라에 대해 1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특히 대북한 PSI 작전의 경우 “여러 다른 정부와 양자 협력을 통해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막은 적이 있고, 또 다른 나라와 협력을 통해 핵프로그램에 유용한 물질의 이전을 막았다”며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방해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sup>144</sup>

2005년 6월 13일자 북한의 로동신문 논평은 국무부의 PSI 성과보고서를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와 봉쇄를 더욱 강화하며 나아가서 전파방지를 구실로 핵선제공격을 단행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하고, 미국이 제기하는 북한에 대한 의혹은 제 나름대로 만들어 냈거나 추상적인 자료로 엮어진 사실 무근의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확산행위를 강력하게 부인했다.<sup>145</sup> 또한 미국이 전파방

<sup>142</sup> - Stephen G. Rademaker,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A Record of Success*, Testimony before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Terrorism and Nonproliferation, Washington, DC, June 9, 2005, <<http://www.state.gov/t/ac/rls/rm/47715.htm>>.

<sup>143</sup> - Secretary Condoleezza Rice, Remarks on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Benjamin Franklin Room, Washington, DC, May 31, 2005,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5/46951.htm>>.

<sup>144</sup> - 『연합뉴스』, 2005년 6월 1일.

<sup>145</sup> - 백문규, “핵선제공격 명분을 세우려는 궤변,” 『로동신문』, 2005년 6월 13일.



지를 핑계로 핵무기현대화 계획을 합리화하면서 대북 핵선제 공격을 위한 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술책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 4월 5일자 로동신문 논평은 일본이 일·미 안보체제의 강화와 PSI를 명분으로 군사장비 현대화와 침략전쟁을 준비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PSI의 배후에 일본이 있다는 점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망을 비난했다.<sup>146</sup>

2006년 1월 한국이 미국이 제시한 PSI 관련 8개 항목 가운데 5개 항목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2월 9일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이 PSI에 참가한 것은 북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며 노골적인 도발이고 외세와 함께 동족에 칼을 빼든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어서 “남조선 당국은 사태의 진상을 바로 보고 전파안보발기 훈련참가 결정을 당장 철회하여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남조선당국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147</sup> 하루 뒤에 나온 평양방송의 논평도 남한의 PSI 부분참여 결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sup>148</sup>

이것은[남한의 참가는] 명백히 동족을 해치기 위한 외세의 침략전쟁 책동에 공모해 나서는 것으로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다. 남조선 당국이 참가하기로 한 이른바 대량살상무기전파방지훈련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의 일환이다.

<sup>146</sup>- 김혜성, “지역의 맹주가 되려는 어리석은 야망,” 『로동신문』, 2006년 4월 5일.

<sup>147</sup>- 『연합뉴스』, 2006년 2월 10일.

<sup>148</sup>- “침략적인 외세와의 위험한 공모결탁,” 『평양방송』, 2006년 2월 11일.



평양방송의 이 논평은 미국이 PSI를 명분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주권유린과 침략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미국의 세계 제패전략 뿐만 아니라 대북 압살과 전쟁도발 책동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PSI에 남한이 참여하는 것은 미국의 침략전쟁 책동에 직접 공모하고 가담하는 전범행위와 다를 바 없고, 한반도에 핵전쟁의 참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의 PSI 부분참여를 한·미관계와 연관시켜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sup>149</sup>

동족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 책동에 공모 결탁해 나선 남조선 당국의 처사는 그들이 최근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데 이어, 올해에도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계획대로 다 벌리겠다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남조선 당국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동족을 해치려는 외세의 전쟁책동에 가담해나서는 범죄행위의 진상을 가리울 수 없다.

한편, 2006년 2월 24일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얀 엘리아스 유엔총회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6자회담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을 PSI에 참여시키는 것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회담 재개를 지연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sup>150</sup>

핵실험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중되는 2006년 10월 하순에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이 남한에 대해서 PSI에 적극 참여하라는 등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sup>149</sup> - *Ibid.*

<sup>150</sup> - 『연합뉴스』, 2006년 2월 26일.



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는 남북관계를 중단시키고 대결을 고취시켜서 한반도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몰고 가기 위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동족 사이에 적대감을 조성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 미국의 상투적인 침략수법이기에 때문에 남한의 진보세력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미국의 침략적인 간섭과 전횡을 단호히 규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sup>151</sup> 백남순 북한 외무상도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PSI는 정전협정의 무기반입금지 조항(제2조 13항)과 봉쇄금지 조항(제2조 1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해상 및 공중 봉쇄를 통한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전쟁행위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sup>152</sup>

## 라. 국내의 찬반 논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가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면서 PSI에 대한 국내의 찬반 논란도 한층 가열되었다.

### (1) PSI 찬성의견

PSI를 찬성하는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국이 지금까지 보다 PSI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전제하에 지난 10여년간 실시된 대북지원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압박정책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이 PSI에 적극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sup>151</sup>-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방송』, 2006년 10월 29일.

<sup>152</sup>- 박창권·김명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북한,” p. 122.



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변영정책을 통해서 엄청난 지원을 했지만<sup>153</sup> 결국 남한에게 돌아온 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건국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라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둘째, PSI 찬성여론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북한 정권의 속성상 북핵문제에서는 원칙을 갖고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해야만 핵포기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북한 정권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주기를 바라면서 자극을 삼가하고 도와주기만 하는 대북정책으로는 북한의 진정한 변화와 핵포기를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햇볕정책과 평화변영정책의 기본 의도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개성공단을 방문하면서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개성공단이 잘되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화를 해보니 적어도 [한국] 정부는 그런 말을 쓰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면서,<sup>154</sup> “이곳은 남북이 함께 성공하는 자리이지 누구를 개혁·개방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개혁·개방은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sup>155</sup>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발언은 김정일과 북한 정권이 개혁·개방이라는 말에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햇볕정책과 평화변영

<sup>153</sup> - 참고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지원금 규모는 총2조 4,744억 원이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원규모가 두 배에 달하는 4조 5,717억 원에 이른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실 자료,” 『동아일보』, 2007년 10월 9일.

<sup>154</sup> - 『동아일보』, 2007년 10월 6일.

<sup>155</sup> - 『동아일보』, 2007년 10월 5일.

정책의 기본 이념이 김정일 체제 하에서 실현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PSI의 적극참여를 주장하는 측은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서 PSI 문제에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10여 년간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것에 역비례해서 한·미 동맹은 계속 약화되어 왔고 이런 와중에 북한은 핵보유국이 된 현실을 우려하면서, 한·미 동맹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미국의 관심사항인 PSI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가장 큰 안보우려사항으로 등장한 WMD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PSI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약화된 한·미 동맹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강조한다.

넷째, 한국의 외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PSI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요 서방선진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 규범 가운데 한국만이 제한된 참여를 고집하는 것은 PSI 밖에 없다. 사실상 PSI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외톨이 신세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제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만들어가면서까지 확대되고 있는 PSI 문제에서 한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의 실추와 외교역량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 (2) PSI 반대의견

PSI에 반대하는 의견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원인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PSI 참여가 남북한 간의 무력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열린 우리당의 최성 의원이 2006년 10월 29일 실시한 PSI 참여에 관한 여론조사 내용은 PSI로 인한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잘 보여주고 있다.<sup>156</sup>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19세 이상의 전국 성인남녀 700여명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 27일 실시되었고, 표본오차는  $\pm 3.7\%$ 이다.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봉쇄여부를 묻는 의견에 ‘전면적 봉쇄 등 전쟁의 위험이 있는 대응을 해선 안된다’는 응답이 68.5%로 ‘전쟁을 각오하고서라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28.8%)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PSI 확대 참여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58.4%(매우 높다 13.8%, 다소 높다 44.6%)로 ‘낮다’는 응답 36.0%(매우 낮다 8.3%, 다소 낮다 27.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PSI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남북간 무력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확대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56.2%로,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각오하더라도 확대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38.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PSI 적극참여가 곧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순도식은 2006년 후반 PSI 참여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벌어졌던 논쟁에서 확대참여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시한 가장 강력한 논리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혔듯이, PSI가 곧 해상 봉쇄나 경제봉쇄를 초래하거나 더 나아가서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PSI를 반대하

<sup>156</sup> 최성, 『북핵사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2006년 10월 29일.



는 측에서 PSI의 취지와 이행 실태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 최성 의원의 여론조사 결과도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국민들이 PSI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실상을 알았다면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PSI의 적극참여는 이미 북한의 핵실험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햇볕정책과 평화변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에서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이 그동안 PSI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PSI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남북관계의 경색은 불가피하며, 그렇게 되면 햇볕정책과 평화변영정책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셋째, PSI에 참여는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차단작전을 시행하는 경우 한국이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sup>157</sup> 후세인 정권이 WMD를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부시 행정부가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전쟁의 명분을 상실한 전례를 감안할 때,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에 대한 우려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라크에서 정보실패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정보평가에 매우 신중해졌고, 북한을 겨냥한 PSI 차단 작전이 실시된다고 해도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의 공동 작

---

<sup>157</sup> -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초청 간담회 결과, 2007년 8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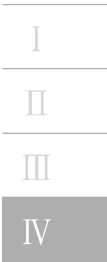
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보실패와 이로 인한 한국의 부담 가능성은 우려와 달리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마. 북한·시리아 핵 네트워크

향후 북한에 대한 PSI 적용뿐만 아니라 6자회담의 진행 등 북핵 문제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사안이 바로 북한과 시리아 간의 핵 밀거래 사건이다. 2006년 9월 6일 이스라엘 공군기가 시리아 북부의 한 시설을 폭격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북한·시리아 핵 밀거래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설정한 최후의 금지선, 즉 북한의 핵기술과 물질의 해외이전 금지라는 선을 넘어서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스라엘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폭격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북한과 시리아가 핵 협력을 추진해 왔고, 폭격된 장소는 영변에 있는 5MWe 흑연감속로와 유사한 형태의 원자로 건설 현장이었으며, 이 폭격으로 인해서 다수의 북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이 사건의 개요를 자세하게 추적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부시 행정부의 대응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것은 뉴욕타임스 신문의 9월 12일자 기사였다. 이 기사는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시리아 북부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목표물을 폭격했다고 보도하면서 이스라엘 관리들은 목표물에서 북한과 시리아 간의 핵협력이 진행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소개했다.<sup>158</sup> 로이터 통신은 미 외교 소

<sup>158</sup> - Mark Mazzetti and Helene Cooper, "U.S. confirms Israeli strikes hit Syrian



식통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가한 시리아 북동부 데이르 아즈-조르 지역은 북한과 시리아간 핵무기 협력 현장으로 의심받은 곳 이었고,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시리아에서 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있었다고 보도했다.<sup>159</sup> 이후 워싱턴포스트와 영국의 선데이타임스 등이 시리아 폭격 사건을 자세하게 보도하면서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 공습 사흘 전인 9월 3일 선적내용 물을 시멘트로 명기한 북한 선박이 “Tartus”라는 시리아의 항구에 입항한 직후 공습이 이뤄진 것이기에 더욱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선데이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모사드 국장이 이스라엘 수상에게 시리아가 북한으로부터 핵장치를 구매하려 한다는 증거를 제시한 2007년 늦봄부터 공격을 준비했으며, 목표는 유프라테스 강변의 농업연구소로 알려진 시설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이 시설을 한동안 감시해왔으며, 인산염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시설이라고 우려했다.<sup>160</sup> 이스라엘은 2007년 여름에 부시 대통령에게도 북한 사람들과 핵관련 물질이 해당 시설에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공습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 정부는 공습을 승인하기 전에 보다 분명한 증거를 원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특공대(명칭: Sayeret Matkal 부대)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시리아에 파견되었고, 해당 시설에서 핵물질 샘플을 탈취, 이스라엘로

---

target last week,” *New York Times*, September 12, 2007.

<sup>159</sup> 『연합뉴스』, 2007년 9월 13일. 폭격된 시설이 소재한 마을의 이름은 “앗 티브나”(At Tibnah)이고,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수백 야드, 이라크 국경에서는 9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Joby Warrick and Robin Wright, “Suspected location of Syria’s reactor cleared,” *Washington Post*, October 26, 2007, p. A17.

<sup>160</sup> Uzi Mahnaimi, Sarah Baxter, and Michael Sheridan, “Israelis ‘blew apart’ Syrian nuclear cache’ secret raid on Korean shipment,” *Sunday Times*, September 16, 2007.

갖고 와서 분석한 결과 북한산임을 입증함으로써 미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sup>161</sup> 이 작전은 Sayeret Matkal의 대장을 역임한 바락(Ehud Barak) 국방장관이 직접 지휘했으며 그는 2007년 6월 18일 취임 이후 이 작전에 거의 몰입했다고 한다. 북한과 중국에 있는 외교관들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많은 북한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62</sup> 10월 14일자 뉴욕타임스 기사는 9월 6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시설이 북한 영변의 핵시설로서 불능화의 주요 대상인 5MWe 흑연감속로와 같은 유형의 원자로 건설 현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sup>163</sup>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월 11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영공 침범 규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스라엘 군용기들이 수리아 영공을 불법 침입하여 동북부 사막지역에 폭탄을 던지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자주권을 난폭히 침해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파괴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로 된다.”<sup>164</sup> 북한이 아무리 우방이라곤 하지만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자체가 이 사건에 북한의 상당한 이해가 걸려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참고로 시리아의 인접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 일절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후 북한이 보여준 반응은 이러한 판단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sup>161</sup>- Uzi Mahnaimi, Sarah Baxter, and Michael Sheridan, “Snatched: Israeli commandos ‘nuclear’ raid,” *Sunday Times*, September 23, 2007.

<sup>162</sup>- *Ibid.*

<sup>163</sup>- David E. Sanger and Mark Mazzett, “Analysts find Israel struck a nuclear project inside Syria,” *New York Times*, October 14, 2007.

<sup>164</sup>- 『조선중앙방송』, 2007년 9월 1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월 18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시리아와의 비밀 핵 협력설은 6자회담과 북·미관계의 전진을 달가워하지 않는 불순세력들이 꾸며낸 서툰 음모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핵확산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sup>165</sup> 이틀 후 시리아 고위관리이자 바트아랍사회당의 조직국장인 다우드(Saaeed Eleia Dawood) 일행의 평양 방문이 이뤄지고,<sup>166</sup> 다우드 일행은 21일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22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났다.<sup>167</sup>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우리과 시리아와의 핵거래 설은 미친놈들이 만든 것”이라며 시리아와의 핵거래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sup>168</sup> 한편,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10월 13일 시리아와 이탈리아 방문 차 평양을 출발했다.<sup>169</sup> 불과 한 달 사이에 북한과 시리아 간의 고위급 접촉이 양국에서 번갈아 열린다는 사실 자체가 양국 사이에 중요한 현안이 발생했으며, 그 현안이란 바로 북한과 시리아 간의 핵 커넥션이 발각되고 다수의 북한 기술진이 사망한 사건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폭격된 현장을 촬영한 위성사진까지 공개되었다. 폭격이 있기 전인 8월 10일과 폭격 후인 10월 24일 촬영한 사진을 비교해 보면 폭격현장이 아무것도 없이 말끔하게 치워져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리아 정부가 나중에 있을지 모를 국제사회의 조사에 대

<sup>165</sup> 『조선중앙방송』, 2007년 9월 18일.

<sup>166</sup> Uzi Mahnaimi, Sarah Baxter, and Michael Sheridan, “Snatched: Israeli commandos ‘nuclear’ raid.”

<sup>167</sup> “Syrians pay visit to North Korea,” *Associated Press*, September 23, 2007.

<sup>168</sup> 『연합뉴스』, 2007년 9월 25일.

<sup>169</sup> 『연합뉴스』, 2007년 10월; Hugh Naylor, “Syria tells Journalists Israeli raid did not occur,” *New York Times*, October 11, 2007.

비해서 북한과의 핵 밀거래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현장을 신속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sup>170</sup> 아울러 2006년 12월 쿠웨이트의 한 신문 (Al Seyassah)이 브뤼셀에 있는 유럽의 정보소스를 인용해서 시리아가 북부 지역에서 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sup>171</sup> 돌이켜 보면,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북한이 시리아와의 핵 밀거래 사실을 은폐하고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2007년 1월 베를린 합의와 뒤 이은 2·13 합의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시리아-북한 핵 밀거래 사건은 전술적인 정책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를 외교적인 업적으로 삼으려는 부시 행정부에게 타격을 주었다. 변화된 대북정책의 타당성에 의문이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대북협상을 지지하는 세력과 대북 압박을 주장하는 세력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정부 역시 이스라엘의 폭격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주요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북한의 핵확산 행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게이츠 국방장관은 9월 16일 Fox News Sunday에 출연해서 시리아-북한 밀거래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보관련 사항이라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북한과 시리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밀거래가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sup>172</sup> 부시 대통령은 9월 20일자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sup>170</sup>- David Albright, Paul Brannan, Jacqueline Shire, *Syria Update: Suspected Reactor Site Dismantled* (Washington, D.C.: The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October 25, 2007).

<sup>171</sup>- Uzi Mahnaimi, Sarah Baxter, and Michael Sheridan, "Snatched: Israeli commandos 'nuclear' raid."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6자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 북한이 확산을 중단하기를 기대하며, 정보의 확산이건 물질의 확산이건 관계없이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sup>173</sup> 부시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북한과 시리아간의 핵확산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 국무장관도 중국 외교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 핵과 관련해서 대답이 필요한 의문들이 아주 많으며, 북한 핵프로그램의 모든 면에 관한 의문들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sup>174</sup> 급기야 미국 내에서는 시리아·북한 핵 커넥션을 둘러싸고 부시 행정부 내에서 강온파간의 갈등이 유발되었다.<sup>175</sup> 6자회담 제6차 2단계 회의에서 합의한 불능화·신고 방안을 승인할 것인가를 두고서 체이니 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반대파와 라이스 국무장관을 축으로 하는 찬성과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부시 대통령이 일단 합의안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행정부 내의 갈등은 의회로까지 번져가는 양상이다. 심지어는 공화당 의원 들조차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우려를 표시했다.<sup>176</sup>

<sup>172</sup>- "US wary of Syria-North Korea ties," *Associated Press*, September 16, 2007.

<sup>173</sup>- *Press Conference by the President*,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September 20, 2007,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7/09/20070920-2.html>>.

<sup>174</sup>- Arshad Mohammed, "U.S. says important N.Korea answer nuclear questions," *Reuters*, September 23, 2007.

<sup>175</sup>- Mark Mazzetti and Helene Cooper, "An Israeli strike on Syria kindles debate in the U.S.," *New York Times*, October 10, 2007.

<sup>176</sup>- 예를 들어, 로스레티넨(Ros-Lehtinen) 하원의원은 이스라엘 폭격사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될수록 더 많은 의원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핵협상에 우려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Mark Mazzetti and William Broad, "The right confronts Rice over North Korea policy," *New York Times*, October 25, 2007.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6자회담 내에서 이뤄진 북·미간 접촉에서는 시리아·북한 핵 커넥션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9·19 공동성명’이나 ‘2·13 합의’와 달리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의 핵확산 금지를 명시한 다음과 같은 내용(제I장의 3항)이 추가되었다: “북한은 이어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 2. PSI 참여 수준과 득실 분석

### 가. 불참

#### (1) 이익

PSI에 불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남북관계의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국한된다. 즉 PSI는 남북관계를 국제적 차원의 대북 압박조치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남북대화의 폭과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대북 압박에 따른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경제발전에 미칠 악영향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 (2) 손실

남북관계를 제외한 국익 전반에서 많은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PSI가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연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교적인 이익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서방 선진국들이 모두 참여한 국제 레짐 가운데

I

II

III

IV

데 한국만 소극적인 경우는 PSI 밖에 없다는 사실은 적어도 PSI 부분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된 것과 다름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PSI 불참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요한 사안으로 공감하는 북한의 WMD 개발과 확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과 자세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한국이 민족공조를 이유로 국제사회의 규범과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는 인상을 갖도록 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책과 입장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국제사회의 지지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한국의 외교이익이 손상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한국 주도의 통일실현에도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PSI 불참은 국내외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공해상이라고는 하지만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북한 국적의 선박·항공기에 대한 나포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PSI에 불참한 정부의 입장이 매우 당혹스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PSI 불참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선진국간의 민감한 정보교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군축과 비확산을 기조로 하는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도 야기한다.

PSI 불참은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동맹국인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WMD 확산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협조와 동참을 호소하는 시점에 동맹국인 한국이 불참하는 것은 동맹관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한·미 관계 전반에서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불협화음과 균열이 발생한 현실을 감안할 때,<sup>177</sup> PSI

불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 약화와 동맹관계의 균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과적으로 PSI 불참은 한국 정부가 한·미관계보다 남북관계를, 국제공조보다 민족공조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6자회담 참가국들 가운데 미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PSI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6자회담에서의 대북 공조체제 구축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나. 전면참가

### (1) 이익

PSI 전면참가는 한국의 대북전략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압박과 유화를 적절히 배합한 양면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북대화와 대북 인도적 지원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 등 대화와 협력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와 동시에 PSI를 통한 대북 압박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의 행동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압박과 유화의 적절한 배합은 북한내부의 건설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북핵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간의 협상에서 당근과 채찍은 상반되거나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며,<sup>178</sup> 협상의 목표를 효

<sup>177</sup>- Cheon Seongwhun, "North Korea and the ROK-U.S. security alliance," *Armed Forces and Society*, Fall 2007, pp. 5~28.

<sup>178</sup>-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페리(William Perry)도 협상이 성공하

과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협상의 자산이다. 특히 군사협상과 같이 안보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협의할 때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화된 상식이다. 요약하면, 모든 협상, 특히 안보위협을 다루는 협상에서는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협상을 해야 하며,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은 모두 상대방의 행위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체코의 하벨(Vaclav Havel) 전 대통령도 “결단력, 인내 그리고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협상이 김정일 및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sup>179</sup> 새로운 대북전략 기초의 효용성은 제네바 기본합의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 측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sup>180</sup> 예를 들어, 갈루치 수석대표를 포함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압박전략을 구사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을 다루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네바 협상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들은 당근만 제시할 경우 북한이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 더 많은 요구를 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채찍을 휘두를 경우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북한의 도발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핵문제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분명히 하는 긍정적인 차원의 방안과 더불어 북한을 압박하고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는 강압적인 차원의 조치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William Perry, “It’s either nukes or negotiation,” *Washington Post*, July 23, 2004, p. A23.

<sup>179</sup> - Vaclav Havel, “Time to act on N. Korea.” *Washington Post*, June 18, 2004, p. A29.

<sup>180</sup> - Joel Wit, Daniel Poneman and Robert Gallucci, “Seven lessons for dealing with today’s North Korea nuclear crisis,” *Arms Control Today*, April 2004, pp. 19~22.

북한의 핵개발 자체가 이미 증대한 군사적 도발행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상대의 군사적 위협행위에 대해 적절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에 불과한 정상적인 국가방어 행위이다. 한 국가의 안보전략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야 한다.<sup>181</sup> 북한을 자극하고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압박전략을 구사하지 않는 것은 국가전략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불합리한 정책결정태도이다. 대북 압박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핵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평화지상주의 내지는 허위 안보감이 확산되어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평화는 국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고서 관련 부처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압박조치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이자 의무사항이다.

PSI 전면참가로 대표되는 새로운 대북전략은 우리 정부가 WMD 확산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와 입장을 같이 하면서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즉 PSI 전면참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신뢰도 및 외교적 입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PSI의 모든 활동에 동참해야만 PSI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 유사상

<sup>181</sup> 예를 들어,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의 역지와 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외교·군사적인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George Perkovich *et al.*, *Universal Compliance: A Strategy for Nuclear Secur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June 2004), p. 85.

I
II
III
IV



황에도 적절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연루된 상황이 발생한다면, PSI 참가국들이 구체적인 대북조치를 논의하는 현장에 한국이 참여해야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우리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PSI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 참가국들을 설득해서 사태의 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 손실

PSI 전면참가로 인한 손실은 주로 남북관계에 국한된다. 한국이 PSI에 전면참가하기로 결정할 경우 북한은 대남 비난공세를 강력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서 남북대화의 위축이나 한시적인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6자회담 합의를 파기하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거나 핵실험을 재개해서 핵능력을 증강하면서, 남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위협과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등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켜서 남한 정부로 하여금 PSI 전면참가 결정을 철회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즉 북한 정권은 남북관계가 중단되고 경제지원이 끊기는 손실을 무릅쓰고서라도 핵무기를 방패로 삼아 당면한 난국을 돌파하려고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기존의 우방국들에 대해서는 PSI에 참가하지 말도록 종용하면서 한·중, 한·러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친북 진보세력의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거세어 질 것이다. 이로 인해서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기존의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북한과 국내 진보세력은 한국 정부의 PSI 참가 결정을 이라크 파병에

뒤이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또 하나의 북중외교의 사례로 묘사하면서, 국내의 반미정서에 불을 지피고 한·미 갈등을 부추기려 할 가능성이 크다.

## 다. 부분참가

### (1) 이익

PSI 부분참가는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이다.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 즉 미국이 제의한 PSI 관련 8개 사항 가운데 PSI 차단작전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5개 사항에만 참여하기로 한 것이 부분참가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이 밖에 “사건별 협력”이나 특정 사건 내에서 “부문별 협력”(예: 훈련 참관 및 참가, 마약을 실은 북한 선박의 나포에 참여하진 않지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후방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하는 것도 부분참가의 유형에 포함된다.

부분참가는 북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북한 정권을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불완전하지만 일정부분의 PSI 참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손실

PSI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북한과 국제사회를 동시에 만족시키겠다는 당초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모두 불만을 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흑도 백도 아닌 회색지대에 머물러서 양쪽으로부터 모두 신뢰를 잃는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 있는 것이

I
II
III
IV

다. 예를 들어, 북한은 한국의 참여정도에 관계없이 PSI 참여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남한을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살펴본 대로, 북한은 이미 한국 정부의 부분참여 결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수동적이며 안이한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관계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동맹관계가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미국은 의심스런 선박의 정밀 검색을 목적으로 또는 나포 후 조치를 위해서 한국의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sup>182</sup> 물론 이에 대해서 국내 진보세력은 거세게 반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과 국제사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놓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중간한 태도가 국내 여론의 분열만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PSI 참여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국제사회 둘 가운데 하나’라는 양자택일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 3. 향후 정책추진 방향

PSI가 추구하는 목표가 단순히 WMD의 확산저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최대 안보현안인 테러와의 전쟁 차원에서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범죄행위”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한국은 PSI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북전략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우리 정

---

<sup>182</sup> -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초청 간담회 결과, 2007년 8월 9일.

부가 소홀히 해왔던 북한의 인권, 마약밀매, 위조지폐 등 북한문제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는 대북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큰 틀 속에서 PSI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하고 추진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PSI는 강압유인의 한 수단으로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적절한 압박을 가하지만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대북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7대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향후 5년 동안에도 북한 핵과 PSI 등 관련 문제는 통일·외교·안보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08년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햇볕정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전략과 국민들이 보여준 대북인식을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대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대북전략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1세기 국제안보질서를 고려하고 통일·외교·안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전략에 토대를 둔다.
-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 신속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한다.
- 북핵폐기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 압박과 유화를 병행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이원화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 대북 지원과 협력의 초점을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민족의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데에 맞춘다.

I
II
III
IV

- 북한 정권이 핵을 포함한 WMD를 포기하고 대남 군사위협을 제거하는 경우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실시한다.
- 대북 교류협력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원리를 해치는 뇌물이나 뒷돈 등을 북한 당국에 제공해서 남북 관계가 부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새로운 대북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남북대화와 대북지원이 당근과 유화 정책의 수단이라면 PSI는 채찍과 압박을 상징하는 정책 수단이다. 대화와 지원이라는 당근과 더불어 PSI를 비롯한 채찍을 병행하는 것이 모순된 전략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근과 채찍의 병행은 모순이 아니라 우리의 국력과 가용한 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다. 마치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한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과 오른손을 모두 사용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남북 대화와 PSI를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견상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설정해야 할 정책추진 방향은 북한의 행태 가운데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각각에 대해 별개의 대응방안을 취한다는 “분리접근” 방식이다.

분리접근은 한반도의 평화·번영에 도움이 되는 남북한 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그리고 PSI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서 근절해 나간다는 것을 정책추진의 기본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또한 분리접근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재’라는 명확한 등식이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이 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건설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5월 14일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단과 가진 회견에서, 미국의 마약, 미사일 수출 차단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다.<sup>183</sup>

위험한 물건,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물건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문제는 한국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동의하고 공조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핵문제 등과 따로 떼어내어서 사고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정부에서 PSI 전면참가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었던 적이 있었다. 핵실험 직후 노무현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북 유화정책의 한계를 토로한 상황이기 때문에 PSI 전면참가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시기였다. 바야흐로 핵실험이란 충격을 받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국제공조 쪽으로 확실하게 안착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핵실험 한 달여 후에 기존의 부분참여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방향을 바꿨고, 대북 정책도 기존의 유화기조가 그대로 지속되었다. 이즈음 국회에서도 PSI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대립했고, 특히 여당 의원들은 2006년 10월 27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PSI 참여에 반대하는 의사를 개진하는 데 질의시간의 상당부분을 할애했다.<sup>184</sup> 이튿날인 10월 28일 김대중 전 대통령

<sup>183</sup> - 『조선일보』, 2003년 5월 15일.

<sup>184</sup> - 『연합뉴스』, 2006년 10월 30일.

령도 목포를 방문하면서 목포역에서 가진 연설에서 PSI 참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개진했다.<sup>185</sup>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우리 주장대로 정책을 세워나가 평화적으로 대화에 들어가야 합니다.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PSI는 한반도 주변에서 실시해서는 안됩니다. PSI가 무력대치를 부르고 전쟁으로 이어지고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PSI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이러한 국내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2006년 11월 13일 자체판단에 따라서 PSI의 참여수준을 조절할 것이며 한반도 수역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국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이 밝힌 PSI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다.<sup>186</sup>

PSI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지지를 정부 입장으로 공식 표명하면서도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정식 가입하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선언한 것이다. PSI에 대한 특수한 지위 선언은 (남북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라 생각한다...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제재 활동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르고, 그 이외 수역에서의 PSI 참여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다. 이는 PSI 운용 원칙과도 합치되는 것이다.

---

<sup>185</sup>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67870.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67870.html)>.

<sup>186</sup> - “PSI 정식가입 않기로...목적·원칙은 지지,” 『국정브리핑』, 2006년 11월 13일,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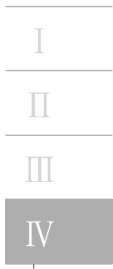


그러나 남북해운합의서가 PSI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견해가 많다. 우선 남북해운합의서는 북한이 남북간의 해상통로를 이용해서 무기와 핵물질 등을 남한으로 반입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sup>187</sup> 현재 남북해운합의서와 그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관련 규정으로는 북한선박의 적재화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사를 보장할 수 없다.<sup>188</sup> 북한 내 출발지점에서의 선적과정과 선적물의 내용에 대한 현장점검과 같은 확실한 초기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철도의 개통 및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른 항만의 개방 등이 북한정권의 의도에 따라서는 WMD의 운반통로로 역이용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국가안보상의 취약성을 야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남북해운합의서는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의서인 반면에, PSI 및 안보리결의안 1718호 등은 대북제재를 위한 문서라는 점에서 기본 취지와 목표가 완전히 다르다. 실제 상에서 볼 때, PSI는 선박의 정선, 검색, 강제 구인, 화물의 압수 등

<sup>187</sup> - 남북한은 2004년 6월 5일 남북해운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및 나진 항구를, 남한은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및 속초 항구를 상대방 선박에 개방하고 필요한 항로를 개설했다.

<sup>188</sup> - 남북간 해운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할 때 적재화물의 중량과 종류를 밝히고(제1조 1항), 상대측 경비합정과 통신초소가 요구하는 경우에도 적재화물 등에 대해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제2조 5항). 또한 상대측 선박이 무기나 무기부품을 수송하는 등 제6조의 금지규정을 위반해서 통신검색 불응, 항로 무단이탈 및 도주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남북해운합의서는 이동 선박에 대해서 통신으로 구두 검색하거나 이에 불응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영해 밖으로의 퇴거 명령만을 할 수 있다. 또한 PSI는 한국의 영해뿐만 아니라 한반도 근해의 공해를 포함한 광범위한 해역에서 실시되지만 남북해운합의서는 한국 영해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검색 조치가 가능하다.<sup>189</sup> 물론 PSI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여기에 한국이 참여한다고 해서 북한의 WMD 확산 활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물류 수송에서 해상과 공중 수송 분담률은 육상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해상과 공중에서의 PSI 만으로는 역부족이다.<sup>190</sup> 그러나 앞으로 PSI를 비롯한 대북압박이 다시 강화되는 경우에는 중국 정부도 육상 운송로의 통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 국경을 통한 북한의 확산 활동이 적발되는 경우 중국정부에게도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정원 등 외교안보 부서의 장들이 모두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존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지속하게 된 원인과 배경 및 그 파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층적인 연구와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국제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한국정부는 교훈을 얻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정부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다.

<sup>189</sup>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초청 간담회 결과, 2007년 8월 9일.

<sup>190</sup> 화물수송의 경우 철도 90%, 도로 7%, 해운 3%, 항공 0%이고, 여객수송의 경우에는 각각 62%, 37%, 1%, 0%이다. 항공수단의 경우 다른 수단에 비해 분담률이 크게 낮기 때문에 비율이 0%로 계산되었다. 통일연구원 김영운 선임연구위원과의 의견교환, 2007년 11월 2일.

결론적으로, 한국이 PSI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SI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새로운 대북전략 기조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재’라는 분리접근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정책이다. 남북대화와 인도적 지원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 등 대화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PSI를 통한 대북 압박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북핵문제의 신속한 해결뿐만 아니라 북한의 건설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PSI의 주요 적용대상인 북한의 핵개발 및 핵확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면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한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제적인 상식과 규범의 잣대로 북한을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통일과정과 그 이후를 책임질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더 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이다.

셋째, PSI의 주요 회원국인 서방 선진국들이 참여한 국제 레짐 가운데 우리나라만 빠진 경우는 PSI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PSI 불참이 대외관계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신뢰도에 손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의 국제적인 연대와 결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국 외교의 지평을 축소하고 외교력의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PSI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는 군축과 비확산을 기조로 하는 우리의 외교안

I  
II  
III  
IV

보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넷째, PSI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은 지난 10여 년간 한·미 관계에서 나타난 균열을 치유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PSI 전면참가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한·미 관계보다 남북 관계를, 국제공조보다 민족공조를 우선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한·미·일 3자 대화와 6자회담 등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그동안 훼손된 한·미 동맹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PSI에 적극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해야만 PSI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 유사상황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다. 즉 PSI 참여국 간에 이뤄지는 민감한 정보교환에 동참하고 한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사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PSI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PSI에 참여해서 우리의 발언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현재 우리 정부는 PSI에 대해 ‘제한된 수준의 참여’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본 연구의 다각적인 분석을 기초로 국익차원에서 PSI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검토를 단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입장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우선 PSI는 해상봉쇄나 경제봉쇄를 의미하고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순한 도식에서 탈피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여론을 계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PSI를 주도하는 미국의 의도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PSI가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질서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PSI 전면참가에 대한 논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필

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PSI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정책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중요한 안보현안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하는데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I

II

III

IV



# 참고문헌

## 1. 단행본

- Anthony, Ian. "The 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in Ian Anthony, ed. *Arms Export Regu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Byman, Daniel and Matthew Waxman. *The Dynamics of Coercion: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Limits of Military Mi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Cheon, Seongwhun.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6.
- Daniel, Donald *et al.* *Coercive Inducement and the Containment of International Crisis*. Washington, DC: United Institute of Peace, 1999.
- Gaddis, John Lew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Greene, Owen. *Briefing: Developing an Effective Successor to COCOM*. London: Saferworld, 1995.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A Net Assessment: Nuclear Black Markets: Pakistan, A.Q. Khan and the Rise of Proliferation Networks*.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7.
- Perkovich, George *et al.* *Universal Compliance: A Strategy for Nuclear Secur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June 2004.

## 2. 논문

- 김성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 현황과 북미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6.
- 박창권·김명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북한.” 『국방정책연구』. 서울: 국방연구원, 2006년 봄.
- 신성호. “확산안보구상(PSI)과 한반도.” 『NPS Report』.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5.
- 전성훈. “북핵 폐기 로드맵(2008~2012): 향후 5년간의 예상과 우리의 대응.”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창설 2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7.
- \_\_\_\_\_.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7-05.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_\_\_\_\_. “북한의 미사일 확산과 핵무장: 그 전략적 함의.” 『한반도 군비통제』. 서울: 국방부, 2006. 12.
- 조성렬. “2·13 합의 이행과정에서의 과제와 해결방안.”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서울평화통일포럼 제7차 세미나. 2007. 5. 3.
- 최종철. “북핵 신 전략 구상: 한·미·중 연대 강압외교 전략.”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Alterman, Jon. “Coercive diplomacy against Iraq, 1990~98.” in Robert Art and Patrick Cronin, eds. *The United States and Coercive Diplomacy*.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03.
- Anthony, Ian, Anna De Geer, Richard Kokoski and Thomas Stock. “Multilateral weapon-related export control measures.” *SIPRI Yearbook 1995: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Armitage, Richard.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 *Strategic Forum* No. 159, March 1999.
- Art, Robert. “Introduction.” in Robert Art and Patrick Cronin, eds. *The United States and Coercive Diplomacy*. Washington, DC:

-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03.
- Bertsch, Gary and Richard Cupitt. "Nonproliferation in the 1990s: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xport controls." in Brad Roberts, ed. *Weapons Proliferation in the 1990s*.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95.
- Cheon, Seongwhun. "North Korea and the ROK-U.S. security alliance." *Armed Forces and Society*. Fall 2007.
- Chestnut, Sheena. "Illicit activity and proliferation." *International Security*. Summer 2007.
- Cotton, James.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nd North Korea: legality and limitations of a coalition strategy." *Security Dialogue*. June 2005.
- Gaddis, John Lewis. "Grand strategy in the second term."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05.
- George, Alexander. "Introduction: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in Alexander George and William Simons, eds.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Boulder: Westview Press, 1994.
- Hofhansel, Claus. "From containment of communism to Saddam: the evolution of export control regimes." *Arms Control*. Vol. 14, No. 3, December 1993.
- Muller, Harald and Mitchell Reiss. "Counterproliferation: putting new wine in old bottles." *Washington Quarterly*. Spring 1995.
- Pilat, Joseph and Walter Kirchner. "The technological promise of counterproliferation." *Washington Quarterly*. Winter 1995.
- Quagham-Gormley, Sonia Ben. "An unrealized nexus?: WMD-related trafficking, terrorism, and organized crime in the Former Soviet Union." *Arm Control Today*. July/August 2007.
- Wit, Joel, Daniel Poneman and Robert Gallucci. "Seven lessons for dealing with today's North Korea nuclear crisis." *Arms Control Today*. April 2004.



### 3. 기타

『동아일보』.

『로동신문』.

『연합뉴스』.

『조선신보』.

『조선일보』.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Associated Press.*

*Financial Times.*

*Los Angeles Times.*

*New York Times.*

*Reuters.*

*Sunday Times.*

*Time.*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최성, 『북핵사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2006년 10월 29일.

Bureau of Nonproliferatio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Washington, D.C.: The State Department, May 2005.

<<http://www.state.gov/t/np/rls/other/46858.htm>>.

Bureau of Nonproliferatio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Washington, D.C.: The State Department, July 28, 2004.

<<http://www.state.gov/t/isn/rls/other/34726.htm>>.

*The Bush Administration's Nonproliferation Policy: Successes and Future Challenges.* Testimony by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John Bolton to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March 30, 2004.

“Bush’s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graduation speech.”

*Washington Post.* June 2, 2002.



-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Inventory of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Organization and Regimes.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April 10, 2007.
-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1988. <<http://www.imo.org/Conventions/>>.
- David Albright, Paul Brannan, Jacqueline Shire. *Syria Update: Suspected Reactor Site Dismantled*. Washington, D.C. The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October 25, 2007.
- “Dirty deeds done dirt cheap: dealing with RDDs.” *Trust & Verify*, July/August 2004.
- ElBaradei, Mohamed. *The Challenges Facing Nonproliferation*.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y 14, 2004.
- Final Declaration by the Chairman*.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the Netherlands, December 19, 1995.
- Hecker, Siegfried. “Report on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Policy Forum Online*, Nautilus Institute. November 15, 2006.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697Hecker.html>>.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Monitoring and Verific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OV/2007/36. July 3, 2007.
- 
- \_\_\_\_\_. *Illicit Trafficking and Other Unauthorized Activities Involving Nuclear and Radioactive Materials*, August 21, 2005. <[http://www.iaea.org/NewsCenter/Features/RadSources/PDF/fact\\_figures2005.pdf](http://www.iaea.org/NewsCenter/Features/RadSources/PDF/fact_figures2005.pdf)>.
- “International conference amends maritime treaties on unlawful acts.” *Fact Sheet*. The State Department, October 21, 2005. <<http://usinfo.state.gov/utills/>>.
- Monitoring and Verific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OV/2007/36.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July 3, 2007.

-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2004. the United Nations. <<http://www.un.org/secureworld/>>.
-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September 2002.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policy/national/n\\_ss-020920.htm](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policy/national/n_ss-020920.htm)>.
- National Strategy for Combating Terrorism*.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September 2006. <<http://www.whitehouse.gov/nsc/nsct/2006/>>.
-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December 2002. <<http://www.fas.org/irp/offdocs/nspd/nspd-17.html>>.
- Office of the Deputy Secretary of Defense. *Report on Nonproliferation and Counterproliferation Activities and Programs*. Washington, D.C.: The Department of Defense, May 1994.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 September 4, 2003.
-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February 6, 2006.
- Remarks by the President 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Fort Lesley J. McNair. National Defense University, Washington, D.C., February 11, 2004.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4/02/20040211-4.html>>.
-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Report on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s Prewar Intelligence Assessments on Iraq*. Washington, D.C.: U.S. Senate, July 2004.
- Statement of the Security Council at the Level of Heads of States and Governm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23500, January 31, 1992.
- Testimony of John Bolton, Under Secretary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U.S. Department of Stat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June 4, 2003. <[http://www.house.gov/international\\_relations/108/bolt0604.htm](http://www.house.gov/international_relations/108/bolt0604.htm)>.

<URL>

<[http://www.bxa.doc.gov/ComplianceAndEnforcement/TECISydney7\\_03Principles.htm](http://www.bxa.doc.gov/ComplianceAndEnforcement/TECISydney7_03Principles.htm)>.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f=total&&n=20051207026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67870.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67870.html)>.

<<http://www.ifins.org/pages/kison-archive-kn545.thm>>.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7/feb/80496.htm>>.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5/46951.htm>>.

<<http://www.state.gov/t/ac/rls/rm/47715.htm>>.

<<http://www.state.gov/t/isn/c18879.htm>>.

<<http://www.state.gov/t/isn/rls/other/34726.htm>>.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7/09/20070920-2.html>>.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6/11/print/20061117-16.html>>.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1/06/20010611-4.html>>.

## 〈부록 1〉

### *The United Nations Security Resolution 1540, April 28, 2004*

The Security Council,

Affirming that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s well as their means of delivery,\*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eaffirming, in this context, the Statement of its President adopted at the Council's meeting at the level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n 31 January 1992 (S/23500), including the need for all Member States to fulfil their obligations in relation to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nd to prevent proliferation in all its aspects of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ecalling also that the Statement underlined the need for all Member States to resolve peacefully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any problems in that context threatening or disrupting the maintenance of regional and global stability,

Affirming its resolve to take appropriate and effective actions against any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used by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in conformity with its primary responsibilities, as provided for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Affirming its support for the multilateral treaties whose aim is to eliminate or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 importance for all States parties to these treaties to

implement them fully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stability,

Welcoming efforts in this context by multilateral arrangements which contribute to non-proliferation,

Affirming that prevention of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should not hampe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materials, equipment and technology for peaceful purposes while goals of peaceful utilization should not be used as a cover for proliferation,

Gravely concerned by the threat of terrorism and the risk that non-State actors\* such as those identified in the United Nations list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the Committee established u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267 and those to whom resolution 1373 applies, may acquire, develop, traffic in or use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Gravely concerned by the threat of illicit trafficking in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and related materials,\* which adds a new dimension to the issue of proliferation of such weapons and also pos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

\*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resolution only: Means of delivery: missiles, rockets and other unmanned systems capable of delivering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that are specially designed for such use. Non-State actor: individual or entity, not acting under the lawful authority of any State in conducting activities which come within the scope of this resolution. Related materials: materials, equipment and technology covered by relevant multilateral treaties and arrangements, or included on national control lists, which could be used for the design, development, production or use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Recognizing the need to enhance coordination of efforts on national, subreg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order to strengthen a global response to this serious challenge and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Recognizing that most States have undertaken binding legal obligations under treaties to which they are parties, or have made other commitments aimed at prevent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have taken effective measures to account for, secure and physically protect sensitive materials, such as those required by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and those recommended by the IAEA 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Recognizing further the urgent need for all States to take additional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Encouraging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fully the disarmament treaties and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party,

Reaffirming the need to combat by all mean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used by terrorist acts,

Determined to facilitate henceforth an effective response to global threats in the area of non-proliferation,

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 Decides that all States shall refrain from providing any form of support to non-State actors that attempt to develop, acquire,

manufacture, possess, transport, transfer or use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2. Decides also that all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procedures, shall adopt and enforce appropriate effective laws which prohibit any non-State actor to manufacture, acquire, possess, develop, transport, transfer or use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in particular for terrorist purposes, as well as attempts to engage in any of the foregoing activities, participate in them as an accomplice, assist or finance them;
3. Decides also that all States shall take and enforce effective measures to establish domestic controls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including by establishing appropriate controls over related materials and to this end shall:
  - (a) Develop and maintain appropriate effective measures to account for and secure such items in production, use, storage or transport;
  - (b) Develop and maintain appropriate effective physical protection measures;
  - (c) Develop and maintain appropriate effective border controls and law enforcement efforts to detect, deter, prevent and combat,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when necessary, the illicit trafficking and brokering in such item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eg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 (d) Establish, develop, review and maintain appropriate effective national export and trans-shipment controls over such items, including appropriate laws and regulations to control export, transit, trans-shipment and re-export and controls on providing



funds and services related to such export and trans-shipment such as financing, and transporting that would contribute to proliferation, as well as establishing end-user controls; and establishing and enforcing appropriate criminal or civil penalties for violations of such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4. Decides to establish, in accordance with rule 28 of its provisional rules of procedure, for a period of no longer than two years, a Committee of the Security Council, consisting of all members of the Council, which will, calling as appropriate on other expertise,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for its examin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solution, and to this end calls upon States to present a first report no later than six months from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to the Committee on steps they have taken or intend to take to implement this resolution;
5. Decides that none of the obligations set forth in this resolution shall be interpreted so as to conflict with or alt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 Parties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and the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or alt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r the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6. Recognizes the utility in implementing this resolution of effective national control lists and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when necessary, to pursue at the earliest opportunity the development of such lists;
7. Recognizes that some States may require assistance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is resolution within their territories and invites States in a position to do so to offer assistance as appropriate in



response to specific requests to the States lacking the legal and regulatory infrastructure, implementation experience and/or resources for fulfilling the above provisions;

8. Calls upon all States:

- (a) To promote the universal adoption and full implementation, and, where necessary, strengthening of multilateral treaties to which they are parties, whose aim is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biological or chemical weapons;
- (b) To adopt national rules and regulations, where it has not yet been done,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ir commitments under the key multilateral non-proliferation treaties;
- (c) To renew and fulfil their commitment to multilateral cooperation, in particular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the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as important means of pursuing and achieving their common objectives in the area of non-proliferation and of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ful purposes;
- (d) To develop appropriate ways to work with and inform industry and the public regarding their obligations under such laws;

9. Calls upon all States to promote dialogue and cooperation on non-proliferation so as to address the threat posed by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10. Further to counter that threat, calls upon all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eg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o take cooperative action to prevent illicit trafficking in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their means

of delivery, and related materials;

11. Expresses its intention to monitor closely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solution and, at the appropriate level, to take further decisions which may be required to this end;
12. Decides to remain seized of the matter.

## 〈부록 2〉

*Statement of the Security Council at the Level of Heads of States and Governm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23500, January 31, 1992*

---

---

### NOTE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At the conclusion of the 3046th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held at the level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n 31 January 1992 in connection with the item entitled “The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in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made the following statement on behalf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have authorized me to make the following statement on their behalf.

The Security Council met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on 31 January 1992, for the first time at the level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The members of the Council consider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ir commitment to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in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sup>191</sup>

---

<sup>191</sup>– The meeting was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s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for January. Statements were made by His Excellency Dr. Franz Vranitzky, Federal Chancellor of Austria, His Excellency Mr. Wilfried Martens, Prime Minister of Belgium, His Excellency Dr. Carlos Alberto Wahnón de Carvalho Veiga, Prime Minister of Cape Verde; His Excellency Mr. Ji Peng,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of China, His Excellency Dr. Rodrigo Borja-Cevallos, Constitutional President of Ecuador, His Excellency Mr. Francois Mitterrand, President of France, His Excellency Dr. Geza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consider that their meeting is a timely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there are new favourabl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Security Council has begun to fulfil more effectively its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 *A time of change*

This meeting takes place at a time of momentous change. The ending of the cold War has raised hopes for a safer, more equitable and more humane world. Rapid progress has been made, in many regions of the world, towards democracy and responsive forms of government, as well as towards achieving the Purposes set out in the Charter. The completion of the dismantling of apartheid in South Africa would constitute a major contribution to these Purposes and positive trends, including to the encouragement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Last year,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ceeded in enabling Kuwait to regain it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which it had lost as a result of Iraqi aggression. The resolutions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remain essential to the restoration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must be fully

---

Jeszenszky,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nd Personal Emissary of the Prime Minister of Hungary, His Excellency Mr. P. V. Narasimha Rao, Prime Minister of India, His Excellency Mr. Kiichi Miyazawa, Prime Minister of Japan, His Majesty Hassan II, King of Morocco, His excellency Mr. Boris N. Yeltsin,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His Excellency the Rt. Hon. John Major MP,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His Excellency Mr. George Bus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is Excellency Dr. Carlos Andres Perez, President of Venezuela and His Excellency Dr. Nathan Shamuyarira,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Personal Emissary of the President of Zimbabwe, as well as by the Secretary-General, His Excellency Dr. Boutros-Ghali.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the members of the council are concerned by the humanitarian situation of the innocent civilian population of Iraq.

The members of the Council support the Middle East peace process, facilitated by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and hope that it will be brought to a successful conclusion on the basis of Council resolutions 242 (1967) and 338 (1973).

They welcome the role the United Nations has been able to play under the Charter in progress towards settling long-standing regional disputes, and will work for further progress towards their resolution. They applaud the valuable contribution being made by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s now operating in Asia, Africa, Latin America and Europe.

The members of the Council note that United Nations peace-keeping tasks have increased and broadened considerably in recent years. Election monitoring, human rights verification and the repatriation of refugees have in the settlement of some regional conflicts, at the request or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concerned, been integral parts of the Security Council's effort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y welcome these developments.

The members of the Council also recognize that change, however welcome, has brought new risks for stability and security. Some of the most acute problems result from changes to state structures. The members of the Council will encourage all efforts to help achieve peace, stability and cooperation during these chang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faces new challenges in the search for peace. All Member States expect the United Nations to play

a central role at 'this crucial stage. The members of the Council stress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and improving the united Nations to increase its effectiveness. They are determined to assume fully their responsibilities within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in the framework of the Charter.

The absence of war and military conflicts amongst States does not in itself ensu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non-military sources of instability in the economic, social, humanitarian and ecological fields have become threats to peace and security. The United Nations membership as a whole, working through the appropriate bodies, needs to give the highest priority to the solution of these matters.

### *Commitment to collective security*

The members of the Council pledge their commitment to international law and to the United Nations Charter.' All disputes between States should be peacefully re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The members of the council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the collective security system of the Charter to deal with threats to peace and to reverse acts of aggression.

The members of the Council express their deep concern over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and emphasize the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al effectively with all such acts.

###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se commitments, and in order that the Security council should have the means to discharge its primary



responsibility under the Charter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members of the Council have decided on the following approach.

They invite the Secretary-General to prepare, for circulation to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by 1 July 1992, his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on ways of strengthening and making more efficient within the framework and provisions of the Charter the capacity of the United Nations for preventive diplomacy, for peacemaking and for peace-keeping.

The Secretary-General's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could cover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identifying potential crises and areas of instability as well as the contribution to be made by regional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Chapter VIII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helping the work of the Council. They could also cover the need for adequate resources, both material and financial.

The Secretary-General might draw on lessons learned in recent United Nations peace-keeping missions to recommend ways of making more effective Secretariat planning and operations. He could also consider how greater use might be made of his good offices, and of his other func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Charter.

### *Disarmament, arms control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members of the Council, while fully conscious of the responsibilities of other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fields of disarmament,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reaffirm the crucial contribution which progress in these areas can make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y express their commitment to take concrete step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United Nations in these areas.



The members of the Council underline the need for all Member States to fulfil their obligations in relation to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in all its aspects of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o avoid excessive and destabilizing accumulations and transfers of arms; and to resolve peacefully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any problems concerning these matters threatening or disrupting the maintenance of regional and global stability. The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early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by the States concerned of all international and regional arms control arrangements, especially the START and CFE Treaties.

The proliferation of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members of the Council commit themselves to working to prevent the spread of technology related to the research for or production of such weapons and to take appropriate action to that end.

On nuclear proliferation, they note the importance of the decision of many countries to adhere to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emphasize the integral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that Treaty of fully effective IAEA safeguards,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effective export controls. The members of the Council will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the case of any violations notified to them by the IAEA.

On chemical weapons, they support the efforts of the Geneva Conference with a view to reaching agreement on the conclusion, by the end of 1992, of a universal convention, including a verification regime, to prohibit chemical weapons.

On conventional armaments, they note the General Assembly's vote in favour of a United Nations register of arms transfers as a first step, and in this connection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ll States providing

all the information called for in the General Assembly's resolution.

In conclusion,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affirm their determination to build on the initiative of their meeting in order to secure positive advances in promot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y agree that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has a crucial role to play. The members of the Council express their deep appreciation to the outgoing Secretary-General, His Excellency Mr. Javier Perez de Cuellar, for his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culminating in the signature of the El Salvador peace agreement. They welcome the new secretary-General, His Excellency Dr. Boutros Boutros-Ghali, and note with satisfaction his intention to strengthen and improve the functioning of the United Nations. They pledge their full support to him, and undertake to work closely with him and his staff in fulfilment of their shared objectives, including a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United Nations system.

The members of the council agree that the world now has the best chance of achiev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ince the foundation of the United Nations. They undertake to work in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in their own efforts to achieve this, as well as to address urgently all the other problems, in particular thos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requiring the collective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y recognize that peace and prosperity are indivisible and that lasting peace and stability require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 and the promotion of a better life for all in larger freedom.

### 〈부록 3〉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October 14, 2006*<sup>192</sup>

The Security Council,  
Recalling its previous relevant resolutions, including resolution 825 (1993), resolution 1540 (2004) and, in particular, resolution 1695 (2006), as well as the statement of its President of 6 October 2006 (S/PRST/2006/41),

Reaffirming that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s well as their means of delivery,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xpressing the gravest concern at the claim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at it has conducted a test of a nuclear weapon on 9 October 2006, and at the challenge such a test constitut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o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strengthening the global regime of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danger it poses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beyond,

Expressing its firm conviction that the international regime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should be maintained and recalling that the DPRK cannot have the status of a nuclear-weapon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sup>192</sup> - *Action Prevents Provision of Nuclear Technology, Large-Scale Weapons, Luxury Goods to Country; Permits Inspection of Cargo to Ensure Compliance*,  
<<http://www.un.org/News/Press/docs/2006/sc8853.doc.htm>>.



Deploing the DPRK's announcement of withdrawal from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ts pursuit of nuclear weapons,

Deploing further that the DPRK has refused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without precondition,

Endorsing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19 September 2005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Underlining the importance that the DPRK respond to other security and humanitarian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ressing profound concern that the test claimed by the DPRK has generated increased tension in the region and beyond, and determining therefore that there is a clear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aking measures under its Article 41,

1. Condemns the nuclear test proclaimed by the DPRK on 9 October 2006 in flagrant disregard of its relevant resolutions, in particular resolution 1695 (2006), as well as of the statement of its President of 6 October 2006 (S/PRST/2006/41), including that such a test would bring universal condemn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ould represent a clear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2. Demands that the DPRK not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 or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3. Demands that the DPRK immediately retract its announcement of

withdrawal from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4. Demands further that the DPRK return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and underlines the need for all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o continue to comply with their Treaty obligations;
5. Decides that the DPRK shall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and in this contex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ing;
6. Decides that the DPRK shall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shall act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s applicable to parties under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it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Agreement (IAEA INFCIRC/403) and shall provide the IAEA transparency measures extending beyond these requirements, including such access to individuals, documentation, equipments and facilities as may be required and deemed necessary by the IAEA;
7. Decides also that the DPRK shall abandon all other exis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8. Decides that:
  - (a) all Member States shall prevent the direct or indirect supply, sale or transfer to the DPRK, through their territories or by their

nationals, or using their flag vessels or aircraft, and whether or not originating in their territories, of:

- (i) any battle tanks, armoured combat vehicles, large calibre artillery systems, combat aircraft, attack helicopters, warships, missiles or missile systems as defined for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Register on Conventional Arms, or related materiel including spare parts, or items as determined by the Security Council or the Committee established by paragraph 12 below (the Committee);
  - (ii) all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as set out in the lists in documents S/2006/814 and S/2006/815, unless within 14 days of adoption of this resolution the Committee has amended or completed their provisions also taking into account the list in document S/2006/816, as well as other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determined by the Security Council or the Committee, which could contribute to DPRK's nuclear-related, ballistic missile-related or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 programmes;
  - (iii) luxury goods;
- (b) the DPRK shall cease the export of all items covered in subparagraphs (a) (i) and (a) (ii) above and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prohibit the procurement of such items from the DPRK by their nationals, or using their flagged vessels or aircraft, and whether or no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DPRK;
- (c) all Member States shall prevent any transfers to the DPRK by their nationals or from their territories, or from the DPRK by its nationals or from its territory, of technical training, advice, services or assistance related to the provision, manufacture, maintenance or use of the items in subparagraphs (a) (i) and (a) (ii) above;

- (d) all Member Stat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egal processes, freeze immediately the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which are on their territories at the date of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that are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persons or entitie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or by the Security Council as being engaged in or providing support for, including through other illicit means, DPRK's nuclear-relate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 and ballistic missile-related programmes, or by persons or entities acting on their behalf or at their direction, and ensure that any funds, financial assets or economic resources are prevented from being made available by their nationals or by any persons or entities within their territories, to or for the benefit of such persons or entities;
- (e) all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to prevent the entry into or transit through their territories of the person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or by the Security Council as being responsible for, including through supporting or promoting, DPRK policies in relation to the DPRK's nuclear-related, ballistic missile-related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 programmes, together with their family members, provided that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oblige a state to refuse its own nationals entry into its territory;
- (f)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and thereby preventing illicit trafficking in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their means of delivery and related materials, all Member States are called upon to take,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cooperative action including through inspection of cargo to and from the DPRK, as necessary;

9. Decides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8 (d) above do not apply

to financial or other assets or resources that have been determined by relevant States:

- (a) to be necessary for basic expenses, including payment for foodstuffs, rent or mortgage, medicines and medical treatment, taxes, insurance premiums, and public utility charges, or exclusively for payment of reasonable professional fees and reimbursement of incurred expenses associated with the provision of legal services, or fees or service charg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for routine holding or maintenance of frozen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after notification by the relevant States to the Committee of the intention to authorize, where appropriate, access to such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and in the absence of a negative decision by the Committee within five working days of such notification;
  - (b) to be necessary for extraordinary expenses, provided that such determination has been notified by the relevant States to the Committee and has been approved by the Committee; or
  - (c) to be subject of a judicial, administrative or arbitral lien or judgement, in which case the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may be used to satisfy that lien or judgement provided that the lien or judgement was entered prior to the date of the present resolution, is not for the benefit of a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8 (d) above or an individual or entity identified by the Security Council or the Committee, and has been notified by the relevant States to the Committee;
10. Decides that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e) above shall not apply where the Committee determines on a case-by-case basis that such travel is justified on the grounds of humanitarian need, including religious obligations, or where the Committee concludes that an exemption would otherwise further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resolution;

11.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to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within thirty days of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on the steps they have taken with a view to implementing effectivel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8 above;
12. Decides to establish, in accordance with rule 28 of its provisional rules of procedure, a Committee of the Security Council consisting of all the members of the Council, to undertake the following tasks:
  - (a) to seek from all States, in particular those producing or possessing the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referred to in paragraph 8 (a) above, information regarding the actions taken by them to implement effectively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above of this resolution and whatever further information it may consider useful in this regard;
  - (b) to examine and take appropriate action on information regarding alleged violations of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of this resolution;
  - (c) to consider and decide upon requests for exemptions set out in paragraphs 9 and 10 above;
  - (d) to determine additional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to be specified for the purpose of paragraphs 8 (a) (i) and 8 (a) (ii) above;
  - (e) to designate additional individuals and entities subject to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s 8 (d) and 8 (e) above;
  - (f) to promulgate guidelines as may be necessary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imposed by this resolution;
  - (g) to report at least every 90 days to the Security Council on its work, with its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on way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above;

13. Welcomes and encourages further the efforts by all States concerned to intensify their diplomatic efforts, to refrain from any actions that might aggravate tension and to facilitate the early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with a view to the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19 September 2005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to achieve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14. Calls upon the DPRK to return immediately to the six-party talks without precondition and to work towards the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19 September 2005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15. Affirms that it shall keep DPRK's actions under continuous review and that it shall be prepared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sures contained in paragraph 8 above, including the strengthening, modification, suspension or lifting of the measures, as may be needed at that time in light of the DPRK's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resolution;
16. Underlines that further decisions will be required, should additional measures be necessary;
17. Decides to remain actively seized of the matter.

## 〈부록 4〉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95, July 15, 2006*

---

---

The Security Council,

Reaffirming its resolutions 825 (1993) of 11 May 1993 and 1540 (2004) of 28 April 2004,

Bearing in min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t large,

Reaffirming that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s well as their means of delivery,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xpressing grave concern at the launch of ballistic missil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given the potential of such systems to be used as a means to deliver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payloads,

Registering profound concern at the DPRK's breaking of its pledge to maintain its moratorium on missile launching,

Expressing further concern that the DPRK endangered civil aviation and shipping through its failure to provide adequate advance notice,

Expressing its grave concern about DPRK's indication of possible additional launches of ballistic missiles in the near future,

Expressing also its desire for a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 to the situation and welcoming efforts by Council members as well as other Member

States to facilitate a peaceful and comprehensive solution through dialogue,

Recalling that the DPRK launched an object propelled by a missile without prior notification to the countries in the region, which fell into the waters in the vicinity of Japan on 31 August 1998,

Deploing the DPRK's announcement of withdrawal from the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Treaty) and its stated pursuit of nuclear weapons in spite of its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obligations,

Stressing the import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19 September 2005 by China, DPRK, Japan,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Affirming that such launches jeopardize peace,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region and beyond,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DPRK's claim that it has developed nuclear weapons,

Acting under its special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1. Condemns the multiple launches by the DPRK of ballistic missiles on 5 July 2006 local time;
2. Demands that the DPRK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and in this contex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ing;
3. Requires all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eg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o

- exercise vigilance and prevent missile and missile-related items, materials, goods and technology being transferred to DPRK's missile or WMD programmes;
4. Requires all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eg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o exercise vigilance and prevent the procurement of missiles or missile related-items, materials, goods and technology from the DPRK, and the transfer of any financial resources in relation to DPRK's missile or WMD programmes;
  5. Underlines, in particular to the DPRK, the need to show restraint and refrain from any action that might aggravate tension, and to continue to work on the resolution of non-proliferation concerns through political and diplomatic efforts;
  6. Strongly urges the DPRK to return immediately to the Six-Party Talks without precondition, to work towards the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19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in particular to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and to return at an early date to the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7. Supports the six-party talks, calls for their early resumption, and urges all the participants to intensify their efforts on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19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and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8. Decides to remain seized of the matter.

## 〈부록 5〉

*Protocol of 2005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October 14, 2005*

---

---

THE STATES PARTIES to this Protocol,

BEING parties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done at Rome on 10 March 1988,

ACKNOWLEDGING that terrorist acts threate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INDFUL of resolution A.924(22) of the 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requesting of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and technical measures and the consideration of new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and suppress terrorism against ships and to improve security aboard and ashore, and thereby to reduce the risk to passengers, crews and port personnel on board ships and in port areas and to vessels and their cargoes,

CONSCIOUS of the Declaration on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 annexed to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9/60 of 9 December 1994, in which, inter alia, the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olemnly reaffirm their unequivocal condemnation of all acts, methods and practices of terrorism as criminal and unjustifiable, wherever and by whomever committed, including those which jeopardize the friendly relations among States and peoples and threaten the territorial integrity and security of States,

NOTING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1/210 of 17 December 1996 and the Declaration to Supplement the 1994 Declaration on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 annexed thereto,

RECALLING resolutions 1368 (2001) and 1373 (2001)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hich reflect international will to combat terrorism in all its forms and manifestations, and which assigned tasks and responsibilities to Stat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continued threat from terrorist attacks,

RECALLING ALSO resolution 1540 (2004)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hich recognizes the urgent need for all States to take additional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RECALLING FURTHER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done at Tokyo on 14 September 1963;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done at The Hague on 16 December 1970;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done at Montreal on 23 September 1971;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14 December 1973;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17 December 1979;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done at Vienna on 26 October 1979 and amendments thereto adopted on 8 July 2005; the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upplementary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done at Montreal on 24 February 1988; the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Fixed Platforms Located on the Continental Shelf, done at Rome on 10 March 1988; the 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done at Montreal on 1 March 1991;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15 December 1997;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9 December 1999,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13 April 2005,

BEARING IN MIND the importance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dopted at Montego Bay, on 10 December 1982, and of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CONSIDERING resolution 59/46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which reaffirmed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well as actions by States to combat terrorism should be conducted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law and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resolution 59/24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which urged States to become parties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and its Protocol, invited States to participate in the review of those instruments by the Leg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o strengthen the means of combating such unlawful acts, including terrorist acts, and also urges Stat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ose instruments, in particular through the adoption of legislation, where appropriate, aimed at ensuring that there is a proper framework for responses to incidents of armed robbery and terrorist acts at sea,



CONSIDERING ALSO the importance of the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nd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ISPS) Code both adopted by the 2002 Conference of Contracting Governments to that Convention in establishing an appropriate international technical framework involving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Government agencies, national and local administrations and the shipping and port industries to detect security threats and take preventative measures against security incidents affecting ships or port facilities used in international trade,

CONSIDERING FURTHER resolution 58/187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which reaffirmed that States must ensure that any measure taken to combat terrorism complies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fugee and humanitarian law,

BELIEVING that it is necessary to adopt provisions supplementary to those of the Convention, to suppress additional terrorist acts of violence against the safety and security of international maritime navigation and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HAVE AGREED as follows:

##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Protocol:

1. “Convention” means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done at Rome on 10 March 1988;

2. “Organization” mean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nd
3. “Secretary-General” mea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 ARTICLE 2

**Article 1 of the Convention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 Article 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 (a) “ship” means a vessel of any type whatsoever not permanently attached to the sea-bed, including dynamically supported craft, submersibles, or any other floating craft;
  - (b) “transport” means to initiate, arrange or exercise effective control, including decision-making authority, over the movement of a person or item;
  - (c) “serious injury or damage” means
    - (i) serious bodily injury; or
    - (ii) extensive destruction of a place of public use, State or government facility, infrastructure facility, or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resulting in major economic loss; or
    - (iii) substantial damage to the environment, including air, soil, water, fauna, or flora.
  - (d) “BCN weapon” means
    - (i) “biological weapons”, which are:
      - (1) microbial or other biological agents, or toxins whatever their origin or method of production, of types and in quantities that have no justification for prophylactic, protective or other peaceful purposes; or

- (2) weapons, equipment or means of delivery designed to use such agents or toxins for hostile purposes or in armed conflict.
- (ii) “chemical weapons”, which are, together or separately:
  - (1) toxic chemicals and their precursors, except where intended for:
    - (A) industrial, agricultural, research, medical, pharmaceutical or other peaceful purposes; or
    - (B) protective purposes, namely those purposes directly related to protection against toxic chemicals and to protection against chemical weapons; or
    - (C) military purposes not connected with the use of chemical weapons and not dependent on the use of the toxic properties of chemicals as a method of warfare; or
    - (D) law enforcement including domestic riot control purposes; as long as the types and quantities are consistent with such purposes;
  - (2) munitions and devices, specifically designed to cause death or other harm through the toxic properties of those toxic chemicals specified in subparagraph (ii)(1), which would be released as a result of the employment of such munitions and devices;
  - (3) any equipment specifically designed for use directly in connection with the employment of munitions and devices specified in subparagraph (ii)(2).
- (iii) nuclear weapons and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 (e) “toxic chemical” means any chemical which through its chemical action on life processes can cause death, temporary incapacitation or permanent harm to humans or animals. This includes all such chemicals, regardless of their origin or of their method of production, and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produced in

facilities, in munitions or elsewhere.

- (f) “precursor” means any chemical reactant which takes part at any stage in the production by whatever method of a toxic chemical. This includes any key component of a binary or multicomponent chemical system.
- (g) “Organization” mean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 (h) “Secretary-General” mea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 (a) the terms “place of public use”, “State or government facility”, “infrastructure facility”, an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have the same meaning as given to those terms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done at New York on 15 December 1997, and
- (b) the terms “source material” and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have the same meaning as given to those terms in the Statute o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done at New York on 26 October 1956.

### ARTICLE 3

**The following text is added as article 2bis of the Convention:**

#### Article 2bis

- 1.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other right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States and individuals under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fugee and humanitarian

law.

2.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the activities of armed forces during an armed conflict, as those terms are understoo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are governed by that law, and the activities undertaken by military forces of a State in the exercise of their official duties, inasmuch as they are governed by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3.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right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under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done at Washington, London and Moscow on 1 July 1968,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done at Washington, London and Moscow on 10 April 1972 or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done at Paris on 13 January 1993, of States Parties to such treaties.

#### ARTICLE 4

1. **The chapeau of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Any person commits an offence within the meaning of this Convention if that person unlawfully and intentionally:

2. **Article 3, paragraph 1(f)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f) communicates information which that person knows to be false, thereby endangering the safe navigation of a ship.

3. Article 3, paragraph 1(g) of the Convention is deleted.
4. Article 3, paragraph 2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2. Any person also commits an offence if that person threatens, with or without a condition, as is provided for under national law, aimed at compelling a physical or juridical person to do or refrain from doing any act, to commit any of the offences set forth in paragraph 1, subparagraphs (b), (c), and (e), if that threat is likely to endanger the safe navigation of the ship in question.
5. The following text is added as article 3bis of the Convention:

#### **Article 3bis**

1. Any person commits an offence within the meaning of this Convention if that person unlawfully and intentionally:
  - (a) when the purpose of the act, by its nature or context, is to intimidate a population, or to compel a Government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do or to abstain from doing any act:
    - (i) uses against or on a ship or discharges from a ship any explosive, radioactive material or BCN weapon in a manner that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death or serious injury or damage; or
    - (ii) discharges, from a ship, oil, liquefied natural gas, or other hazardous or noxious substance, which is not covered by subparagraph (i), in such quantity or concentration that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death or serious injury or damage; or
    - (iii) uses a ship in a manner that causes death or serious injury or damage; or

- (iv) threatens, with or without a condition, as is provided for under national law, to commit an offence set forth in subparagraph (i), (ii) or (iii); or
- (b) transports on board a ship:
  - (i) any explosive or radioactive material, knowing that it is intended to be used to cause, or in a threat to cause, with or without a condition, as is provided for under national law, death or serious injury or damage for the purpose of intimidating a population, or compelling a Government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do or to abstain from doing any act; or
  - (ii) any BCN weapon, knowing it to be a BCN weapon as defined in article 1; or
  - (iii) any source material,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or equipment or material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the processing, use or production of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knowing that it is intended to be used in a nuclear explosive activity or in any other nuclear activity not under safeguards pursuant to an IAEA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s; or
  - (iv) any equipment, materials or software or related technology that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design, manufacture or delivery of a BCN weapon, with the intention that it will be used for such purpose.

2. It shall not be an offence within the meaning of this Convention to transport an item or material covered by subparagraph 1(b)(iii) or, insofar as it relates to a nuclear weapon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 subparagraph 1(b)(iv), if such item or material is transported to or from the territory of, or is otherwise transported under the control of, a State Party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where:

- (a) the resulting transfer or receipt, including internal to a State, of the item or material is not contrary to such State Party's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 (b) if the item or material is intended for the delivery system of a nuclear weapon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 of a State Party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holding of such weapon or device is not contrary to that State Party's obligations under that Treaty.

**6. The following text is added as Article 3ter of the Convention:**

**Article 3ter**

Any person commits an offence within the meaning of this Convention if that person unlawfully and intentionally transports another person on board a ship knowing that the person has committed an act that constitutes an offence set forth in articles 3, 3bis, 3quater or an offence set forth in any treaty listed in the Annex, and intending to assist that person to evade criminal prosecution.

**7. The following text is added as Article 3quater of the Convention:**

**Article 3quater**

Any person also commits an offence within the meaning of this Convention if that person:

- (a) unlawfully and intentionally injures or kills any person in connection with the commission of any of the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 3, paragraph 1, article 3bis, or article 3ter; or
- (b) attempts to commit an offence set forth in article 3, paragraph 1,



- article 3bis, subparagraph 1(a)(i), (ii) or (iii), or subparagraph (a) of this article; or
- (c) participates as an accomplice in an offence set forth in article 3, article 3bis, article 3ter or paragraph (a) or (b) of this article; or
- (d) organizes or directs others to commit an offence set forth in article 3, article 3bis, article 3ter or subparagraph (a) or (b) of this article; or
- (e) contributes to the commission of one or more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 3, article 3bis, article 3ter or subparagraph (a) or (b) of this article by a group of persons acting with a common purpose, intentionally and either:
- (i) with the aim of furthering the criminal activity or criminal purpose of the group, where such activity or purpose involves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set forth in article 3, article 3bis or article 3ter; or
- (ii) in the knowledge of the intention of the group to commit an offence as set forth in article 3, article 3bis or article 3ter.

## ARTICLE 5

### 1. Article 5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Each State Party shall make the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s 3, 3bis, 3ter and 3quater punishable by appropriate penalties which take into account the grave nature of those offences.

### 2. The following text is added as Article 5bis of the Convention:

#### Article 5bis

1. Each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egal principl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able a legal entity located in its territory organized under its laws to be held liable when a

- person responsible for management or control of that legal entity has, in that capacity, committed an offence set forth in this Convention. Such liability may be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2. Such liability is incurred without prejudice to the criminal liability of individuals having committed the offences.
  3.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in particular, that legal entities liabl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bove are subject to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sanctions may include monetary sanctions.

## **ARTICLE 6**

- 1. The chapeau of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s 3, 3bis, 3ter and 3quater when the offence is committed:
- 2. Article 6,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3. Any State Party which has established jurisdiction mentioned in paragraph 2 shall notify the Secretary-General. If such State Party subsequently rescinds that jurisdiction, it shall notify the Secretary-General.
- 3. Article 6, paragraph 4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4. Each State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s 3, 3bis, 3ter and 3quater in cases where the alleged offender is present in its territory and it does not extradite the alleged offender to any of the States Parties which have established thei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 ARTICLE 7

**The following is added as an Annex to the Convention:**

### ANNEX

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done at The Hague on 16 December 1970.
2.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done at Montreal on 23 September 1971.
3.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14 December 1973.
4.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17 December 1979.
5.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done at Vienna on 26 October 1979.
6.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upplementary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done at Montreal on 24 February 1988.

7.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Fixed Platforms Located on the Continental Shelf, done at Rome on 10 March 1988.
8.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15 December 1997.
9.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9 December 1999

## **ARTICLE 8**

### **1.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1. The master of a ship of a State Party (the “flag State”) may deliver to the authorities of any other State Party (the “receiving State”) any person who the mast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has committed an offence set forth in article 3, 3bis, 3ter, or 3quater.

### **2. The following text is added as Article 8bis of the Convention:**

#### **Article 8bis**

1.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to prevent and suppress unlawful acts covered by this Convention,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and shall respond to requests

pursuant to this article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2. Each request pursuant to this article should, if possible, contain the name of the suspect ship, the IMO identification number, the port of registry, the ports of origin and destination, and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If a request is conveyed orally, the requesting Party shall confirm the request in writing as soon as possible. The requested Party shall acknowledge its receipt of any written or oral request immediately.
3. States Parti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dangers and difficulties involved in boarding a ship at sea and searching its cargo, and give consideration to whether other appropriate measures agreed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could be more safely taken in the next port of call or elsewhere.
4. A State Party that has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an offence set forth in article 3, 3bis, 3ter or 3quater has been, is being or is about to be committed involving a ship flying its flag, may request the assistance of other States Parties in preventing or suppressing that offence. The States Parties so requested shall use their best endeavors to render such assistance within the means available to them.
5. Whenever law enforcement or other authorized officials of a State Party (“the requesting Party”) encounter a ship flying the flag or displaying marks of registry of another State Party (“the first Party”), located seaward of any State’s territorial sea, and the requesting Party has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 ship or a person on board the ship has been, is or is about to be involved in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set forth in article 3, 3bis, 3ter or 3quater, and the requesting Party desires to board,

- (a) it shall reques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nd 2 that the first Party confirm the claim of nationality, and
- (b) if nationality is confirmed, the requesting Party shall ask the first Pa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lag State”) for authorization to board an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with regard to that ship which may include stopping, boarding and searching the ship, its cargo and persons on board, and questioning the persons on board in order to determine if an offence set forth in article 3, 3bis, 3ter or 3quater has been, is being or is about to be committed, and
- (c) the flag State shall either:
  - (i) authorize the requesting Party to board an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set out in subparagraph 5(b), subject to any conditions it may impos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or
  - (ii) conduct the boarding and search with its own law enforcement or other officials; or
  - (iii) conduct the boarding and search together with the requesting Party, subject to any conditions it may impos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or
  - (iv) decline to authorize a boarding and search.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 board the ship or take measures set out in subparagraph 5(b) without the express authorization from the flag State.
- (d) Upon or after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a State Party may notify the Secretary-General that, with respect to ships flying its flag or displaying its mark of registry, the requesting Party is granted authorization to board and search the ship, its cargo and persons on board, and to question the persons on board in order to locate and examine documentation of its nationality and determine if an offence set forth in article 3, 3bis, 3ter or 3quater has been,

is being or is about to be committed, if there is no response from the first Party within four hours of acknowledgement of receipt of a request to confirm nationality.

- (e) Upon or after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a State Party may notify the Secretary-General that, with respect to ships flying its flag or displaying its mark of registry, the requesting Party is authorized to board and search a ship, its cargo and persons on board, and to question the persons on board in order to determine if an offence under article 3, 3bis, 3ter or 3quater has been, is being or is about to be committed.

The notifications made pursuant to this paragraph can be withdrawn at any time.

- 6. When evidence of conduct described in article 3, 3bis, 3ter or 3quater is found as the result of any boarding conducted pursuant to this article, the flag State may authorize the requesting Party to detain the ship, cargo and persons on board pending receipt of disposition instructions from the flag State. The requesting Party shall inform promptly the flag State of the results of a boarding, search, and detention conducted pursuant to this article. The requesting Party shall also inform promptly the flag State of the discovery of evidence of illegal conduct that is not subject to this Convention.
- 7. The flag State, consistent with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subject its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5 or 6 to conditions, including obtaining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requesting Party, and conditions relating to responsibility for and the extent of measures to be taken. No additional measures may be taken without the express authorization of the flag State, except

when necessary to relieve imminent danger to the lives of persons or where those measures derive from relevant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8. For all boardings pursuant to this article, the flag State has the right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a detained ship, cargo or other items and persons on board, including seizure, forfeiture, arrest and prosecution. However, the flag State may, subject to its constitution and laws, consent to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by another State having jurisdiction under article 6.

9. When carrying out the authorized actions under this article, the use of force shall be avoided except when necessary to ensure the safety of its officials and persons on board, or where the officials are obstructed in the execution of the authorized actions. Any use of force pursuant to this article shall not exceed the minimum degree of force which is necessary and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10. Safeguards:

- (a) Where a State Party takes measures against a ship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it shall:
  - (i) take due account of the need not to endanger the safety of life at sea;
  - (ii) ensure that all persons on board are treated in a manner which preserves their basic human dignity, and in compliance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 (iii) ensure that a boarding and search pursuant to this article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 (iv) take due account of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ship and its cargo;
  - (v) take due account of the need not to prejudice the commercial or legal interests of the flag State;
  - (vi) ensure, within available means, that any measure taken with regard to the ship or its cargo is environmentally sound under the circumstances;
  - (vii) ensure that persons on board against whom proceedings may be commenced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 3, 3bis, 3ter or 3quater are afforded the protect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regardless of location;
  - (viii) ensure that the master of a ship is advised of its intention to board, and is, or has been, afforded the opportunity to contact the ship's owner and the flag State at the earliest opportunity; and
  - (ix) take reasonable efforts to avoid a ship being unduly detained or delayed.
- (b) Provided that authorization to board by a flag State shall not per se give rise to its liability, States Parties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harm or loss attributable to them arising from measures taken pursuant to this article when:
- (i) the grounds for such measures prove to be unfounded, provided that the ship has not committed any act justifying the measures taken; or
  - (ii) such measures are unlawful or exceed that reasonably required in light of available information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 State Parties shall provide effective recourse in respect of such damage, harm or loss.
- (c) Where a State Party takes measures against a ship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it shall take due account of

the need not to interfere with or to affect:

- (i) the rights and obligations and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or
  - (ii) the authority of the flag State to exercise jurisdiction and control in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social matters involving the ship.
- (d) Any measure taken pursuant to this article shall be carried out by law enforcement or other authorized officials from warships or military aircraft, or from other ships or aircraft clearly marked and identifiable as being on government service and authorized to that effect and, notwithstanding articles 2 and 2bis,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 (e)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law enforcement or other authorized officials” means uniformed or otherwise clearly identifiable members of law enforcement or other government authorities duly authorized by their government. For the specific purpose of law enforcement under this Convention, law enforcement or other authorized officials shall provide appropriate government-issued identification documents for examination by the master of the ship upon boarding.

11.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or limit boarding of ships, conducted by any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eaward of any State’s territorial sea, including boardings based upon the right of visit, the rendering of assistance to persons, ships and property in distress or peril, or an authorization from the flag State to take law enforcement or other action.

12. The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devel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joint operations pursuant to this article and consult, as appropriate, with other States Parties with a view to

harmonizing such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the conduct of operations.

13. States Parties may conclude agreements or arrangements between them to facilitate law enforcement operation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14. Each State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its law enforcement or other authorized officials, and law enforcement or other authorized officials of other States Parties acting on its behalf, are empowered to act pursuant to this article.
15. Upon or after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each State Party shall designate the authority, or, where necessary, authorities to receive and respond to requests for assistance, for confirmation of nationality, and for authorization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designation,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Secretary-General within one month of becoming a Party, who shall inform all other States Parties within one month of the designation. Each State Party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prompt notice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any changes in the designation or contact information.

## ARTICLE 9

**Article 10, paragraph 2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2. Any person who is taken into custody or regarding whom any other measures are taken or proceedings are being carried out pursuant to this Convention shall be guaranteed fair treatment, including enjoyment of all rights and guarante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of the State in the territory of which that person is present and applicabl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ARTICLE 10

### **1. Article 11, paragraphs 1, 2, 3 and 4 are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1. The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s 3, 3bis, 3ter and 3quater shall be deemed to be included as extraditable offences in any extradition treaty existing between any of the States Parties. States Parties undertake to include such offences as extraditable offences in every extradition treaty to be concluded between them.
2. If a State Party which makes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treaty receives a request for extradition from another State Party with which it has no extradition treaty, the requested State party may, at its option, consider this Convention as a legal basis for extradition in respect of the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s 3, 3bis, 3ter and 3quater. Extradition shall be subject to the other conditions provid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State Party.
3. States Parties which do not make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treaty shall recognize the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s 3, 3bis, 3ter and 3quater as extraditable offences between themselves, subject to the conditions provid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State Party.
4. If necessary, the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s 3, 3bis, 3ter and 3quater shall be treated, for the purposes of extradition between

States Parties, as if they had been committed not only in the place in which they occurred but also in a pla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Party requesting extradition.

**2. The following text is added as Article 11bis, of the Convention:**

**Article 11bis**

None of the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 3, 3bis, 3ter or 3quater shall be regarded for the purposes of extradition or mutual legal assistance as a political offence or as an offence connected with a political offence or as an offence inspired by political motives. Accordingly, a request for extradition or for mutual legal assistance based on such an offence may not be refused on the sole ground that it concerns a political offence or an offence connected with a political offence or an offence inspired by political motives.

**3. The following text is added as Article 11ter, of the Convention:**

**Article 11ter**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interpreted as imposing an obligation to extradite or to afford mutual legal assistance, if the requested State Party has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request for extradition for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 3, 3bis, 3ter or 3quater or for mutual legal assistance with respect to such offences has been made for the purpose of prosecuting or punishing a person on account of that person's race, religion, nationality, ethnic origin, political opinion or gender, or that compliance with the request would cause prejudice to that person's position for any of these reasons.

## ARTICLE 11

### 1. Article 12,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1. State Parties shall afford one another the greatest measure of assistance in connection with criminal proceedings brought in respect of the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s 3, 3bis, 3ter and 3quater, including assistance in obtaining evidence at their disposal necessary for the proceedings.

### 2. The following text is added as Article 12bis of the Convention:

#### Article 12bis

1. A person who is being detained or is serving a sentence in the territory of one State Party whose presence in another State Party is requested for purposes of identification, testimony or otherwise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evidence for the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of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 3, 3bis, 3ter or 3quater may be transferred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a) the person freely gives his informed consent; and
  - (b)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States agree,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ose States may deem appropriate.
2.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article:
  - (a) the State to which the person is transferred shall have the authority and obligation to keep the person transferred in custody as long as necessary to effectuate the needs of paragraph 1, unless otherwise requested or authorized by the

- State from which the person was transferred;
- (b) the State to which the person is transferred shall without delay implement its obligation to return the person to the custody of the State from which the person was transferred as agreed beforehand, or as otherwise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States;
  - (c) the State to which the person is transferred shall not require the State from which the person was transferred to initiate extradition proceedings for the return of the person;
  - (d) the person transferred shall receive credit for service of the sentence being served in the State from which the person was transferred for time spent in the custody of the State to which the person was transferred.
3. Unless the State Party from which a person is to be transferred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article so agrees, that person, whatever that person's nationality, shall not be prosecuted or detained or subjected to any other restriction of personal liberty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to which that person is transferred in respect of acts or convictions anterior to that person's departure from the territory of the State from which such person was transferred.

## ARTICLE 12

**Article 13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1.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prevention of the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s 3, 3bis, 3ter and 3quater, particularly by:
  - (a) taking all practicable measures to prevent preparation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for the commission of those offences



within or outside their territories;

- (b) exchanging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and co-ordinating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taken as appropriate to prevent the commission of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s 3, 3bis, 3ter and 3quater.
2. When due to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set forth in article 3, 3bis, 3ter or 3quater, the passage of a ship has been delayed or interrupted, any State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ship or passengers or crew are present shall be bound to exercise all possible efforts to avoid a ship, its passengers, crew or cargo being unduly detained or delayed.

#### ARTICLE 13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Any State Party having reason to believe that an offence set forth in article 3, 3bis, 3ter or 3quater will be committed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 furnish as promptly as possible any relevant information in its possession to those States which it believes would be the States having established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 ARTICLE 14

**Article 15,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text:**

3. The information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and 2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Secretary-General to all States Parties, to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o other States concerned,



and to the appropriate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 ARTICLE 15

###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1. The Convention and this Protocol shall, as between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be read and interpreted together as one single instrument.
2. Articles 1 to 16 of the Convention, as revised by this Protocol, together with articles 17 to 24 of this Protocol and the annex thereto, shall constitute and be called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2005 (2005 SUA Convention).

## ARTICLE 16

**The following text is added as article 16bis of the Convention:**

### **Final clauses of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2005**

The final clauses of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2005 shall be articles 17 to 24 of the Protocol of 2005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1988. References in this Convention to States Parties shall be taken to mean references to States Parties to that Protocol.

## FINAL CLAUSES

### ARTICLE 17

####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nd accession**

1. This Protocol shall be open for signature at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zation from 14 February 2006 to 13 February 2007 and shall thereafter remain open for accession.
2. States may express their consent to be bound by this Protocol by:
  - (a) signature without reservation as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r
  - (b) signature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followed by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r
  - (c) accession.
3.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to that effect with the Secretary-General.
4. Only a State which has signed the Convention without reservation as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r has ratified, accepted, approved or acceded to the Convention may become a Party to this Protocol.

### ARTICLE 18

#### **Entry into force**

1.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ninety days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welve States have either signed it without reservation as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r have deposited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2. For a State which deposits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in respect of this Protocol after the conditions in paragraph 1 for entry into force thereof have been met, th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shall take effect ninety days after the date of such deposit.

## **ARTICLE 19**

### **Denunciation**

1. This Protocol may be denounced by any State Party at any time after the date on which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for that State.
2. Denunciat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denunci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3. A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or such longer period as may be specified in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instrument with the Secretary-General.

## **ARTICLE 20**

### **Revision and amendment**

1. A conference for the purpose of revising or amending this Protocol may be convened by the Organization.
2.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to this Protocol for revising or amending the Protocol, at the request of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or ten States Parties, whichever is the higher figure.

3. Any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deposited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an amendment to this Protocol shall be deemed to apply to the Protocol as amended.

## ARTICLE 21

### Declarations

1. Upo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a State Party which is not a party to a treaty listed in the Annex may declare that, in the application of this Protocol to the State Party, the treaty shall be deemed not to be included in article 3ter. The declara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s soon as the treaty enters into force for the State Party, which shall notify the Secretary-General of this fact.
2. When a State Party ceases to be a party to a treaty listed in the Annex, it may make a declaration a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with respect to that treaty.
3. Upo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a State Party may declare that it will apply the provisions of article 3ter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its criminal law concerning family exemptions of liability.

## ARTICLE 22

### Amendments to the Annex

1. The Annex may be amended by the addition of relevant treaties that:
  - (a) are open to the participation of all States;
  - (b) have entered into force; and
  - (c) have been ratified, accepted, approved or acceded to by at least twelve States Parties to this Protocol.
2.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any State Party thereto may propose such an amendment to the Annex. Any proposal for an amendmen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Secretary-General in written form. The Secretary-General shall circulate any proposed amendment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to all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nd seek from States Parties to this Protocol their consent to the adoption of the proposed amendment.
3.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Annex shall be deemed adopted after more than twelve of the States Parties to this Protocol consent to it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4. The adopted amendment to the Annex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days after the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twel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such amendment for those States Parties to this Protocol that have deposited such an instrument. For each State Party to this Protocol ratifying, accepting or approving the amendment after the deposit of the twelfth instrument with the Secretary-General,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deposit by such State Party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 ARTICLE 23

### Depositary

1. This Protocol and any amendments adopted under articles 20 and 22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2. The Secretary-General shall:
  - (a) inform all States which have signed this Protocol or acceded to this Protocol of:
    - (i) each new signature or deposit of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ogether with the date thereof;
    - (ii)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 (iii) the deposit of any instrument of denunciation of this Protocol together with the date on which it is received and the date of deposit and the date on which the denunciation takes effect;
    - (iv) any communication called for by any article of this Protocol;
    - (v) any proposal to amend the Annex which has been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paragraph 2;
    - (vi) any amendment deemed to have been adop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paragraph 3;
    - (vii) any amendment ratified, accepted or approv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paragraph 4, together with the date on which that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and
  - (b) transmit certified true copies of this Protocol to all States which have signed or acceded to this Protocol;
3. As soon as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a certified true copy of the text shall be transmitted by the Secretary-General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and

publ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24

### Languages

This Protocol is established in a single original in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DONE AT LONDON this fourteenth day of October two thousand and fiv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for that purpose have signed this Protocol.

## 〈부록 6〉

### *Strengthening International Efforts Against WMD Proliferation, February 11, 2004*<sup>193</sup>

---

---

“There is a consensus among nations that proliferation cannot be tolerated. Yet this consensus means little unless it is translated into action. Every civilized nation has a stake in preventing the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esident George W. Bush, February 11, 2004

#### **Presidential Action**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poses the most serious danger to the peace of the world. Chemical, biological, and nuclear weapons in the hands of terrorists or outlaw regimes could bring catastrophic harm to Americ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ent developments, as highlighted by the President today, demonstrate the new, complex, and challenging threa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rom WMD.

President Bush today proposed seven new steps to help combat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policies will:

- Improve and modernize nonproliferation laws to address new and

---

<sup>193</sup>- *Fact Sheet*,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Washington, DC, February 11, 2004,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4/02/print/20040211-5.html>>.



- changing threats;
- Restrict the sale and transport of nuclear technologies and equipment;
  - Close a loophole i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s that allow states to pursue WMD under the false cloak of legitimacy; and
  - Expand efforts to secure and destroy nuclear weapons and materials.

## **Policy Recommendations**

### *Law Enforcement Cooperation*

-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announced by President Bush in May 2003, currently focuses on taking practical steps to interdict proliferation shipments of WMD, delivery systems, and related materials at sea, in the air, or on land.
- The President proposes that participants in the PSI and other willing nations expand their focus and use Interpol and other mechanisms for law enforcement cooperation to take additional actions to pursue proliferators and end their operations.

### *Swift Passage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 The President calls for swift passage of the resolution he proposed in September 2003, requiring all states to criminalize proliferation, enact strict export controls, and secure sensitive materials within their borders.

### *Expansion of G-8 Global Partnership*

- To ensure the nations of the world are doing all they can to secure and eliminate WMD and dangerous materials, the President proposes the expansion -- in funds, donors, and recipients -- of the G-8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 The Partnership originally provided \$20 billion in nonproliferation assistance to the former Soviet Union, it should now also work to

reduce and secure dangerous materials elsewhere in the world.

### *Controls Against Enrichment and Reprocessing*

- Currently,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llows states like Iran to develop the capability to produce weapons material under the cover of peaceful programs by pursuing a nuclear enrichment and reprocessing capability. The world must create a safe orderly system to fuel civilian nuclear reactors without adding to the danger of nuclear proliferation.
- The President has proposed that the members of the Nuclear Suppliers Group ensure that states which renounce enrichment and reprocessing technologies have reliable access, at reasonable cost, to fuel for civilian reactors.
- The 40 states in the Nuclear Suppliers Group should refuse to sell uranium enrichment or reprocessing equipment or technology to any state that does not already possess full-scale, functioning enrichment or reprocessing plants.

###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 The President offers three key proposals to strengthen the IAEA in its work against nuclear proliferation.
- First, all states should sign the IAEA Additional Protocol, which greatly expands the Agency's tools to detect clandestine nuclear activities. Signing of the Additional Protocol should be a condition for countries seeking equipment for their civilian nuclear programs by next year.
- Second, the IAEA Board of Governors should create a special committee on safeguards and verification, to improve the organization's ability to monitor and enforce compliance with nuclear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 Finally, no state under investigation for proliferation violations should be allowed to serve or continue serving on the IAEA Board of

Governors or on the new special committee.

### **Key Accomplishments**

Today, President Bush welcomed key accomplishments in our determined efforts to prevent and protect against the proliferation of WMD.

#### *Abdul Qadeer (A.Q.) Khan Network*

- The President provided details on the activities of A. Q. Khan, who led an extensive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materials and knowledge. The President also discussed the actions of the U.S. and British governments in penetrating and ultimately shutting down this network:
- Khan and his associates used a factory in Malaysia to manufacture key parts for centrifuges, and purchased other necessary parts through network operatives based in Europe, the Middle East, and Africa. Libya, Iran, and North Korea were customers of the Khan network, and several other countries expressed an interest in Khan's services.
- Over several years, American and British intelligence services gradually uncovered the network's reach, and identified its key experts, agents, and financial network. This work involved substantial risk -- and all Americans can be proud of the hard work and dedication of our fine intelligence professionals.
- As a result of our penetration of the network, American and British intelligence identified and tracked a shipment of advanced centrifuge parts. As part of the PSI, German and Italian authorities stopped the ship as it was heading for Libya, seizing several containers filled with parts for sophisticated centrifuges manufactured at the Malaysia facility.
- The Government of Pakistan is interrogating the network's members,



and learning critical details that will help prevent the network from ever operating again. President Musharraf has promised to share all the information he learns about the Khan network, and has assured us that his country will never again be a source of proliferation.

### *Libya*

- The President welcomed the historic decision of Colonel Qadhafi to end hi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and expects other regimes to follow his example. On December 19, 2003, Libya pledged to:
  - Eliminate all elements of its chemical and nuclear weapons programs;
  - Declare all nuclear activities to the IAEA;
  - Eliminate ballistic missiles with more than 300 km range when carrying a payload of 500 kg;
  - Accept international inspections to ensure Libya's complete adherence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sign the IAEA Additional Protocol; and
  - Eliminate all chemical weapons stocks and munitions, and accede to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 Libya is now working in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the IAEA, and the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n implementing those commitments.

## 〈부록 7〉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 September 4, 2003*<sup>194</sup>

---

---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is a response to the growing challenge posed by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their delivery systems, and related materials worldwide. The PSI builds on effort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vent proliferation of such items, including existing treaties and regimes. It is consistent with and a step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Presidential Statement of January 1992, which states that the proliferation of all WMD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underlines the need for member states of the UN to prevent proliferation. The PSI is also consistent with recent statements of the G8 and the European Union, establishing that more coherent and concerted efforts are needed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WMD, their delivery systems, and related materials. PSI participants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is threat and of the danger that these items could fall into the hands of terrorists, and ar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stop the flow of these items to and from states and non-state actors of proliferation concern.

The PSI seeks to involve in some capacity all states that have a stake in nonproliferation and the ability and willingness to take steps to stop the flow of such items at sea, in the air, or on land. The PSI also seeks cooperation from any state whose vessels, flags, ports, territorial waters,

---

<sup>194</sup> - *Fact Sheet*,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Washington, DC, September 4, 2003,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3/09/20030904-11.html>>.



airspace, or land might be used for proliferation purposes by states and non-state actors of proliferation concern. The increasingly aggressive efforts by proliferators to stand outside or to circumvent existing nonproliferation norms, and to profit from such trade, requires new and stronger a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all concerned states on measures they are able and willing to take in support of the PSI, as outlined in the following set of “Interdiction Principles.”

### **Interdiction Principles for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participants are committed to the following interdiction principles to establish a more coordinated and effective basis through which to impede and stop shipments of WMD, delivery systems, and related materials flowing to and from states and non-state actors of proliferation concern, consistent with national legal authorities and relevant international law and frameworks, including the UN Security Council. They call on all states concerned with this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o join in similarly committing to:

1. Undertake effective measures, either alone or in concert with other states, for interdicting the transfer or transport of WMD, their delivery systems, and related materials to and from states and non-state actors of proliferation concern. “States or non-state actors of proliferation concern” generally refers to those countries or entities that the PSI participants involved establish should be subject to interdiction activities because they are engaged in proliferation through: (1) efforts to develop or acquire chemical, biological, or nuclear weapons and associated delivery systems; or (2) transfers (either selling, receiving, or facilitating) of WMD, their delivery systems, or related materials.

2. Adopt streamlined procedures for rapid exchange of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suspected proliferation activity, protecting the confidential character of classified information provided by other states as part of this initiative, dedicate appropriate resources and efforts to interdiction operations and capabilities, and maximize coordination among participants in interdiction efforts.
3. Review and work to strengthen their relevant national legal authorities where necessary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and work to strengthen when necessary relevant international law and frameworks in appropriate ways to support these commitments.
4. Take specific actions in support of interdiction efforts regarding cargoes of WMD, their delivery systems, or related materials, to the extent their national legal authorities permit and consistent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frameworks, to include:
  - a. Not to transport or assist in the transport of any such cargoes to or from states or non-state actors of proliferation concern, and not to allow any persons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to do so.
  - b. At their own initiative, or at the request and good cause shown by another state, to take action to board and search any vessel flying their flag in their internal waters or territorial seas, or areas beyond the territorial seas of any other state, that is reasonably suspected of transporting such cargoes to or from states or non-state actors of proliferation concern, and to seize such cargoes that are identified.
  - c. To seriously consider providing consent under the appropriate circumstances to the boarding and searching of its own flag vessels by other states, and to the seizure of such WMD-related cargoes in such vessels that may be identified by such states.
  - d. To take appropriate actions to (1) stop and/or search in their



internal waters, territorial seas, or contiguous zones (when declared) vessels that are reasonably suspected of carrying such cargoes to or from states or non-state actors of proliferation concern and to seize such cargoes that are identified; and (2) to enforce conditions on vessels entering or leaving their ports, internal waters or territorial seas that are reasonably suspected of carrying such cargoes, such as requiring that such vessels be subject to boarding, search, and seizure of such cargoes prior to entry.

- e. At their own initiative or upon the request and good cause shown by another state, to (a) require aircraft that are reasonably suspected of carrying such cargoes to or from states or non-state actors of proliferation concern and that are transiting their airspace to land for inspection and seize any such cargoes that are identified; and/or (b) deny aircraft reasonably suspected of carrying such cargoes transit rights through their airspace in advance of such flights.
- f. If their ports, airfields, or other facilities are used as transshipment points for shipment of such cargoes to or from states or non-state actors of proliferation concern, to inspect vessels, aircraft, or other modes of transport reasonably suspected of carrying such cargoes, and to seize such cargoes that are identified.



## 〈부록 8〉

### PSI 전문가그룹 회의 및 훈련 일정<sup>195</sup>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Operational Experts Meetings	
July 9~10, 2003	Operational Experts Meeting, Brisbane, Australia
July 30, 2003	Operational Experts Meeting, London, United Kingdom
Sept. 3~4, 2003	Operational Experts Meeting, Paris, France
Oct. 8~10, 2003	Operational Experts Meeting, London, United Kingdom
Dec. 16~17, 2003	Operational Experts Meeting, Washington, DC, United States
Apr. 16~17, 2004	Operational Experts Meeting, Ottawa, Canada
Aug. 3~4, 2004	Shipping Container Security Workshop, Copenhagen, Denmark
Aug. 5~6, 2004	Operational Experts Meeting, Oslo, Norway
Nov. 30~Dec. 2, 2004	Operational Experts Meeting, Sydney, Australia
Mar. 21~22, 2005	Operational Experts Meeting, Omaha, Nebraska, United States
July 6~7, 2005	Operational Experts Meeting, Copenhagen, Denmark
Sept. 14~15, 2005	Air Cargo Industry Workshop, Los Angeles, California, United States
Nov. 24~26, 2005	Regional Operational Experts Group Meeting, Hamburg, Germany
Apr. 11~12, 2006	Operational Experts Meeting, Miami, Florida, United States
July 25~26, 2006	Operational Experts Meeting, Singapore
Sept. 25~26, 2006	Maritime Industry Workshop, London, U.K.
Dec. 5~7, 2006	Operational Experts Meeting, Montreal, Canada
Jan. 31~Feb. 01, 2007	Proliferation Finance Workshop, Washington, DC, United States
Mar. 26~28, 2007	Operational Experts Group Meeting, Auckland, New Zealand

<sup>195</sup>- Bureau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Washington, DC, Department of State, <<http://www.state.gov/t/isn/c12684.htm>>.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Exercises	
Sept. 10~13, 2003	Exercise PACIFIC PROTECTOR: Australia-led maritime exercise conducted in the Coral Sea
Oct. 8~10, 2003	Air CPX: United Kingdom-led air interception command post (tabletop) exercise conducted in London, United Kingdom
Oct. 13~17, 2003	Exercise SANSO '03: Spain-led maritime exercise conducted in the Western Mediterranean
Nov. 25~27, 2003	Exercise BASILIC '03: France-led maritime exercise conducted in the Western Mediterranean
Jan. 11~17, 2004	Exercise SEA SABER: United States-led maritime exercise conducted in the Arabian Sea, United States
Feb. 19, 2004	Exercise AIR BRAKE '03: Italian-led air interception exercise conducted over Italy (Trapani)
Mar. 31~Apr. 1, 2004	Exercise HAWKEYE: Germany-led customs exercise conducted in Germany (Frankfurt Airport)
Apr. 19~21, 2004	Exercise SAFE BORDERS: Poland-led ground interdiction exercise conducted in Poland (vicinity Wroclaw)
Apr. 19~22, 2004	Exercise CLEVER SENTINEL: Italy-led maritime exercise conducted in the Mediterranean
June 23~24, 2004	Exercise APSE '04: France-led simulated air interception exercise
Sept. 27~Oct. 1, 2004	PSI Gaming Exercise: United States-hosted exercise at Naval War College, Newport, Rhode Island
Oct. 25~27, 2004	Exercise TEAM SAMURAI '04: Japan-led maritime interdiction exercise
Nov. 8~18, 2004	Exercise CHOKEPOINT '04: United States-led maritime interdiction exercise
Apr. 8~15, 2005	Exercise NINFA '05: Portugal-led maritime/ground interdiction exercise
June 1~2, 2005	Exercise BOHEMIAN GUARD '05: Czech Republic- and Poland-led regional ground interdiction exercise
June 7~8, 2005	Exercise BLUE ACTION '05: Spain-led air/ground interdiction exercise
Aug. 15~19, 2005	Exercise DEEP SABRE: Singapore-led maritime/ground interdiction exercise
Oct. 3~7, 2005	PSI Air Gaming Exercise: Norwegian-hosted exercise at Norwegian Naval Academy, Bergen, Norway
Nov. 14~19, 2005	Exercise EXPLORING THEMIS: United Kingdom-hosted maritime/CPX interdiction exercise
Apr. 4~5, 2006	Exercise TOP PORT: Netherlands-hosted maritime/CPX interdiction exercise
Apr. 4~6, 2006	Exercise PACIFIC PROTECTOR '06: Australia-hosted Air/CPX interdiction exercise
May 24~26, 2006	Exercise ANATOLIAN SUN: Turkey-hosted combined air, land and sea CPX and LIVEX interdiction exercis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Exercises	
June 21~22, 2006	Exercise HADES '06: French-hosted air interdiction exercise
Sept. 13~15, 2006	Exercise AMBER SUNRISE: Poland-hosted with Denmark, Russia and Sweden maritime/ground exercise
Oct. 10~31, 2006	Exercise LEADING EDGE: U.S. hosted CPX and maritime/ground interdiction exercise (Persian Gulf)
Apr. 26~27, 2007	Exercise SMART RAVEN: Lithuania hosted air interdiction exercise (Key participants: Estonia, Latvia and Poland)
May 27~29, 2007	Exercise ADRIATIC GATE: Slovenia hosted ground/port interdiction exercise

Upcoming Events	
Oct. 2007	Greece hosted Operational Experts Group (OEG) Meeting
2008	New Zealand-led exercise in Asia-Pacific
4th Qtr 2008	U.K.-led exercise in the Mediterranean
2009	Singapore-led exercise in Asia-Pacific

## 〈부록 9〉

### PSI 참가국 명단<sup>196</sup>

(2007년 6월 4일 현재)

Afghanistan	Denmark	Liberia	Qatar
Albania	El Salvador	Libya	Romania
Angola	Estonia	Liechtenstein	Russia
Argentina	Finland	Lithuania	Serbia
Armenia	France	Luxembourg	Singapore
Australia	Georgia	Macedonia	Slovakia
Austria	Germany	Malta	Slovenia
Azerbaijan	Greece	Marshall Islands	Spain
Bahrain	Holy See	Moldova	Sri Lanka
Belarus	Honduras	Mongolia	Sweden
Belgium	Hungary	Montenegro	Switzerland
Belize	Iceland	The Netherlands	Tajikistan
Bosnia	Iraq	New Zealand	Tunisia
Brunei Darussalam	Ireland	Norway	Turkey
Bulgaria	Israel	Oman	Turkmenistan
Cambodia	Italy	Panama	Ukraine
Canada	Japan	Papua New Guinea	United Arab Emirates
Chile	Jordan	Paraguay	United Kingdom
Croatia	Kazakhstan	Philippines	United States
Cyprus	Kuwait	Poland	Uzbekistan
Czech Republic	Latvia	Portugal	Yemen

<sup>196</sup> - Bureau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Washington, DC, Department of State, May 31, 2007, <<http://www.state.gov/t/isn/c19310.htm>>.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세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김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9,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9,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운,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운,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망: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운,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세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5차 회의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 KINU정책연구시리즈

## 비매출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은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설 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민, 조정아

### Studies Series

비매품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이 책은 국제산림경영인증(FSC)마크를 획득한 무연소 펄프 친환경용지 및포리부루와 친환경소재로 만들어진 재생용지 이레이드를 사용하여 환경에 유해한 크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KINU 연구총서 07-04

“화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